

발간등록번호

11-1390000-002062-01

완결 보고서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tections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 Korean agricultur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촌 진 흥 청

제 출 문

농 촌 진 흥 청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과제의 완결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일시: 2008년 7월 24일

과제수행 참여 연구원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수행참여자		세 부 과 제 수 행 기 간
	소속기관	성 명	소속기관	성 명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성명환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김수석 승준호	'06.4-'08.4
지적재산 평가모형의 개발과 가치평가	경북대학교	김태균	경북대학교	손미연 지현서	

목 차

Summary	vii
---------------	-----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 목적과 방법	2
3. 주요 연구 내용	3
4. 선행 연구 검토	3

II.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및 논의 동향

1.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5
2. 식물품종 및 유전자원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적 협의 내용	7
3. 유전자원 관련 분쟁사례와 합리적 이용사례	21
4. 한국의 유전자원 관리·보존 실태	24

III. 지적재산권 관련 법체계와 실태

1. 지적재산권 관련 법체계 및 제도 현황	30
2. 품종보호	31
3. 식물특허	43
4. 상표	46
5. 지리적표시	50
6. 식품관련 특허	61

IV. 지적재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1. 가치평가 모형	65
2. 지리적표시·상표권에 대한 평가 : 참외	72
3. 품종특허·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 평가 : 장미와 딸기	78
4.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에 대한 가치 평가 : GABA사과	88

V.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1. 분쟁해결제도	94
2. 분쟁사례	95
3. 시사점	115

VI.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1. 농업부문 지적재산의 개발 방향	117
2. 농업부문 지적재산의 개발 및 보호 전략	118
3. 농업부문 지적재산 관련 대책 및 제도 정비	122

VII. 적요

	126
--	-----

VIII. 부록

1.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	131
2.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	155

IX. 인용문헌

	163
--	-----

표 차 례

제Ⅱ장

표 2- 1	지적재산권의 분류	7
표 2- 2	UPOV 협약의 개정 과정	8
표 2- 3	UPOV 협약 비교	8
표 2- 4	UPOV 협약의 내용(1991년 협약 기준)	9
표 2- 5	농업 관련 품종보호법 타결 상황	11
표 2- 6	유전자원 관련 작업과제	16
표 2- 7	전통지식 관련 작업과제	16
표 2- 8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의 대상 식량작물	19
표 2- 9	유전자원 관련 특허사례	22
표 2-10	우리나라 종자식물의 종 현황	25
표 2-11	목본식물의 종 현황	25
표 2-12	특산목본식물 유전자원의 현황	26
표 2-13	종자식물의 현지내 보존 현황	26
표 2-14	종자은행 보존작물 중 재래종 유전자원의 현황	27
표 2-15	산림유전자원 보존현황	27
표 2-16	자생초본식물 유전자원 현지의 보존현황	28
표 2-17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주요 관리기관	28

제Ⅲ장

표 3- 1	지적재산권의 법체계 및 관할기관	31
표 3- 2	연도별·작물별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38
표 3- 3	식량작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38
표 3- 4	채소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38
표 3- 5	과수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39
표 3- 6	화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39
표 3- 7	사료작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39
표 3- 8	특용작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39
표 3- 9	특용작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40
표 3-10	연도별 개인육종가의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40

표 3-11	품종보호대상작물 및 지정계획	42
표 3-12	식물 관련 발명의 주요 특허 현황	43
표 3-13	연도별 상표등록건수	47
표 3-14	농축산물 브랜드 현황	48
표 3-15	시도별 브랜드 현황	48
표 3-16	품목별 브랜드 현황	48
표 3-17	시도별 브랜드 등록 현황	49
표 3-18	품목별 브랜드 등록 현황	49
표 3-19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상의 내용	53
표 3-20	지리적표시의 품목별 등록 현황 (2007. 6월 현재)	54
표 3-21	지리적표시의 년도별 등록 현황	54
표 3-22	지리적표시의 지역별 등록 현황	55
표 3-23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	58
표 3-24	연도별 출원건수	61
표 3-25	농업 및 식품분야 특허출원 동향, 2005	61
표 3-26	농업관련 국제특허분류	62
표 3-27	농업 및 식품에 대한 특허출원 분야	63
표 3-28	식료품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63

제Ⅳ장

표 4- 1	지적재산별 분석방법 비교	65
표 4- 2	참외의 속성 및 수준	73
표 4- 3	응답자에게 제공한 참외 속성에 대한 설명	73
표 4- 4	선택형 실험 설문지 예시	73
표 4- 5	설문에 이용된 프로파일들의 조합	74
표 4- 6	응답자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	75
표 4- 7	변수의 정의	76
표 4- 8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76
표 4- 9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77
표 4-10	응답자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	78
표 4-11	국내품종 사용경험(장미)	79
표 4-12	해외품종 선호정도(장미)	79
표 4-13	응답자에게 제공한 진선미에 대한 설명	79
표 4-14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80

표 4-15	제시가격 수준별 반응결과	81
표 4-16	국내품종 장미(진선미)에 대한 CDF, PDF	82
표 4-17	국내품종 장미(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로짓모형)	82
표 4-18	국내품종 장미(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Turnbull 모형)	82
표 4-19	응답자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	83
표 4-20	국내품종 사용경험(딸기)	84
표 4-21	해외품종 선호정도(딸기)	84
표 4-22	응답자에게 제공한 설향에 대한 설명	84
표 4-23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85
표 4-24	제시가격 수준별 반응결과	86
표 4-25	국내품종 딸기에 대한 CDF, PDF	86
표 4-26	국내품종 딸기(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로짓모형)	87
표 4-27	국내품종 딸기(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Turnbull 모형)	87
표 4-28	사과의 속성 및 수준	88
표 4-29	응답자에게 제공한 사과 속성에 대한 설명	89
표 4-30	선택형 실험 설문지 예시	89
표 4-31	응답자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	90
표 4-32	사과의 속성별 인지도	90
표 4-3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91
표 4-34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92

제Ⅷ장

표 8- 1	일본의 지적재산권의 주요 시책	134
표 8- 2	등록 사정된 지역 단체 상표(구체 사례)	143

그림 차례

제Ⅳ장

그림 4-1	가격과 선택 확률(장미-진선미)	81
그림 4-2	가격과 선택 확률(딸기-설향)	86

제Ⅷ장

그림 8- 1	일본의 지적재산권의 개요	132
그림 8- 2	일본의 지적 재산권 추진 계획 실시 체제	133
그림 8- 3	일본의 지적재산권의 확립 과정	133
그림 8- 4	일본의 특허 출원으로부터 취득까지의 흐름	137
그림 8- 5	일본의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과정	139
그림 8- 6	일본의 의장 등록 출원의 과정	140
그림 8- 7	일본의 상표 등록 출원 과정	143
그림 8- 8	일본의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의 개요	145
그림 8- 9	일본의 품종 출원의 과정	145
그림 8-10	와규의 유전자원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	150
그림 8-11	지역브랜드의 보호와 상표법 개정	151
그림 8-12	TLO를 통한 기술이전의 촉진	152

Summary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tections of intellectual properties in Korean agriculture

This study's objective is to review the institution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ies and genetic resources situation, to evaluate economic valu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gricultural sector, and then to suggest the development strategies and protections of intellectual rights. The m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gricultural sector include patent on plant,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y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was established by the Seed Industry Law along with the 1991 UPOV Act.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develop seed industry and to stabilit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by enacting provisions on protection of the breeder's right, management of variety performance, seed production, certification, marketing and etc. The National Seed Management Office, as an implementing agency fo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has been reorganized in 1998.

The economic values of patent on plant,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trademarks for specific crops were evaluated by the econometric methods. For example, this study is to estimate consumer'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geographical indication of Seongju melon.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estimated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geographical indication is very meaningful. Consumers are willing to purchase geographical indication products even if its price is higher than ordinary agricultural product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consumers have very high reliability towards geographically indicated products.

The concerns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re increased. Therefore, it should need a policy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griculture for protecting their rights. This study suggeste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y, applying R&D results to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ctivat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for regional economy.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 지식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과거 주된 생산요소이었던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지식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지식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인류는 각종 식물, 동물, 미생물 등 각종 유전자원을 탐색, 확보, 개발하여 실생활에 이용해오고 있다. 생명공학 연구의 확산과 기술혁신을 통해 식량문제, 농업, 의약품개발,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산업적 응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농업의 미래가 유전자원의 확보와 연구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막대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세계 각 국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창작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지적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활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전자원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TRIPs 협정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전개된 적이 거의 없었다.
- 농업부문은 경제의 범세계화에 따른 경쟁 심화,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지역간 소득격차 발생, 지구 온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세계적인 식량난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적재산은 농업부문이 처해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의 창출, 산업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우리나라는 일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업부문의 지적재산관련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으며, 그 관리도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 지적재산과 유전자원의 보호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 보호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2. 연구 목적과 방법

2.1.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대응하여 국내 농업 유전자원 등 농업관련 지적재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부문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와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형태별, 분야별 특성 요인을 파악하여 각각의 요인이 지적재산권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기술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을 조명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① 지적재산분야의 국제적 논의 동향, ② 국내 농업 유전자원 등 지적재산의 활용 실태 파악, ③ 농업부문 지적재산의 가치와 경제적 효과 계측, ④ 농업관련 지적재산분야의 개발전략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제도 개선 등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2.2. 연구 방법

- 농업관련 지적재산, 유전자원 활용 실태, WTO, WIPO, FAO 등 국제기구의 관련제도, 농업관련 지적재산분야의 개발 전략 등은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외국의 경우 일본의 지적재산제도를 조사하였다. 농업부문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는 소비자와 생산자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 농업분야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농업분야 지적재산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지적재산에 대한 사회적 한계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농업부문의 지적재산은 특성에 따라 지리적표시, 상표권, 품종특허권, 품종보호권,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 등으로 분류하였다. 지적재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분석을 위한 자료조사의 대상도 다르게 설정하였다.
- 지리적표시권, 상표권,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선택형 실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농식품 소비자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품종특허권(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는 수요자인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가상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및 생산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전국에 산재해 있는 농업 유전자원 등 지적재산의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특허청,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지원과 세미나를 통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3. 주요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형태별, 분야별 특성 요인을 파악하여 각각의 요인이 지적재산권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적용을 용이하도록 기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유전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 및 생물공학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로 정비함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농업관련 지리적표시, 상표, 특허, 품종보호, 영업비밀 등에 대한 사례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분석보다는 지적재산이라는 큰 틀에서 농업부문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 주요 연구 내용은 국내 농업과 농산물의 차별화와 직결된 지적재산관련제도(특허, 상표, 지리적표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농가소득의 제고와 지역특산 농산물의 생산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 보고서는 제Ⅱ장에서 지적재산 관련 국제협약 및 논의 동향, 제Ⅲ장 지적재산 관련 법체계와 관리 실태, 제Ⅳ장 지적재산의 경제적 가치 평가, 제Ⅴ장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제Ⅵ장에서는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록하였다.

4. 선행 연구 검토

- 이두순 외(1999)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국제적 관리제도와 규범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식물 유전자원 확보 현황 파악과 현행 식물 유전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 검토를 통한 정책 대안 제시, 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수립하여 식물 유전자원 국가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 박현태(2001)는 1990년대에 들어 선진국들은 종자 산업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 종자산업은 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태로 보았다. 따라서 종자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종자산업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윤미경 외(2002)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별로 전개되지 못하였는 바, 기존의 ABS를 규율하는 제도를 비교 분석해보고 한국의 유전자원 경쟁력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해결방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국은 인접한 생물다양성 부국인 중국, 태국,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연계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현재 암묵적,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연구기관의 대개발도상국 유전자원 접근 통로를 보다 투명화하고 선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김수석(2004)은 농업·농촌 관련 생물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의 관리·보존 실태를 분석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토착자원의 개념과 중요성의 검토와 농업·농촌 관련 토착자원의 관리·보호 실태, 토착자원의 이용과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가 분석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관련 토착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오경희(2004)는 국제사회에서 고유 생물자원의 보유가 그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자산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음에 따라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 분석과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체방안과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 UPOV(2005)의 연구보고서는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동맹(UPOV)이 UPOV 협약에 따른 식물 신품종 보호 시스템(PVP 시스템) 도입의 영향에 관한 정보를 PVP 시스템 도입을 고려중인 국가들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각 국가들의 식물 품종 보호의 사례 분석을 통해 PVP 시스템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제시하였다.

Ⅱ.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및 논의 동향

1. 지적재산권의 정의와 분류

1.1.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정의와 분류

- 19세기 초부터 선진국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확대·강화에 노력해 왔다. 1883년 11개국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파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베른협약」에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협약이 체결되었다.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관리하고 세계지적재산권제도의 발전과 조화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1967년에 설립되었다. WIPO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관리하고, 서명국의 지적재산권법 시행을 지원하고, 국내법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파리협약」(1998년 가입), 「특허협력조약」(PCT, 1984년 가입), 「부다페스트조약」(1988년 가입),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 2002년 가입) 등이 WIPO가 주관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이다.
- WIPO는 설립협약 제2조 8항에서 “지적재산권이란 문학·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의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 저작 인접권, 특허권, 과학적 소유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이나 서비스표권, 지리적표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 등 일체가 모두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
-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크게는 산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예술분야의 창작을 뒷받침하는 저작권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WIPO는 산업재산권을 다시 ① 발명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의장권, ④ 집적회로 지적재산권, ⑤ 상표권, ⑥ 상호권, ⑦ 지리적표시, ⑧ 부정경쟁방지로 세분하고, 저작권을 ① 복제·배포권, ② 공연·방송권, ③ 번역·편집권, ④ 윤리권으로 세분한다.

1.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정의와 분류

가. TRIPs 협정의 개요

- WTO에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상이 제기된 것은 일부 선진국이 자국 개발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협상 의제로 제안한 데에 있었다. 이 결과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 on the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마련되게 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 그룹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마련을 추구하였고, 개발도상국 그룹은 지적재산권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할 공익으로 보고 경제발전과 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TRIPs 협정은 전문과 총 7부, 7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 시정, ② 지적재산권의 유효 적절한 보호 촉진, ③ 행사를 위한 수단과 절차 확보, ④ 각국 법제를 충분히 고려한 분쟁의 다자간 해결과 분쟁 방지 보장, ⑤ 개도국의 특수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행사를 위한 수단과 절차를 규정(전문)하고 있다.
- TRIPs 협정의 적용 범위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 대해 동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본 원칙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저작권,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의장, 지리적표시, 시행 절차, 분쟁 해결 절차 등을 내세우고 있다. TRIPs 협정의 주요 논의 대상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로서 지적재산권의 내용과 형태, 보호 기간, 보호 내용, 보호 대상이다. 이 중에는 농업 특히 농작물 품종과 관련된 특허권(품종보호권)도 포함되어 있다.

나. TRIPs의 정의와 분류

- TRIPs에서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발명, 저작·창작 등 지적 성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TRIPs는 지적재산권을 크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을 다시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의장권, ④ 상표권, ⑤ 지리적표시권으로 세분하고 있다. 저작권은 ① 저작재산권, ② 저작인격권, ③ 저작인접권으로 세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은 ① 산업저작권, ② 첨단산업재산권, ③ 정보재산권으로 세분한다(표 2-1).

표 2-1 지적재산권의 분류

산업재산권	특허권 :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첨단산업재산권 : 생명공학기술, 반도체집적회로 설계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자료: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 제4권, GATS, TRIPs, DSU, 1996.

2. 식물품종 및 유전자원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적 협의 내용

- 현재 국제적으로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립되어있는 것은 동식물에 대한 특허와 식물종자에 대한 품종보호이고,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것이다. 생물에 대한 특허와는 별도로 식물종자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이란 특별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협약이다.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새로운 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TRIPs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을 제정하여 2004년에 발효시켰다.

2.1. 식물종자의 신품종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적 논의 내용

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협약

- 1961년 「식물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종자 선진국 중심으로 채택되고, 1968년에 동 조약이 발효되어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연맹 UPOV¹가 발족되었다. UPOV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에 관한 유일한 국제협약으로 회원국간 표준화된 심사방법, 각국의 품

¹ UPOV는 원래 불어인 Un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les의 약자인데 영어로는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가 된다.

종 출원·심사 동향,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교류가 목적이며, 신품종 보호 권리와 내용 결정, 최저한의 보호기간, 내국민 대우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UPOV의 협약은 1961년에 제정되어 1972년에 1차 개정을 하였고, 1978년에 2차 개정, 1991년에 3차 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표 2-2).

표 2-2 UPOV 협약의 개정 과정

구 분	개정 연도	개정 내용	발효 기준
제1차 개정	1972	미가입국가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담금의 부담 구분 개정	1977년
제2차 개정	1978	연맹에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약 내용의 탄력화	1981년
제3차 개정	1991	육성자의 권리 강화, 보호대상식물의 확대 등	1998년 4월

자료: UPOV

- 2006년 현재 UPOV 가입국은 총 63개국으로 유럽 국가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982년, 중국이 1999년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02년 1월에 UPOV의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UPOV의 협약(1991년 개정) 내용은 10장 42조로 구성되어 있고 신품종 보호를 위한 계약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육성자의 권리, 육성자 범위, 품종의 명명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2-3). 이 협약 내용은 그 이전의 협약에 비해 육성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 보호대상 식물이 더 크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보호대상 식물을 전 식물로 확대하고, 권리대상도 종자 뿐 아니라 그 수확물과 기본유래품종²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권리범위도 수출입까지 확대되고 보호기간이 15년에서 20년(과수·임목 25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권리의 예외조항도 동시에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농민의 자가채종을 허용한 것이다.

표 2-3 UPOV 협약 비교

구 분	1978년 협약	1991년 협약
보호작물	가입시 5속종, 3년후 10속종 6년후 18속종, 8년후 24속종	가입시 15속종 10년후 전 식물
심사방법	기술, 식물재료	서류, 기술, 식물재료
권리대상	종자	종자, 수확물 및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 기본유래품종
권리범위	종자의 생산, 증식, 판매, 판매에 제공	종자의 생산, 증식, 판매, 판매에 제공, 수출, 수입
권리예외	비상업, 실험	비상업, 실험, 육종재료, 농민의 자가채종
보호기간	15년	20년(과수·임목은 25년)

자료: UPOV

2 기본유래품종(essentially derived variety)이란 주요특성이 원품종의 유전자형 또는 유전자형의 조합에 의해서 발현되고, 원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며, 특정 육종방법에 의한 특성만의 차이가 있는 품종으로 정의된다. 이것의 출현은 자연적 혹은 인위적인 돌연변이나 체세포 돌연변이, 여교잡 또는 유전공학에 의한 형질전환으로 가능하게 된다.

- UPOV 협약내용 중 회원국의 품종제도 구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성자의 권리 부여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품종보호권의 성립요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육성자의 권리부여 조건은 신품종이 ① 신규성, ② 구별성, ③ 균일성, ④ 안정성, ⑤ 품종명칭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 여기서 신규성은 출원전 품종의 종자 또는 수확물의 상업적 판매 또는 처분이 없어야 하고, 출원국 내에서는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국 이외 국가에서는 접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속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³ 구별성은 출원서 제출시 일반인에게 알려진 다른 품종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균일성은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관련 특성이 충분히 균일해야 함을 가리킨다. 균일성의 판단방법으로는 영양번식 및 자화수분품종은 이형주(off-type)의 숫자로 판별하고, 타화수분품종은 대조품종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안정성은 반복번식후 관련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있어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판단방법으로는 제출된 표본이 연차간에 균일하게 나타나면 안정적인 것으로 본다. 끝으로 신품종은 품종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가져야 한다.

표 2-4 UPOV 협약의 내용(1991년 협약 기준)

구 분		조항의 내용
제1장	정의	법, 육성자, 육성자의 권리, 품종의 정의(1조)
제2장	계약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	당사자의 일반적 의무(2조), 보호대상 속·종(3조), 내국민 대우(4조)
제3장	육성자 권리 부여 조건	보호 조건(5조), 신규성(6조), 구별성(7조), 균일성(8조), 안정성(9조)
제4장	육성자 권리 부여를 위한 출원	출원의 제출(10조), 우선권(11조), 출원의 심사(12조), 임시보호(13조)
제5장	육성자의 권리	육성자 권리 범위(14조), 육성자 권리의 예외(15조), 육성자 권리 소멸(16조), 육성자 권리 행사제한(17조), 상거래 규제 수단(18조), 육성자 권리 기간(19조)
제6장	품종의 명명	품종의 명칭(20조): 호칭, 등록, 제3자 선택권, 명명 통보, 품종명 사용 의무, 품종 관련 표시 사항 등
제7장	육성자권리의 무효화 및 취소	육성자권리의 무효화(21조), 육성자 권리의 취소(22조)
제8장	연맹	회원국(23조), 법적 지위 및 위치(24조), 기구(25조), 이사회(26조), 연맹사무국(27조), 언어(28조), 재정(29조)
제9장	협약 이행과 기타 의결 사항	협약 이행(30조), 계약 당사자와 국가의 관계(31조), 특별 의결 사항(32조)
제10장	체결 규정	서명(33조), 비준, 수락, 승인, 계승(34조), 유보권(35조), 보호될 속·종에 관한 법령 통보와 공포해야 할 법(36조), 유효 등록과 과거 법의 폐지(37조), 협약의 개정(38조), 폐기(39조), 기존권리의 보호(40조), 협약의 원본과 공식 문서(41조), 기타 기능(42조)

자료: UPOV

³ 단 수목류 및 덩굴류는 접수일로부터 6년 이내에 속해야 한다.

- 품종보호제도의 세계적인 규범화는 신품종의 육성을 촉진하고 우수품종의 이용을 확대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인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품종육성능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갖춘 선진국과 다국적 종자회사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우려와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WTO/TRIPs 협정이 발족되면서 식물품종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는 품종보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UPOV 체제는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국제기구보다 영향력이 크다. 그 이유는 세계 선진농업국의 신품종보호제도가 UPOV 협약 내용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에 대한 제반 정보가 UPOV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품종보호제도의 국제적인 신뢰가 UPOV 가입 여부에 따라 평가받고 있는 점도 주요한 이유가 된다.

나. WTO/TRIPs의 논의 내용

- TRIPs에서 식물의 신품종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권리는 식물의 신품종도 특허권과 같이 타인이 제조, 이용,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고, 기술적 진보로 인정되며 다른 형태의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 현재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지적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특성을 갖고 있다.
 - ① 육성자의 권리가 있다. 어떤 품종에 대한 식물 육성자의 권리 소유자는 타인이 사전 합의 없이 상업용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⁴
 - ② 품종 육성 및 종자 관련 기술개발 성과인 특정유전자의 특성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다.
 - ③ 교역상의 비밀이 보장된다. 교역상 비밀은 보호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근친교배계통(inbred line)으로부터 생산된 교잡종자는 종자 제공자로부터 구입에 의해서는 접근이 가능하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근친교배계통은 육종회사의 비밀로서 접근이 불가능하다.⁵
- TRIPs 중 식물특허 부분에 대한 협상의 주된 이슈와 타결 상황은 <표 2-5>와 같이 요약된다. 특허권 부여의 근거에 대해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정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선출원주의를 주장하였으나, 기술강국인 미국이 주장한 선발명주의⁶가 채택되었다. 특허기간은 선진국이 주장한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 채택되었고, 특허보호대상에

4 연구와 육종 목적을 위한 사용은 제한 받지 않으므로 식물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한 접근 제한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5 지적재산권에서 근친 교배계통에 대한 비밀은 F1 종자의 교배 모본을 지칭한다. 만약 개발도상국 원산인 재래종을 사용해 우량 품종이 육성될 경우, 개발권자의 품종은 보호되지만 모본이 비밀이어서 자원 원산지국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6 발명의 우선권은 발명을 최초로 실용화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에게 부여한다.

대해서는 식물 및 동물 발명을 제외하되, 식물변종은 특허 또는 특별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했다. 특허권에 대한 경과 조치로 TRIPs 협상은 “체약국들은 당해 체약국에 대한 협정 발효 일로부터 일반적으로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본 협정 조항들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개도국은 4년 추가가 가능하고, 최빈개도국은 10년 추가가 가능토록하여 개발도상국을 한시적으로 보호하였다.

표 2-5 농업 관련 품종보호법 타결 상황

구 분	개도국	선진국	타결 내용
특허권 부여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미국 주장 선발명주의
특허 기간	국내 입법으로 기간 결정	출원일로부터 20년	선진국 주장 채택
특허보호 대상	동·식물을 제외	살아 있는 유기체 포함	동·식물 제외, 식물변종은 보호
특허권 경과 조치	의무 유예 주장	즉각적 의무 이행	개도국 한시적 보장

- 현재 도하개발아젠다(DDA)의 TRIPs 분야에서는 생명체에 대한 특허 불허 규정에 대한 재검토, 유전자 연구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대두된 유전자에 대한 특허보호 문제, 유전자원 공유 문제, 그리고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연계하여 유전자원 제공자와 기술개발자간의 이익공유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⁷. 이러한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시각차가 존재한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은 TRIPs 협정의 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활용과 이익공유 등을 국제계약에 의한 구속적 의무로 하고자 한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국내법 하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규율을 주장한다.

2.2. 유전자원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적 협의 내용

- 유전자원의 권리보호 및 이용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기본적으로 자원보유국인 개발도상국과 기술보유국인 선진국 간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먼저 개발도상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기존의 지적재산권 제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보호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sui generis system)로 이들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이 약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 또는 규범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반면에 선진국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구별되는 새로운 체제(sui generis system)의 도입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도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이용하여 보호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의 도입을 기본방향으로 하

7 윤미경·최윤희(2002) 참조

고 있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회의에서 선진국들은 아직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협상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보다 많은 사례조사를 통해 개별국가들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체제의 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가. WTO/TRIPs

- WTO의 TRIPs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술보유국인 선진국들의 입장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고 있다. 따라서 TRIPs는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하에서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유전자원 중에는 미생물과 식물변종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생물에 대한 특허이다. 특허대상을 다루는 TRIPs 협정 제27조는 일정한 예외조건하에 모든 기술분야의 어떤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27.3조에 규정한 예외조항 중에서 제27.3(b)는 “미생물 이외의 동물과 식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 제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물학적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제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생물특허는 자연상태에 있는 미생물을 단지 발견하는 것만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것인데, 이는 특허등록의 3대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는 자연발생적인 생물체에 대하여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TRIPs는 유전자원 일반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TRIPs 이사회 논의에서 핵심쟁점은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를 허용해야 하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조건하에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해야 하는가”이다.
-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은 현 상황에서 CBD의 효과적 이행과 TRIPs의 관련 규정이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CBD는 자연발생적 생물체에 대하여 유전자원국의 국가주권을 인정하는 반면, TRIPs에 의한 특허는 생물체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두 협약간의 법적 불일치가 나타난다. 따라서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를 허용한다면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먼저 유전자원보유국의 자원주권을 확보하여 그 국가의 자원을 보호하고,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획득한 특허로 인한 수익을 기술개발자와 자원보유국이 나누어 가지는 이익공유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TRIPs 협정 제27.3(b)조와 특허의 공개조건인 제29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공개하도록 제안한다.⁸

⁸ 개발도상국 공동제안서(2002. <IP/C/W/356>). 이 제안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브라질, 중국,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네수엘라, 잠비아, 짐바브웨이다.

- ① 출원된 특허 대상에 있어 유전자원의 출처
- ② 출원된 특허기술이 원용한 전통지식
- ③ 유전자원 보유국의 사전통지된 동의에 대한 증명
- ④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공유에 대한 증거

○ 반면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대한다. 유전자에 대한 특허는 그 출처가 되는 유전자원 실물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특허는 단지 추출되고 가공된 유전자를 발명자 이외의 제3자가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TRIPs 협정상 자연상태에 있는 생물체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으나 기술적 공정, 분리, 정화를 통하여 그 전과는 별개의 새로운 개체가 나타난다면 이는 충분히 인위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원 보존과 특허는 관계가 없고, 또한 유전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CBD와 TRIPs는 서로 관련이 없다. 즉 서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협정은 상호충돌하지 않는다고 한다.⁹

○ 선진국 관점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들 간의 사적 계약으로 CBD에서 제안하는 “접근과 이익공유”(ABS) 계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을 제외한 여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해 별도의 권리체제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TRIPs는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나. 생물다양성 협약(CBD)

(1) CBD의 기본방향

○ CBD 협약은 1992년 5월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으며 1993년 12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하였다. CBD의 주된 목적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세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다. CBD 협약 제1조는 협약의 목적을 ① 생물종 다양성의 보존 ②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로 밝히고 있다.

○ CBD의 출현으로 그 이전에는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간주되어왔던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은 배타적 사적 소유권이 아니라 지역민이나 국가의 공동소유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

⁹ 미국제안서(2001. <IP/C/W/257>) 참조.

한 소유권 창출은 유전자원에 대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 CBD협약 제15조는 국가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결정권은 각 국가에 있고 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제15조 1항). 그리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상호합의된 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르며(제15조 4항), 자원제공국의 사전통지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 PIC)에 따른다(제15조 5항).
- 나아가 협약은 접근에 대한 대가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7항 및 제19조 2항). 또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이 이용자의 유전공학 연구활동에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다(제19조 1항). 그리고 전통지식을 활용하여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공평한 분배를 규정하고 있다(제8조 j호).
- CBD는 협약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를 당사자계약 차원으로 구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본(Bonn) 지침(Bonn Guidelines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f their Utilization)이다.¹⁰

(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본(Bonn) 지침

- Bonn지침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4월 제6차 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지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여 계약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Bonn지침의 내용은 ① 일반규정, ② 제공자와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③ 이해관계자의 참여, ④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계약 절차, ⑤ 기타 규정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보다 핵심적인 것은 사전통지된 동의(PIC), 상호합의된 조건(MAT) 및 접근과 이익의 공유(ABS)에 대한 내용이다.

¹⁰ 본(Bonn)지침은 2002년 4월에 개최되는 제6차 CBD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특별개방실무반(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에 의해 2001년 10월 31일에 작성된 것이다.

1) 사전통지된 동의(PIC)

- Bonn지침은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자문그룹 형성, 그리고 기술적, 법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 특히 ABS 계약의 중요한 단계인 사전통지된 동의(PIC)의 제도화를 권고한다. PIC는 법적 명료성과 확실성을 갖추어야 하며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PIC의 구성요소는 국가관할기구, 이용기간, 이용목적, PIC 동의요건,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식, 동의과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침은 국가관할기구를 설치하여 PIC 절차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맡도록 하고 있다.

2) 상호합의된 조건(MAT)

- Bonn지침은 ABS가 상호합의된 조건에 기초하도록 한다. 상호합의되는 조건의 대상으로는 유전자원의 형태와 양, 활동의 지리적 범위, 자원의 가능한 용도, 자원에 대한 권리, 조건(MAT)의 재협상 조항, 제3자에게 이전 여부 및 조건, 비밀정보의 처리, 공유이익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상호합의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 ① 법적 명료성과 확실성
 - ② 거래비용의 최소화
 - ③ 이용자와 제공자의 의무 조항
 - ④ 다양한 자원의 다양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계약협정의 개발
 - ⑤ 다양한 이용에 포함되는 수집, 분류, 연구, 상업화 활동
 - ⑥ 합리적 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교섭
 - ⑦ 서면합의로 규정

3) 접근과 이익공유(ABS) 계약

- ABS 계약의 규율범위는 CBD 협약에 포함된 모든 유전자원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과 관습, 파생물 및 이러한 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한다. 이익공유 조항에는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ABS 계약에 대한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① 물질이전협정에 포함된 유전자원에 대한 설명
 - ② 물질이전협정 하에 연구, 육종, 상업화 등 허용된 이용
 - ③ 이용자가 지적재산권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
 - ④ 연구결과를 포함한 이익공유에 대한 조건

- ⑤ 제공된 물질에 대한 이전조건
- ⑥ 물질이전협정의 이행
- ⑦ 정의
- ⑧ 수집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의무

○ CBD 회원국은 ABS를 위한 1개의 국내 연락기관을 지정하고 정보제공장치(cleaning-house mechanism)를 통한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내 연락기관은 사전통지된 동의와 상호합의된 조건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국내 관할기구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CBD는 WIPO로 하여금 ABS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ABS를 국제협약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WIPO는 2000년에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WIPO 정부간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권리보호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WIPO 정부간 위원회」는 2004년 3월까지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작업으로는 먼저 유전자원 분야와 전통지식 분야의 작업과제를 <표 2-6>, <표 2-7>과 같은 내용으로 정했다.

표 2-6 유전자원 관련 작업과제

A1	ABS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가이드라인 개발
A2	기존의 지적재산권 내에서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특허법 검토
A3	「식량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에 따른 유전자원의 ABS 실행방안
A4	유전자원 분야에서 특허보호를 위한 표준규범 가이드라인 설정
A5	현행 품종보호를 통합한 총괄적 유전자원 관리방안

표 2-7 전통지식 관련 작업과제

B1	전통지식의 용어 및 개념 정립
B2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적 보호 가능성, 범위 및 활용에 대한 정보
B3	전통지식을 검색가능한 선행기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 개발
B4	전통지식 보유자의 지적재산권 권리행사 지원방안

- 유전자원과 관련된 작업에서는 ABS에 관한 계약협정의 지침서 초안을 작성해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통지식과 관련된 작업에서는 전통기술을 특허의 선행기술에 포

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가능한 대안들을 제안하여 검토하였다.

- ① 대안1: 기존의 전통지식관련 간행물들을 수집하여 그 중 일부를 PCT 국제조사 때의 최소 문헌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 ② 대안2: 수집된 전통지식 간행물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그 중 일부를 특허문헌저널 (Journal of Patent Associated Literature, JOPAL) 프로젝트에 포함시키는 방안
- ③ 대안3: 내국출원에 대해서도 국제적 방식의 검색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된 지침에 포함시키는 방안
- ④ 대안4: 전통지식의 D/B화와 전자도서관 설립
- ⑤ 대안5: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서류양식을 전통지식 분야에도 적용가능한가 검토하는 방안
- ⑥ 대안6: 전통지식의 문서화 작업에서 문서화담당 주체(지역민, 지역사회, 국가 등)에게 지적재산권 관련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

○ 이러한 6가지 대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지하였으나, 작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다음으로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창설이 논의되었는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력한 국제규범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국제차원의 논의를 지지하나, 전통지식의 정의와 대상, 소유자 등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타의 선진국들은 국제규범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 지적재산권 제도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지금까지 진행된 「WIPO 정부간 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대다수의 WIPO회원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유전자원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은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자체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시스템(sui generis system)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등 기술선진국들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방안, 예를 들어 전통지식을 검색가능한 선행기술로 D/B화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라. 식량농업기구(FAO)

(1) 식량농업유전에 대한 FAO의 기본방향

- 1990년대 이전까지 FAO의 입장은 식량농업유전자원이 인류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접근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CBD의 출범 이후 FAO는 CBD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식량유전자원에 대한 입장이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에서 ‘인류공동의 관심’(common concern of mankind)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식량유전에는 접근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입장 변화에 따라 FAO는 원칙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원활한 접근을 허용하되, 자원보유국의 자원주권을 인정해 자원이용시 공평하고 공정한 ABS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FAO의 새로운 입장은 2001년 제31차 총회에서 제정되어 2004년 6월 29일 발효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 for Food and Agriculture)에 잘 구현되어 있다.

(2) FAO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 FAO는 2001년 10월 제121차 이사회 회의에서 종전에 비구속적 규약 형태로 있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규약」(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을 구속성있는 국제조약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 결과 2001년 11월 3일 FAO 총회에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이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40개의 회원국이 비준하면 발효하는데, 2004년 6월 29일 40번째 비준으로 발효하게 되었다.
- 약칭 국제종자조약으로 불리는 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은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ABS 계약을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방식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은 일차적으로 전 세계 식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35개의 식량작물과 29개의 사료작물, 총 64개의 식물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한다(표 2-8).¹¹
- 조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주권의 제도화, 접근과 이익공유의 다자체제 창설, 농부권(Farmers' Rights) 인정, 공정한 ABS 제도 확립 등이 있다. 먼저 자원주권은 회원국가들이 자국의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할 주권을 가지며, 자국법에 따라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FAO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제10조 1항).

¹¹ 향후 대상 유전자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표 2-8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의 대상 식량작물

속명	작물	비고
Artocarpus	빵나무	빵나무만 포함
Asparagus	아스파라거스	
Avena	귀리	
Beta	사탕무	
Brassica et al.	유채, 양배추 등	
Cajanus	비둘기콩	
Cicer	병아리콩	
Citrus	감귤	Poncirus와 Fortunella 포함
Cocos	코코넛	
Colocasia Xanthosoma	토란류	타로, 코코얌, 타니아 포함
Daucus	당근	
Dioscorea	마	
Eleusine	펑거밀렛	
Fragaria	딸기	
Helianthus	해바라기	
Hordeum	보리	
Ipomoea	고구마	
Lathyrus	갯완두	
Lens	렌즈콩	
Malus	사과	
Manihot	카사바	Manihot esculenta 포함
Musa	마나나	Musa textilis 제외
Oryza	쌀	
Pennisetum	펄 밀렛	
Phaseolus	팥	Phaseolus polyanthus 제외
Pisum	완두	
Secale	호밀	
Solanum	감자	tuberosa 포함 phureja 제외
Solanum	가지	melongena 포함
Sorghum	수수	
Triticosecale	라이밀	
Triticum et. al.	밀	Agropyron, Elymus, Secale 포함
Vicia	야생완두	
Vigna	동부(광저기)	
Zea	옥수수	perennis, diploperennis, luxurians 제외

자료: FAO(2001)

○ 다자체제에 의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연구를 위한 이용과 보존, 그리고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육종 및 직업교육에 이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화학적, 약학적 또는 비식량적인 산업적 이용은 다자체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2조).

○ 농부권에 대해서는 조약의 제9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해당 유전자원을 식량농업자원으로 사용해 오던 전통적 경작자의 권리로 육성·보호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①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보호

- ②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 ③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 공정한 ABS 계약은 농업식량식물유전자원에 대해 접근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활용이익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이익배분을 제도화한 것인데, FAO는 이를 국제종자조약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정한 ABS 계약의 내용으로는 전지구적 행동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이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① 정보교환, ② 기술에 대한 접근과 이전, ③ 역량구축, ④ 상업화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가 있다(제13조).
- 개별 회원국이 조약의 이행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의무로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이용, 특성화 평가와 문서화 등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유전자원의 조사와 목록 작성
 - ② 유전자원의 수집과 관련 정보의 증진
 - ③ 영농현장에서 유전자원을 관리·보존하는 경작자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 ④ 야생식물의 현지내 보존 증진
 - ⑤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물질이전에 대한 협력
 - ⑥ 유전자원의 생존가능성 확대 및 유전통합적 수집에 대한 감시
- 한마디로 FAO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은 식량농업분야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ABS 계약을 구속력을 갖는 다자체제로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가입할 것이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비하는 제도정비 등의 준비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 국제기구들의 입장 요약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먼저 TRIPs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며,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국가소유나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사적 소유 형태의 지적재산권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대한 ABS는 당사자들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 반면에 CBD와 WIPO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국가주권을 인정하고 이들 자원들에 대한 ABS 계약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ABS 계약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자)들 간의 양자계약으로 제도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자체제에 의한 구속력있는 국제조약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들 자원들의 권리화를 위해 기존의 지적재산권체제와는

별도의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 FAO는 기본입장이 CBD 및 WIPO와 비슷하지만, 관심대상이 농업식량유전자원에 한정되어 있고 식물유전자원 분야에는 이미 다자체제에 의한 ABS 제도를 출범시켰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유전자원 관련 분쟁사례와 합리적 이용사례

3.1. 유전자원 관련 분쟁사례

가. 유전자원의 중요성

- 유전자원은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이 될 뿐 아니라 생명(BT)산업의 원료가 된다. 최근 정보(IT)산업과 더불어 생명산업이 첨단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제 생명공학기술의 영향력은 의약산업에서부터 농업, 식품, 환경, 전자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신종의 산업분야까지 창출하고 있다.¹² 여기서 생명공학기술의 핵심이 생물자원 및 생물정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농업 등 1차산업의 소재로만 여겼던 유전자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유전자원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작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처럼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 유전자원은 경제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유전자원의 생태조절 기능이나 생물 다양성 기능 그리고 미학적, 문화적 가치 등은 측정하거나 수치화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결국 유전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해 다양한 모형들이 개발되어도 이는 일부 가치만 평가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로 생물산업의 시장규모를 들 수 있다. 생물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생물산업은 그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OECD는 생물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00년 이후 매년 약 11%씩 성장하여 2010년에 약 1,5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생물산업 규모

¹² 유비쿼터스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및 미소기술(NT, Nano Technology)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첨단기술산업을 말한다.

가 1995년 2,500억 원, 2000년의 약 1조 원에서 2010년에 약 9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오경희 2004).

- 유전자원은 이런 자원경제학적 입장에서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달성, 지구자원의 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 간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생물 다양성이 필수적이라는 명제는 1992년의 리오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이후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심영규 2003, 79).

나. 분쟁사례

- 생명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들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긴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유전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서 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유전자원 고유종이 많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연구분소를 설치하여 연구자를 상주시키고 탐험대를 파견하여 이 지역의 식물을 연구하고 있다. 이 밖에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네팔 등 자원보유국의 생물자원을 조사하고 이들을 성분을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그런데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수집하여 자국의 특허로 등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생물해적행위로 인해 자원의 원보유국들과 권리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표 2-9>와 같다.

표 2-9 유전자원 관련 특허사례

구분	특허	특허권자	관련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현상태
Neem 나무	유럽특허 제436257호 미국특허 제5503837호	미국 W.R. Grace & Co.	Neem 나무는 인도에서 천연약재로 사용	유럽특허는 이의신청으로 취소, 미국특허 아직 유효
Basmati 벼	미국특허 제5663484호	미국 Rice Tec.	Basmati 벼는 동남아에서 재배되어 온 품종	일부 청구항 특허 취소
Turmeric 심황	미국특허 제5401504호	미국 미주리주립 대학	심황은 인도에서 전래로 상처치료로 사용	재심사에 의해 특허 취소
Mali 벼	미국특허 제5859339호	미국 UC Davis	벼고조병 내성유전자 Xa21이 Mali벼에서 유래	유전자원제공자와 이익 공유 (ABS) 추진

자료: 특허청(2002)

3.2. 유전자원 이용의 합리적 해결 사례

가. 코스타리카의 ABS계약 사례¹³

- 코스타리카의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 of Costa Rica, 약칭 INBio)는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1년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Merck)와 ABS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의약적, 농업적 잠재가치가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 탐사로서 당초 2년간의 계약에서 1994년과 1996년에 각각 2년씩 연장되었다. 이 계약에 의해 Merck사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11개 자연보존지역 및 사유지에서 제한된 수의 식물과 곤충, 미생물 표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방식은 INBio가 자원의 채집과 표본의 가공을 담당하고 Merck사는 자사의 설비를 활용하여 이를 평가분석하는 것이었다.
-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대가로 Merck사는 INBio에 2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표본의 채집 및 가공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Merck사는 채집된 자원에서 분리된 물질이 향후 상업화된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분을 로열티 형태로 INBio에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¹⁴
- 이 계약은 특허와 상업화, 기술 실시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들은 계획과 진행상태에 대한 상호협의 하에 독자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와 별도로 맺는 계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호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이행규정을 갖고 있다.

나.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유전자원 수집계약 사례¹⁵

-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ABS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의 유전자원 수집계약이 있다. NCI는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88년 이익공유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1990년 마다가스카르 정부와의 계약에 처음 적용하였다. 이후 1992년 NCI는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개량한 수집계약서(Letter of Collection, LOC)로 자원보유국들과의 ABS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NCI는 미국이 CBD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보유국들과 ABS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3 오윤석(2004) 및 윤미경/최윤희(2002) 참조.

14 로열티 크기는 비밀보호조항으로 규정해 공개되지 않았다.

15 오윤석(2004) 및 윤미경/최윤희(2002) 참조.

- 유전자원 수집계약서에는 이익공유, 지적재산권,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정보제공, 유전자원의 추가공급, 제3자에 대한 물질이전계약, 개발기술에 대한 공개 등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원보유국(기관)과 NCI의 공동성과물에 대해서는 양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할 수 있고, 금전적 이익공유 또는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는 제품을 상업화하는 기술실시자와 자원보유국(기관)이 직접 협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NCI의 기술실시자로 선정된 자는 계속되는 연구개발과정에 자원보유국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 NCI는 지금까지 20여 개국 이상의 기관과 수집계약(LOC)을 체결하고 있다.

4. 한국의 유전자원 관리 · 보존 실태

- 유전자원의 보존에는 현지내(in situ) 보존과 현지외(ex situ) 보존이 있는데, 현지내 보존은 생태계와 천연서식지에서의 보존과 이들의 자연환경에서 생존가능한 종 집단의 관리 및 복구를 말한다. 반면 현지외 보존은 천연서식지 밖에서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보존을 말한다(CBD협약 제2조).
- 이 중 보다 바람직한 보존방식은 서식지에 성장하는 형태로 보존하는 현지내 보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적인 친화성, 적응성을 고려하고 진화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유전자원의 보존에 현지내 보존이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내 보존에 따르는 시간, 노력, 경비 및 이용성을 고려할 때 전체 유전자원에 대해 현지내 보존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현지외 보존이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차선의 방안이 된다. 현지외 보존의 주된 형태는 생물의 종자를 종자은행에 보존하거나, 번식작물을 포장에 또는 시험관 내에 보존하는 방법을 택한다.

4.1. 식물유전자원¹⁶의 분포 현황

- 우리나라의 종자식물은 재배작물과 원예식물 396종을 포함하여 총 4,596종으로 알려져 있다(이창복 1976). 이는 전세계 종자식물(관속식물)의 2.3%에 해당한다. 종자식물 중에는 피자식물이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표 2-10).

¹⁶ 유전자원에는 식물유전자원과 동물유전자원, 미생물유전자원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농업 신품종과 관련이 있는 식물유전자원만을 다루기로 한다.

-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식물의 용도는 목초자원식물이 1,101종(24.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약용식물(21.7%), 식용자원식물(18.3%), 관상자원식물(16.6%), 목재자원식물(9.2%), 섬유자원식물(0.7%), 공업자원식물(0.3%) 순이며 35.6%에 해당하는 1,637종은 아직 용도미상의 자원으로 분류되고 있다(박철호/장광진 2002).

표 2-10 우리나라 종자식물의 종 현황

구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교잡종
포자식물		21	62	229	-	21	4	-
나자식물		6	20	49	-	20	22	1
피자 식물	쌍자엽	132	743	2,223	9	781	258	22
	단자엽	26	240	792	-	140	25	-
계		185	1,065	3,293	9	962	309	23

자료: 이창복(1976)

- 한편 북한에는 3,620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는데, 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087종이 식용 또는 약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봉섭/임록재 1988).
- 종자식물 중 고유종(재래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지만 대략 25% 정도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관속식물은 3문 10강 107목 222과 968속 3,175종 841변종 174품종으로 총 4,191 분류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약 25%에 해당하는 1,118종이 고유종으로 분류된다(Nakai 1952, 박철호/장광진 2002에서 재인용).
- 여기서 산림유전자원의 현황을 보면, 관속식물 중 목본식물은 73과 209속 594종 317변종 136품종 24교잡종의 총 1,071 분류군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침엽수가 45분류군이고 활엽수가 1,026분류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1 목본식물의 종 현황

구분	과	속	종	변종	품종	교잡종	계
나자식물	4	12	26	10	9	-	45
피자식물	69	197	568	307	127	24	1,026
계	73	209	594	317	136	24	1,071

자료: 김찬수(2004), 산림과학정보 제153

- 목본식물의 고유종에 해당하는 특산목본식물은 31과 74속 74종 81변종 61품종 3교잡종의 총 219분류군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12). 분류군 비율로 볼 때 고유종이 전체 목본식물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 특산목본식물 유전자원의 현황

구분	과	속	종	변종	품종	교잡종	계
나자식물	3	6	4	3	5	-	12
피자식물	28	68	70	78	56	3	207
계	31	74	74	81	61	3	219

자료: 김찬수(2004), 산림과학정보 제153

4.2.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 종자식물의 현지내 보존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총 1,128종 1,130만점의 식물이 약 2,691.8ha 면적에서 보존되고 있다(표 2-13).
- 현지의 보존의 경우, 농업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종자형태로 1,132작목 1,777종 152,269점을 종자은행에서 보존하고 있고, 영양체 형태로는 996종 22,900점을 작목별 시험장 및 연구소에 보존하고 있다.

표 2-13 종자식물의 현지내 보존 현황

구분	보유종수	보유점수	보유면적(ha)	보유기관
수목	30	2,580,190	-	전남, 충남, 강원
수형목	3	24	-	전북
야생화	238	7,532,895	-	자생식물협회, 충남, 강원, 경남
자생란	4	8,495	-	충남
자생식물	720	29,341	12.8	경북, 경남, 국립수목원
조경수	115	1,144,746	-	한국조경수협회, 충남, 강원
차대유전자 보존림	3	-	22	국립산림과학원
채종림	4	6,630	-	전북
현지유전자 보존림	11	-	2,657	국립산림과학원
계	1,128	11,302,321	2,691.8	

자료: 조사자료

- 종자 형태로 보존하는 작물의 보존 점수를 보면, 식량작물이 76.0%, 특용작물 12.1%, 원예작물 9.4%, 기타 2.5%로 주로 식량작물 중심으로 보존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식량작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입처 별로는 국내자원이 39%, 국외자원이 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유용한 유전자원을 주로 외국을 통해 확보해 왔음을 보여준다.
- 우리나라 보유자원은 1,130만점으로 양적으로는 세계 6위 수준이나,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에

서 보유하고 있는 작물종자의 유전자원 중에서 우리나라 재래종 자원은 2005년 말 현재 30,869점으로 총 보유자원의 20.3%에 불과하여 국내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자원주권을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재래종 유전자원을 작물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이 22,974점으로 재래종 비율이 19.9%, 특용작물이 2,346점에 16.3%, 원예작물이 5,188점에 28.1%로 나타난다(표 2-14). 식량작물 내에서는 잡곡의 재래종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고, 벼의 재래종 비율이 6%로 가장 낮은 편이다.

- 우리나라 보유자원 중 식량작물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식량작물 위주의 단순한 유전자원 확보에 치중하여 보유자원의 대부분이 식량작물로 다양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표 2-14 종자은행 보존작물 중 재래종 유전자원의 현황

구 분	재래종 유전자원		재래종 비율 (%)
	점수	구성비(%)	
식량작물	22,974	74.4	19.9
특용작물	2,346	7.6	16.3
원예작물	5,188	16.8	28.1
기타	361	1.2	9.5
합 계	30,869	100.0	20.3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005. 12 기준)

- 산림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존은 아직 체계적이지 않고 현재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국립산림과학원 산하 난대산림연구소이다. 난대산림연구소는 초본식물까지 포함하여 2004년 6월 현재 134과 402속 545종 1아종 87변종 16품종 총 649분류군의 7,150점을 보존하고 있다(표 2-15).¹⁷ 이와 별도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유전자원부에서도 85과 200속 277종에 해당하는 5,255점의 산림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표 2-15 산림유전자원 보존현황

구분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나자식물	5	9	11	-	1	3	15
피자식물	129	393	534	1	86	13	634
계	134	402	545	1	87	16	649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2004. 6. 기준)

- 산림자원 중 초본식물에 대해서는 국립수목원에서 고유종 중심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2004년 6월 현재 1,426종의 초본식물 3,153점을 현지의 보존하고 있다(표 2-16).

¹⁷ 보존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의 90% 이상이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표 2-16 자생초본식물 유전자원 현지외 보존현황

구분	종	점	대표종
국화과	49	63	산흰썩, 포천구절초, 어리병풍 등
장미과	38	60	거제딸기, 가침박달, 갈기조팝 등
백합과	33	62	섬말나리, 삿갓나리, 층층둥글레, 등
미나리아재비과	30	56	매미꽃, 금꿩의다리, 섬노루귀 등
산형과	24	38	섬시호, 개회향, 야생당근 등
콩과	22	26	개느삼, 광릉갈퀴, 해너콩 등
기타	1,230	2,848	복수초, 피나물, 죽도리풀
계	1,426	3,153	

자료: 산림청 국립수목원 (2004. 6. 기준)

4.3.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상태

- 식물유전자원 중 농업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종자와 영양체를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다. 농업식물종자는 등록체계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의 저온저장시설에서 중장기 보존·관리되고 있다. 현재의 보존관리 용량은 154,000점인데, 이를 50만점 용량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 식물영양체 유전자원의 경우, 2001년 11월부터 작목별 유전자원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리기관 지정은 해당 작목 연구기관으로 하는데, 관리기관 지정작목은 2008년 현재 129작목 18,170자원이다.

표 2-17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주요 관리기관

관리기관	보존·관리 유전자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유전자원과)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현지외 보존
농업과학기술원(잠사양봉과)	뽕나무 유전자원 보존
원예연구소(해당과 및 산하 지소)	채소, 과수, 화훼 유전자원 보존
축산연구소(초지사료과)	사료작물 유전자원 보존
작물과학원(해당과)	벼, 맥류, 전작, 특작 유전자원 보존
영남농업연구소(해당과)	벼, 맥류, 전작, 특작 유전자원 보존
호남농업연구소(해당과)	벼, 맥류, 전작, 특작 유전자원 보존
고령지농업연구소(해당과)	감자, 산지원예작물 유전자원 보존
난지농업연구소(해당과)	감귤, 난지원예작물 유전자원 보존

자료: 농촌진흥청 생명공학연구원

- 그런데 관리기관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농업식물유전자원 관리는 기관 내부의 자원관리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유전자원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관리체계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인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이 기본지침이 되고 농촌진흥청 훈령인 「유전자원관리요령」이 실제로 규율하는 체제인데, 주로 식물영양체 유전자원의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유전자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탐사와 발굴, 수집에서부터 평가와 등록, 보존과 권리보호, 이용까지 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현 제도 하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그동안 농업식물유전자원의 수집은 물량 위주의 자원수집으로 종자자원 점수는 약 15만 점으로 세계 6위의 수준이나 식량작물자원에 편중되어 있어(약 76%) 원예 및 특용작물 자원 등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의 다양성, 특히 재래종의 종수를 확보하는 목표 설정과 이에 대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 산림유전자원의 경우, 현지의 보존이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목원 등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복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국내외에서 수집하여 현지내외에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 중에서 종자량이 부족하거나 발아율 저하 및 신규 수집자원 등 증식대상의 자원수가 매년 8만점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수집하여 현지내외에 보존되어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전반에 있어 투입되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력의 경우, 투입되는 절대 인력뿐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이는 아직까지 유전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수집된 유전자원에 대한 특성조사 및 평가는 지금까지 주로 양적 형질조사와 형태적 특성조사에 치중되어 실제 활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활용에 도움을 주는 특성조사, 즉 이용형질에 대한 특성조사로의 중점 전환이 필요하다.

Ⅲ. 지적재산권 관련 법체계와 실태

1. 지적재산권 관련 법체계 및 제도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정부의 부처별로 각기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반도체 배치설계 등은 특허청에서 관할하고, 저작권과 문화콘텐츠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식물종자의 품종보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표 3-1).
- 또한 동일한 지적재산권을 여러 정부부처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지리적표시는 2007년까지 대상품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각기 등록·관리하여 왔고, 이와 별도로 특허청이 지리적표시를 단체표장 형식으로 등록하게 하고 있어 중복과 관리체계의 혼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원산지 표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적인 원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품목과 분야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대외무역법」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칭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원화하는 “지식재산처”를 신설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¹⁸ 하지만 여기에 대한 반론은 지적재산권의 통합적 관리가 실제적으로는 그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는 반면에 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18 이와 관련해서는 2006년 11월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의원,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 이병석 의원이 유사한 3건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표 3-1 지적재산권의 법체계 및 관할기관

지적재산권(대상)	관계 법령	관할 기관
특허권	특허법	특허청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특허청
의장권	의장법	특허청
상표권	상표법	특허청
상호권	상법	국세청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반도체집적회로배치이용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저작권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지식경제부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지식경제부
품종보호권	종자산업법	농림수산식품부
지리적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상표법	특허청
원산지 표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대외무역법	지식경제부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2. 품종보호

2.1. 품종보호제도의 개요

-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특허법에서는 무성번식식물을 대상으로 신품종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식물의 특성상 특허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품종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종자산업법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품종보호제도를 통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품종 육성과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농민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신품종 개발

에는 시간, 기술 및 노동력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새로운 품종이 육성·개발된다 하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재생산되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가가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품종개발 의욕을 상실케 한다.

- 품종보호제도는 타인이 육성자의 허락 없이는 신품종의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육종투자로부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한다. 육성자에게는 신품종 육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신품종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유도하고, 국제적으로는 특정국가의 품종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통하여 외국의 육성자들에게 신품종 판매를 유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신품종의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2.2.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

- 1991년 UPOV 협약에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의 시행 초에는 보호 대상작물을 15개 이상의 작물로 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전작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종자산업법에서는 보호대상작물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대상작물을 선정하되 관련전문가와 농업인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보호대상작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시행 년도초인 1998년에는 보호대상작물로는 벼, 배추, 사과 등 27개 작물을 선정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하여 2008년 3월 1일 현재 식량작물 19개, 채소 33개, 과수 11개, 화훼 103개, 특용작물 46개, 사료작물 5개, 기타 6개로 총 223개의 작물이 지정되어 있다.
- 품종보호출원은 출원인이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 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서에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 및 사진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출원서의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대상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원서를 접수하고 출원서 접수일이 출원일이 된다. 어떤 나라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자가 그 품종보호출원한 품종과 동일한 품종을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하는 경우에 품종보호출원일의 적용에 있어서 최초의 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하는 것을 우선권이라 하며 이와 같은 주장을 우선권주장이라 한다.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의 품종보호출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품종보호출원서 등을 접수한 후 당해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방식심사라고 한다. 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거나 품종보호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 처분한다.

- 출원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출원서가 종자산업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에는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 등록하고, 출원인·품종명칭 등 출원내용을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로 하게 된다.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품종보호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심사관은 출원공개된 출원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한다. 신품종이 신규성이 있는지에 대한 서면심사를 하여 신규성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재배시험을 통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된다. 또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자의 육성포장에서 출원품종을 심사하는 현지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심사관이 심사결과 출원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한다.
- 종자산업법에 의해 신품종으로 등록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 있다. 이는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명칭의 5가지로서 이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될 수 없다.
- 품종의 신규성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품종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품종이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이상(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 당해 종자 또는 수확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품종은 다른 품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종자산업법에서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종자를 생산·수입·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동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품종명칭등록원부에 등록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품종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명칭이나 당해 품종 또는 당해 품종의 수확물의 산지, 품질, 수확량, 가격, 용도, 생산시기,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 ② 당해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③ 당해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④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작물의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⑤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는 제외
- ⑥ 당해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⑦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인 경우 등이 있다.

○ 품종보호출원된 품종은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심사관이 재배시험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구별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잎의 모양, 색깔 등과 같은 질적 특성에 대하여 육안관찰에 근거하여 만약 출원품종의 특성 발현이 대비품종의 특성발현과 비교하여 1계급 이상 차이가 나면 출원품종은 그 특성에 있어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균일성은 신품종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품종의 조사 특성들이 당대에 충분히 균일하게 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안정성은 보호출원 품종이 통상의 번식방법에 의하여 증식을 계속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모든 번식단계의 개체가 위의 구별성의 판정에 관련된 특성을 발현하고 동시에 그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정한다. 안정성은 1년차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판정결과가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 심사관은 품종보호출원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유(거절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거절 사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재외자가 품종보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원한 경우
 - ② 출원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속 또는 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 ③ 출원 품종이 품종의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④ 출원인이 육성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아닌 경우
 - ⑤ 재외자 중 외국인으로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
 - ⑥ 선출원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⑦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품종보호출원이 있는 경우
 - ⑧ 품종보호출원인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⑨ 동일인으로부터 승계한 동일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⑩ 공무원이 업무상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 의하여 출원되는 경우

- ⑪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
 - ⑫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조약에 위반된 경우 등이 있다.
- 심사권은 심사대상인 품종보호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될 때에 그 이유를 들어 그 품종보호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다. 다만,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하여 심사관의 재고를 요하는 의견 또는 자료, 정보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원공고라는 것은 심사관이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려서 품종을 보호할 것을 예고하는 제도이다. 예고 방법은 법정 간행물인 품종보호공보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종자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개도 하고 있다. 품종보호사정전에 출원공고를 선행시키는 이유는 심사관이 품종보호출원 품종의 신규성 및 구별성 등의 판단에 대하여 완벽을 기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원 및 심사내용을 공표함으로써 공중 특히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심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품종보호의 신뢰도를 높이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여 품종보호 후에 있어서 발생될 품종보호분쟁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 임시보호권이란 종자산업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해 품종보호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당해 출원품종에 대하여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한 품종은 출원공개일로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품종보호출원인은 출원공개일로부터 품종보호 출원된 당해 품종에 대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할 권리를 독점한다. 아울러 임시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로 임시보호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임시보호권을 침해함으로써 업무상의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임시보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청구하는 신용회복 청구권 등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품종보호권

- 품종보호권은 품종육성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권이며 재산권이며 독점·배타적이다. 품종

보호권은 품종보호원부에 그 권리를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그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품종보호권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하고 있다. 존속기간의 경과 후에 그 품종보호권은 소멸되어 누구나 당해 보호품종을 이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자는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보호품종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역적, 시간적, 실체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국내에만 그 영향이 미친다고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약국의 보호품종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품종출원을 하여 품종보호권을 받아야 국내에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중에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을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품종보호권의 포기, 품종보호료 불납 등으로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때부터 품종보호권의 효력도 상실된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보호품종에만 미치는 것으로 그 실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보호품종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유래된 품종이거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사용하여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은 보호품종으로 본다.
-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써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 예로 텃밭에서 취미생활로 채소를 재배하는 등 영리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하는 경우이다. 만일 이 경우 자가소비분 이외 여분생산량을 판매한다면 이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의 경우 보호품종을 육종재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보호품종을 반복하여 종자생산이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농민이 자가생산을 위해 자가채종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품종보호권이 무효가 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품종보호 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 ③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 ④ 선출원에 위반된 경우
 - ⑤ 공무원의 직무육성품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품종보호가 된 경우

- ⑥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종보호가 된 경우
 - ⑦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가 된 경우
 - ⑧ 조약에 위반된 경우가 있다.
- 유효하게 성립한 품종보호권이 법 규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가 취소된다. 품종보호권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취소되는 시점부터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품종보호 취소사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보호품종이 품종보호요건인 균일성과 안정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②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품종명칭 등록을 취소한 경우가 있다.
-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품종보호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의 만료
 - ② 품종보호료의 불납
 - ③ 품종보호권의 상속시 상속인이 없는 경우
 - ④ 품종보호권의 포기
 - ⑤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⑥ 품종보호권이 취소된 경우에 소멸된다.
- 품종보호권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의무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국가가 품종보호권자에게 품종보호권을 인정함으로써 육성자를 보호하고 보호품종을 조속히 공개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목적하에 품종보호를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품종보호권의 실시보고의 의무로 이것은 품종보호권자·전용실시권자나 통상 실시권자는 국가의 요청에 대해 보호품종의 실시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보호품종의 유지의무로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동안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당시의 보호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품종보호료의 납부의무로 품종보호권자는 매년 품종보호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4.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 품종보호출원 품종수는 2001년부터 2007년 7년간 평균 413품종이 출원되었다. 출원 품종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2년으로 602품종이 출원되었는데 이는 2001년도에 장미, 국화, 백합

등이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면서 이미 알려진 품종, 특히 외국 품종의 출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평가되고 있다. 작물별로는 화훼, 채소, 식량 및 과수의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특히 화훼의 경우에는 장미(648품종), 국화(331품종), 비모란선인장(102품종), 칼랑코에(81품종) 순으로 출원이 많았다.

표 3-2 연도별·작물별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합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합계	3,422	2,126	611	255	602	76	463	310	262	477	533	311	421	273	257	424
화훼	1,900	1,151	79	-	473	9	329	152	122	361	369	214	218	152	310	263
식량	565	456	276	205	49	48	42	41	34	47	48	27	59	28	57	60
채소	599	284	113	23	53	15	57	36	83	32	79	45	97	61	117	72
과수	167	98	65	26	10	2	18	19	9	5	18	14	28	20	19	12
특용	132	108	71	-	17	2	9	56	8	28	13	7	7	7	7	8
버섯	38	19	3	-	-	-	4	3	5	2	4	4	8	5	14	5
사료	18	10	4	1	-	-	4	3	1	2	2	-	4	-	3	4

표 3-3 식량작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작물명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 실적
		합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식량 작물 (14)	소계	565	276	49	42	34	48	59	57	466
	벼	222	123	16	13	13	15	19	23	182
	콩	106	56	4	8	7	13	9	9	86
	보리	77	47	5	6	4	4	5	6	71
	옥수수	56	20	4	2	1	11	14	4	45
	감자	44	9	15	6	1	2	4	7	33
	기타	60	21	5	7	8	3	8	8	49

표 3-4 채소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작물명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 실적
		합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채소류 (24)	소계	599	113	53	57	83	79	97	117	298
	고추	118	18	11	8	25	18	17	21	60
	배추	94	25	12	7	11	3	21	15	47
	무	76	23	2	5	10	13	10	13	47
	수박	68	9	9	18	10	6	6	10	33
	오이	52	9	6	3	6	10	9	9	28
	상추	51	7	7	5	2	11	8	11	27
	기타	134	22	6	11	19	12	26	38	56

표 3-5 과수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작물명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 실적
		합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과수류 (7)	소계	167	65	10	18	9	18	28	19	86
	복숭아	69	22	6	8	2	12	15	4	33
	사과	40	13	3	7	2	3	5	7	22
	배	29	22	1	-	-	1	2	3	22
	기타	29	8	-	3	5	2	6	5	14

표 3-6 화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작물명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 실적
		합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화훼류 (49)	소계	1,900	79	473	329	122	369	218	310	1,210
	장미	648	18	274	88	48	91	52	77	432
	국화	331	-	94	64	27	44	35	67	223
	거베라	122	-	-	-	-	86	16	20	63
	선인장	102	41	5	11	12	9	20	4	61
	칼랑코에	81	-	-	36	2	10	32	1	79
	백합	72	-	25	7	7	15	5	13	49
	페튜니아	56	4	11	36	4	-	-	1	46
	기타	488	16	64	87	22	114	58	127	336

표 3-7 사료작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작물명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 실적
		합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료 작물 (3)	소계	18	4	-	4	1	2	4	3	10
	라이그 라스	10	3	-	2	-	1	2	2	4
	오쳐드 그래스	6	1	-	2	1	-	2	-	5
	호밀	2	-	-	-	-	1	-	1	1

표 3-8 특용작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작물명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 실적
		합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특용 작물 (16)	소계	132	71	17	9	8	13	7	7	108
	참깨	35	25	2	3	1	1	2	1	27
	땅콩	34	20	2	2	4	2	2	2	27
	들깨	30	17	6	1	1	2	1	2	28
	인삼	9	5	-	-	2	1	-	1	8
	기타	24	4	7	3	-	7	2	1	18

표 3-9 특용작물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작물명	연도별 출원실적(건수)								등록 실적
		합계	2001까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버섯류 (6)	소계	38	3	-	4	5	4	8	14	2
	느타리버섯	29	3	-	3	5	2	7	9	1
	기타	8	-	-	-	-	2	1	5	-

2.5. 품종육성 지원정책

- 품종육성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육종기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육종가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인력에 대해 육종분야, 육종기술 수준, 자본규모, 매출 실적 등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D/B화 한다. 둘째, 개인육종가 수준별로 육종기술 연수 등 맞춤형 지원 실시를 통해 개인육종가의 기술수준을 강화한다. 셋째, 작물분야별로 개인육종가와 대학교수 등 육종학자, 국가육종기관의 직무육종가로 구성된 「육종가 협의체」를 구성한다. 넷째, 개인육종가의 육종기술 수준 향상, 육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교수 등 육종 전문가를 초빙 「세미나」 등 연구모임 개최 등을 지원한다.
- 육종가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품종개발비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 및 조건은 개인육종가 또는 국내 종자회사로서 상시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종자업체와 지원대상자가 출원을 한 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되면 품종개발비(등록포상금)을 육종자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5품종 한도내에서 등록 품종당 5백만원을 지급한다.

표 3-10 연도별 개인육종가의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구분	'98~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출원	37	54	26	14	56	69	256
총출원	611	602	463	262	533	421	2,892

- 개인육종가는 우수품종을 육성해도 비용문제로 수출유망국 등에 품종보호출원 기회를 상실하고 우수품종 종자의 수출시 현지에서의 불법증식 방지수단으로 해당국에의 품종보호출원 필요하므로 해외 품종보호출원 비용에 대해 지원된다.
- 해외 육종연구소 및 육종현장 기술연수를 통한 개인육종가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수 품종 육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훼·채소 등의 세계적인 육종연구소에 대한 기술

연수를 추진하고 귀국 후 지속적인 협력채널 구축 지원을 통해 기술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해 해외연수 비용 지원을 실시한다. 종자박람회 및 세계적인 농산물 도매시장 방문 정보 수집을 통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수출 전문품종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육종가의 해외연수 및 육종현장 방문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 경비의 1/2을 국립종자원이 지원하고 있다.

2.6. 문제점

-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주곡자급을 위한 쌀 생산 확대에 맞추어져 있어 품종육성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과 체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종합적인 중·장기 종자 정책수립, 관련기관간의 역할분담과 기능 조정, 예산확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각종 연구개발과 시설 및 자금지원 등이 종자분야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지원되지 않아 지원 효과가 낮다.
- 품종육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간의 기능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중복연구 또는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품종개발에 있어 상호간에 협력자가 아닌 상호경쟁자로 인식하여 품종개발 정보 및 유전자원의 교환 등 협조체제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차원의 품종육성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자금 등의 지원금액이 타 농업분야의 지원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시에도 종자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지 않아 효과가 낮다. 우수한 육종기술을 갖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육종에 전념할 수 없었던 개인 또는 소규모 민간종자회사들은 까다로운 절차나 연구계획서 작성 미숙 등으로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1 품종보호대상작물 및 지정계획

년 도	대 상 작 물 명
1997.12.31 (27종)	○ 식량작물(6)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밀 ○ 채 소 류(14)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 과 수 류(3) : 사과, 배, 복숭아 ○ 화 화 류(1) : 비모란 선인장 ○ 사료작물(3) :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레드클로버
2000.5.1 (30종)	○ 식량작물(2) : 귀리, 고구마 ○ 채 소 류(3) : 멜론, 녹색꽃양배추, 꽃양배추 ○ 과 수 류(2) : 포도, 유자 ○ 화 화 류(14) : 리시안서스, 페튜니아, 고데치아, 봉선화, 히야신스, 시클라멘, 개나리, 무궁화, 알스트로메리아, 금어초, 팬지, 데이지, 상사화류, 조개나물 ○ 특용작물(7) : 참깨, 들깨, 땅콩, 유채, 당귀, 황기, 느타리버섯 ○ 사료작물(1) : 오쳐드그래스 ○ 기 타(1) : 인삼
2001.7.1 (31종)	○ 화 화 류(21) : 덴드로비움, 나도풍란, 풍란, 새우란, 장미, 백합, 국화, 아이리스, 글라디올러스, 튤립, 포인세티아, 맨드라미, 스토크, 백일초, 물망초, 시레네, 한련화, 금잔화, 알릿섬, 아게라툼, 원추리류 ○ 특용작물(10) : 지황, 구기자, 마(산약), 시호, 도라지(길경), 결명자, 토천궁, 맥문동, 구릿대(백지), 식방풍
2002.6.17. (25종)	○ 식량작물(4) : 호밀, 팥, 녹두, 완두 ○ 채 소 류(3) : 가지, 박, 팥쑥이(청경채, 백경채, 백채) ○ 과 수 류(1) : 키위프루트(참다래) ○ 화 화 류(9) : 극락조화, 카틀레아, 온시디움, 옥잠화, 종꽃, 펠라고늄, 모란(목단), 칼랑코예, 산취선인장 ○ 특용작물(8) : 영지버섯, 강활, 더덕, 하수오, 텍사, 황금, 작약, 홍화(잇꽃)
2004.12.1 (42종)	○ 식량작물(2) : 강낭콩, 울무 ○ 채 소 류(4) : 갓, 콜라비(순무양배추), 순무, 쑥갓 ○ 화 화 류(31) : 다알리아, 알리움, 프리틸라리아, 글록시니아, 칼라, 무스카리, 오니소갈럼, 안스리움, 크로커스, 아마릴리스, 철쭉류, 동백, 수국, 카네이션, 거베라, 안개초, 군자란, 스타티스, 베고니아, 센토레아, 팔레놉시스, 매발톱꽃, 초롱꽃, 섬초롱꽃, 용담, 큰용담, 눈개쭉부쟁이, 보춘화(춘란), 한란, 패랭이꽃, 프리지아 ○ 특용작물(5) : 오미자, 일당귀(왜당귀), 삼주(백출), 일천궁(천궁), 진흙버섯
2006 (31종)	○ 식량작물(1) : 메밀 ○ 채 소 류(7) : 딸기, 부추, 케일, 근대, 아욱, 치커리, 엔다이브 ○ 화 화 류(17) : 독일영경귀, 델피니움, 플록스, 고무나무, 행운목, 필로덴드롬, 티란드시아, 심비디움, 아네모네, 클레마티스, 란타나, 리아트리스, 아데니움, 아디안텀, 오수문다, 드라세나, 페페로미아 ○ 특용작물(5) : 독활, 만삼, 향부자, 지모, 치자 ○ 사료작물(1) : 알팔파
2008 (23종)	○ 식량작물(3) : 조, 기장, 수수 ○ 채 소 류(3) : 셀러리, 파슬리, 춘채 ○ 과 수 류(4) : 감, 자두, 살구, 매실 ○ 특용작물(6) : 양송이, 감초, 두충, 산수유, 천마, 팽이버섯 ○ 산림작물(6) : 표고버섯, 밤나무, 느티나무, 뽕나무, 단풍나무, 대추 ○ 기 타(1) : 담배
2009 (기타 전작물)	○ 식량작물 : 동부, 잠두 등 ○ 채소작물 : 마늘, 토란, 생강 등 ○ 과수작물 : 감귤, 양앵두 등 ○ 화훼작물 : 관음죽, 벤자민, 야자류 등 ○ 특용작물 : 만가다, 잎새버섯 등 ○ 사료작물 : 화이트클로버, 티모시 등 ○ 산림식물 : 잔디 등 ○ 수산식물 : 김, 미역, 다시마 등

3. 식물특허

3.1. 식물 관련 발명의 개요

- 식물관련 발명에는 신규식물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 육종방법,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으며, 신규식물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이다.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이고, 식물의 유성 및 무성번식방법 및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으며,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한 발명,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발명,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물육종방법, 육종방법과 재배방법 중 새롭거나 이를 개선한 발명 등이 특허로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다.
- 식물 관련 발명은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방법’ 및 ‘육종된 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견 없이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호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 보호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원예분야의 육종가들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과수, 화훼 등 새로운 식물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미국이 1930년 ‘식물특허법’을 제정하여 무성번식 식물(야생식물과 괴경으로 번식하는 식물은 제외)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독일은 1953년, 프랑스는 1957년에 특별법인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여 농무성에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표 3-12 식물 관련 발명의 주요 특허 현황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03603390000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를 대량 생산하는 형질전환된 오이의 제조방법	박호균(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03587550000	바이러스 저항성 토마토 및 그의 제조방법	김동태(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5526180000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을 이용한사과 '후지' 품종의 형질전환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6142210000	제조제 저항성 형질전환 도라지의 제조방법	충청북도(관리부서:충청북도농업기술원)
1007230700000	흑명나방 저항성 벼 형질전환체 및 그 제조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3987490000	생물공학적인 기술에 의한 산삼 묘목의 대량생산방법	김이엽((주)파낙시아)
1004960260000	철분강화 감자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5224370000	캘러스 유도를 이용한 고추 형질전환체의 대량 생산 방법	주식회사농우바이오
1004960280000	제조제 저항성 고추 식물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7035690000	이소플라본 생합성 형질전환 벼 및 그 제조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 그 후 1961년 파리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 조약)’이 체결되어 1968년에 발효됨으로써 식물신품종 보호제도가 국제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2006년 현재 6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하였다.
- 새로운 식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특허법과 특별법은 보호요건이 상이하고 보호대상이 구별되므로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충관계로 공존할 수 있는 제도이다.

3.2. 식물 관련 발명의 특징

- 식물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식물발명에 대한 불특허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법에 의한 요건인 반복재현성을 만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1997년 1월 1일 발효된 종자산업법이 있다.
- 식물은 생명체이므로 필연적으로 기인되는 조직의 불안정성이나 성장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신품종의 반복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르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식물발명에 대해 특허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식물 혹은 그 일부가 생명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성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¹⁹
- 따라서 식물 내지 식물소재의 본질적인 생물학적인 육성방법은 물론 식물 내지 식물소재 자체도 발명성이 인정되는 한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다.

3.3. 식물발명의 특허요건

- 식물발명에는 신규식물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 식물의 육종방법,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으며 이러한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식물이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을 말한다.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하며,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한 발명,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발명,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물육종방법, 육종방법과 재배방법 중 새롭거나 이를 개선한 발명 등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¹⁹ EPC(유럽특허조약)53(b)에는 식물품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 특정품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식물은 특허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됨.

-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식물관련 신품종이나 신기술의 개발시에는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먼저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식물발명에 대한 기재요건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한 발견의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규식물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동일한 출발소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육종 과정을 반복하면 명확히 동일한 결과를 재현시킬 수 있어야 발명의 재현성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출발소재는 용이하게 입수될 수 있다는 내용 또는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다는 내용이 최초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출발소재의 입수수단의 기재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단(특징이 되는 유전자, 특성 등의 기재 및 육종과정, 선발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청구된 식물관련 발명에 대하여 그 기능이나 유용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공수단 즉, 신규식물의 명칭(식물 명명법에 의한 학명), 특성, 육종방법, 번식방법, 재배조건,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식물특허의 경우 반복재현성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식물세포 또는 종자를 기탁할 수 있으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다. 종자의 경우에는 관련 시설이 구비된 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탁기관에는 국제 및 국내기탁기관인 KCTC(생명공학연구소 생물자원센터), 국내기탁기관인 KACC(농업미생물자원센터)가 있으며 종자기탁수량은 2,500립이다.

3.5. 식물발명에 대한 특허요건

- 식물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요건이 적용(동일한 육종소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육종과정을 반복

하면 동일한 결과를 재현시킬 수 있어야 함) 된다. 이것은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4. 상표

4.1. 상표의 정의와 특성²⁰

-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나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 상표출원은 단순히 상표등록 절차의 한 과정으로써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런 법률적 권리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등록이 되어야만 비로서 상표로서의 포괄적 권리를 획득한다. 따라서 등록이 완료된 브랜드를 우리들은 흔히 ‘등록상표’라 칭한다. 관련 업계에서 독점하지 못하지만 제품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아닌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다.
- 브랜드와 등록상표는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독점, 배타적인 권리 갖게 되었다는 의미로써 등록이 된 지정 상품류에서는 어느 누구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언어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허가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표등록의 의미를 이익과 손실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상표권자에 의해 소송이 걸려 손실측면에 해당하는 생산 및 판매금지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기업의 흥망성쇠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상표법 제1조에서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표제도의 목적이 특정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유지함과 동시에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사용자의 사익보호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일반

²⁰ 상표법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공익적 보호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익적·공익적 법익보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상표법과 부정경쟁법은 업무상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상 경업질서 유지를 그 목적 중 하나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법으로서의 공통점을 지니나 상표법은 설권 행위로서 등록 제도를 통해 상표권자에게 상표에 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의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므로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4.2. 농축산물 상표 현황

- 연도별 상표등록 현황을 보면, 2006년 내국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52,827건으로 2000년 대비 117% 증가하였다. 내외국인 모두의 상표등록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3-13 연도별 상표등록건수

연 도	내국인		외국인		계 Total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1999	352,920	67.6	169,381	32.4	522,301
2000	24,342	78.9	6,507	21.1	30,849
2001	26,872	79.8	6,811	20.2	33,683
2002	32,678	80.5	7,910	19.5	40,588
2003	37,718	82.0	8,305	18.0	46,023
2004	41,673	81.5	9,431	18.5	51,104
2005	46,683	80.7	11,190	19.3	57,873
2006	52,827	80.3	12,998	19.7	65,825

자료: 특허청

- 2006년 말 현재 농축산물 브랜드는 총 6,552개이며, 이중 등록된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의 36.8%인 2,410개이다. 농축산물 브랜드 중에서 공동브랜드는 1,437개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브랜드는 5,115개로 전체 브랜드 가운데 약 78% 수준이다. 공동브랜드의 특허청 등록율은 62.8%로 개별브랜드 29.5%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별 브랜드 중에서 미등록된 브랜드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대부분 개별 농가나 업체가 농축산물 브랜드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벌위주의 단순개발에 따라 개별브랜드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박준근, 2006).

표 3-14 농축산물 브랜드 현황

단위 : 개

구분	공동브랜드	개별브랜드	계
등 록	902	1,508	2,410(36.8%)
미등록	535	3,607	4,142(63.2%)
계	1,437(21.9%)	5,115(78.1%)	6,552(1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별 총 브랜드 수는 경북 1,172개, 전남 1,041개, 강원 817개, 충남 743개 순이며, 공동브랜드는 경북 256개, 충남 199개, 충북 195개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브랜드 비율은, 충북 34.9%, 충남 26.8%, 경남 23.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개별브랜드는 경북 916개, 전남 868개, 강원 663개로 조사되었다. 경북지역이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5 시도별 브랜드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공동	1,437	88	154	195	199	105	173	256	170	22	75
개별	5,115	333	663	363	544	509	868	916	564	130	225
계	6,552	421	817	558	743	614	1,041	1,172	734	152	300
공동비율(%)	21.9	20.9	18.8	34.9	26.8	17.1	16.6	21.8	23.2	14.5	25.0

주: 기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 브랜드는 쌀, 감자 등 식량작물이 1,812개(27.7%)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가공 1,020개(15.6%), 과실류 889개(13.6%), 과채류 811개(12.4%) 순으로 나타났다. 저장기간이 긴 식량작물과 농산가공품의 비율이 신선도가 중요시 되는 품목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16 품목별 브랜드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식량작물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농산가공	공통	기타
공동	1,437	445	204	159	43	9	147	35	58	108	193	36
개별	5,115	1,367	685	652	276	44	423	269	303	912	110	74
계	6,552	1,812	889	811	319	53	570	304	361	1,020	303	110
품목비율(%)	100	27.7	13.6	12.4	4.9	0.8	8.7	4.6	5.5	15.6	4.6	1.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시도별 브랜드 등록현황은 경북 412개, 강원 331개, 전남 326개로 조사되었으며, 브랜드 등록비율은 제주 58.6%, 경기 55.6%, 기타 42.7%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

남 지역은 많은 브랜드 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비율은 전체 등록비율 36.8% 이하로 경기, 강원, 제주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표 3-17 시도별 브랜드 등록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등록	2,410	234	331	247	232	178	326	412	233	89	128
미등록	4,142	187	486	311	511	436	715	760	501	63	172
계	6,552	421	817	558	743	614	1,041	1,172	734	152	300
등록비율(%)	36.8	55.6	40.5	44.3	31.2	29.0	31.3	35.2	31.7	58.6	42.7

주: 기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품목별로 등록된 브랜드수는 식량작물이 575개로 가장 많으며, 농산가공 458개, 축산물 400개, 과실류 267개, 과채류 171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등록비율은 축산물이 70.2%, 농산가공 44.9% 순으로 조사되었다. 축산물의 브랜드화가 매우 높고 등록비율이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이유는 축산부문의 전업화가 타 부문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계열화가 이뤄지면서 브랜드화 사업이 앞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준근, 2006).

표 3-18 품목별 브랜드 등록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식량작물	과실류	과채류	채소류	화훼류	축산물	임산물	특작류	농산가공	공통	기타
등록	2,410	575	267	171	97	10	400	48	96	458	224	64
미등록	4,142	1,237	622	640	222	43	170	256	265	562	79	46
계	6,552	1,812	889	811	319	53	570	304	361	1,020	303	110
품목비율(%)	36.8	31.7	30	21.1	30.4	18.9	70.2	15.8	26.6	44.9	73.9	58.2

주: 공통은 전 품목에 동일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이며, 대부분 공동브랜드로 등록비율은 73.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3. 농축산물 상표의 문제점

-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브랜드수가 6,552개로 많은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선택의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브랜드화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게 한다. 그 가운데 2,410(36.8%)개의 브랜드만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으로 대다수의 브랜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브랜드의 생성과 멸실이 반복되고 있다. 공동브랜드는 63% 수준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브랜드는 30% 수준의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 농산물을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농산물 브랜드의 대부분이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급격히 만들어 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면을 당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농산물 브랜드의 비율이 상표로 등록된 브랜드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발휘시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통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 브랜드, 상표권은 다른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에 비해서 영역이 광대하고 활용도가 높으며 시장이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다.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
- 농축산물브랜드를 개발한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수 농축산물 브랜드에 대하여 일부 상표도용 및 유사상표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들의 농축산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그로인해 지역특산물에 대한 선입견으로 특정 농축산물의 브랜드 상품선택을 기피하고 있다. 농업부문에는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가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 농축산물의 브랜드개발과 확산이 미흡하다. 소규모의 생산자조직이나 개별 농장별로 전국 농축산물 브랜드의 78%나 되는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확산이 부족하고 그 결과로 소비자 인지도가 미흡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포장재 업체나 비전문가 등이 브랜드를 심벌 위주로 단순 제작하여 유사 브랜드가 난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 국내에는 세계적인 농산물 브랜드가 없다. 국내의 농산물 브랜드는 경영자의 홍보부족,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농축산물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에 성공한 브랜드는 얼마 안 되는 실정이다. 이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있어서, 해외 유명 농산물브랜드에 대응해야하는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5. 지리적표시

5.1.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

-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요구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99

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04년 특허청에서도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를 도입하였다.

-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상품의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규정하였다²¹.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국가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²². WTO/TRIPs 협정은 이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오해하거나 불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으로서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였다.
-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지역의 생산자는 그 지리적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지적재산권)를 가지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 지리적표시는 일반인에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리적출처표시의 오인, 그 명성의 부정사용 및 식별력의 침해에 대한 지리적표시 상품 및 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프랑스 등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일찍부터 지리적(원산지명칭)표시제도를 도입하여 포도주, 증류주, 치즈, 건포도 등에 대해 다수의 지리적명칭을 등록하여 국내 외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지리적표시보호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중 품질이나 맛 등에 있어서 널리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 확립된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로서 그 상품이 생산된 지역의 지리적명칭을 등록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지역의 생산자는 그 지리적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지적재산권)를 가지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를 받는다.

21 WTO/TRIPs 제22조 제1항에서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22 리스본협약(1958)의 원산지명칭 보호와 유사한 개념임. “Geographical name of a country, region, or locality, which serves to designate a product originating therein, th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due exclusively of essentially to the geographic environment, including natural and human factors” 리스본협약 제2조.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및 보호수준은 리스본협정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고 구가별로 관리한다.

5.2.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등록제도

가. 지리적표시제도의 도입 배경

- 지리적표시제도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유럽연합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참고하여 도입하였다. 1996년에 한·EU 기본협약 협정 체결시 EU측은 한국이 원산지명칭을 포함하는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도입을 요구하여 이에 우리 정부가 제도 도입을 수용기로 하였다.
- 지리적명칭을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인삼, 김치 등의 품목과 국내외적으로는 녹차, 고추장, 쌀, 생수, 전통주, 과채류 및 축산물 등 우수한 농산물이 다수 있다. 이는 지리적표시제도가 국내 농산물의 국제적 보호는 물론 지리적명칭을 재산권화하여 생산자의 권익보호와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주요 내용

- 지리적표시의 정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칭·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 지리적표시 신청자격은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하고 있다.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단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지리적표시의 대상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지역, 특정 장소 또는 국가에서 기원해야 하고(지리적 기원), ②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칭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지리적인 특성), ③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 또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지역과의 연계성).
- 심사기준은 지리적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품질기준의 적절성,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등을 심사한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 ② 당해 품목의 명칭,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
 - ③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

④ 기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품목

- 지리적표시제도의 등록신청 및 심사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 심사한다.
- 지리적표시제도의 심사결과는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처리한다.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통지를 한다.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는 등록신청공고를 한다.

표 3-19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상의 내용

신 청 인	①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서 제출
지리적표시 관리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② 신청서 접수 및 심사요청(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요청) ④ 등록신청 공고 및 부적합 통지 ⑥ 이의신청접수 및 심의회 회부 ⑧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 또는 부적합 통지 ⑨ 등록, 등록증 발급 및 등록 공고 ⑩ 사후관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	③ 등록기준 적합성 심사 ⑦ 이의신청 심사
이해관계자	⑤ 이의신청(등록신청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다.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및 보호

-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리적특산물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사후 관리로서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①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② 지리적특산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③ 지리적특산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지리적특산품이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벌칙으로는 지리적특산품의 허위·유사표시, 지리

적특산품의 혼합 판매 또는 진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 지리적표시등록 현황

- 한국의 최초 지리적표시등록품은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에서 신청한 보성녹차이다. 보성 녹차의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과정은 2001년 8월 23일 신청접수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의와 조사위원회의 정밀검사가 있었고, 2002년 2월 30일 최종 등록공고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제1호 품목이 되었다.
- 보성녹차 등록 이후 2008년 6월 현재 61개의 지리적표시 등록되어 있다. 농산물에는 쌀, 옥수수, 마늘, 고추(가루), 사과, 유자, 매실, 복분자, 참외, 배추, 양파가 있고, 축산물에는 한우, 돼지고기, 임산물에는 송이버섯, 표고버섯, 산채, 밤, 대추, 꽃감, 가공제품에는 인삼류(홍삼, 태극삼, 백삼), 고추장, 녹차, 백련차, 전통주, 과일주, 모시, 삼베가 있다. 기타 제품으로는 쭉, 황기, 당귀가 있다.

표 3-20 지리적표시의 품목별 등록 현황 (2008. 6월 현재)

구 분	곡류	과채류	과실류	축산물	인삼류	주류	차류	섬유류	기타	계
농축산물	7	12	6	2	-	-	-	-	3	30
임 산 물	-	10	5	-	-	-	-	-	-	15
가공제품	-	4	-	-	4	2	3	3	-	16
합 계	7	26	11	2	4	2	3	3	3	61

표 3-21 지리적표시의 년도별 등록 현황

년도	등록품목	품목수
2002	보성녹차	1
2003	하동녹차	1
2004	고창복분자주	1
2005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	10
2006	고흥유자,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쭉,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안동포,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한산모시,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꽃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깻이	20
2007	진도홍주, 정선황기,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상주꽃감, 무안양파, 여주쌀, 무안백련차, 남해창선고사리,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고려수삼,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21
2008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영덕송이, 여주고구마, 보성삼베, 구례산수유, 함안수박	7
합계		61

표 3-22 지리적표시의 지역별 등록 현황

지역	등록품목	품목수
인천	강화약쑥	1
경기	이천쌀, 여주쌀, 여주고구마	3
강원	철원쌀, 홍천찰옥수수, 횡성한우고기, 정선허기, 양양송이,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7
충북	괴산고추, 괴산고춧가루, 충주사과, 단양마늘	4
충남	서산마늘, 한산모시, 정안밤, 청양구기자,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6
전북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고창복분자	3
전남	보성녹차, 해남겨울배추, 고흥유자, 진도홍주, 무안양파, 장흥표고버섯, 무안백련차, 광양매실,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보성삼베, 구례산수유	12
경북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성주참외, 안동포,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깅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송사과, 상주곶감, 영덕송이	13
경남	하동녹차, 밀양얼음골사과, 남해마늘, 창녕양파, 산청곶감, 함안수박, 남해창선고사리	7
제주	제주돼지고기	1
전국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수삼	4

5.3 상표법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가. 단체표장의 도입 배경

- 특허청은 상표법에 지리적표시를 단체표장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 1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다.
-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도입 배경은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단체표장권자도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표장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단체표장권자의 감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 원래 상표법에는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대상이 될 수 없으나 지정상품과 지리적 명칭의 특성 사이에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리적 명칭에 2차적 의미, 즉 식별력이 부여되었다고 보아 상표등록을 인정하였다.
- 상표법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지리적표시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

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하고 이는 TRIPs 협정 22조 제1항의 지리적표시의 정의를 채택한 것이다.

나. 주요 내용

-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상표)을 말한다.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자격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여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 받을 수 있다.
-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 이외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해야 하고, 지리적표시의 정의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지리적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과 관련한 사항
 - ② 지리적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자 단체 등의 현황 및 출원인이 그 지역의 생산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항
 - ③ 그 밖에 지리적표시 해당 상품의 특성,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등과의 본질적 연관성 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항
- 상표법에 의한 등록요건은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단체표장의 정관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기재되고, 다른 거절이유(식별력요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다. 등록 절차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등록한다.

- 등록 절차는 심사관에 의한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출원공고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등록결정을 하고,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한 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또 출원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하여 일정 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특히 정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내에 새로운 내용의 수정정관을 제출하여 기존의 정관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거절사유로는 지리적표시와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지리적표시등록단체표장의 효력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하면 법인의 소속단체원뿐만 아니라 법인도 직접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자가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은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법 제93조).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도 청구할 수 있고(법 제65조),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67조).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① 타인의 지리적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제외)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② 타인의 지리적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③ 타인의 지리적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④ 타인의 지리적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상표법은 생산자나 소비자단체등의 이해관계인 등에 의한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청구로 심사, 등록기관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 의한 사후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현황

○ 현재까지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사례로는 경산대추, 순창고추장, 한산모시, 고창복분자주, 진도홍주, 고흥유자, 양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나주배가 있다.

표 3-23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현황

	등록명칭	등록일자
1	장흥표고버섯	2006. 10. 26.
2	고흥유자	2007. 2. 9.
3	양양송이	2007. 2. 9.
4	한산모시	2007. 2. 9.
5	진도홍주	2007. 4. 4.
6	이천한우	2007. 5. 21.
7	경산대추	2007. 5. 22.
8	고창복분자주	2007. 6. 25.
9	순창고추장	2007. 7. 20.

5.4. 현행 지리적표시 보호 제도의 이원화

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의 비교

○ 농림수산식품부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유럽형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특허청은 2004년 상표법을 개정하여 미국형의 지리적 단체표장 제도를 도입하여 지리적표시 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표시는 두 법에서 매우 유사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지리적표시로 인식하고, 상표법은 일반적인 상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규정한 지리적표시의 정의는 WTO의 지리적표시 개념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표법의 경우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한다.
- 지리적표시제도는 지리적표시가 상표에 포함되어 상호 충돌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장치가 없이 시행되었다. 상표법에 의해 현저한 지리적명칭은 상표로서 제외되어야 하나 지리적명칭이 상표등록시 다른 등록 요인과 결합하여 등록출원이 되어 도입시부터 상표법과의 충돌 해소 미흡 등 초기부터 문제를 내포한 상태로 출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지리적표시와 상표가 공존토록 제도화하였다.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리적표시의 정의는 두 기관간 크게 차이는 없으나 상이한 등록제에 따른 상호 충돌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일 사항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의한 중복적 권리 인정과 부처간 업무 중복을 초래하는 등 제도적 혼란과 이중등록에 따른 문제 발생하였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과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서로 상이한 단체 등에게 각각 부여될 경우 별도의 법에 의해 동일한 지리적표시를 등록받은 2개의 단체가 동일 지역에서 서로 경합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상표법은 개별 등록주체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이 가능해 지리적표시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 현재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제대로 된 지리적표시 보호는 곤란한 상태이다. 이러한 두 제도가 이 상태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속한다면 지리적표시의 무력화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보호체계 혼란을 방지하고 지리적표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 제도를 통합, 발전시키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양 법의 장단점

-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의 개발과 사후적 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것이 보다 효과적이어서 지리적표시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의 생산자와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리적표시의 개념에 부합되게 심의·관리·운영되고 있으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그 효력에 대한 사후적 규정이 없어 권리로서 한계가 있는 반면 상표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지리적표시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데 적합하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생산, 유통관리 등 사후감독 및 관리가 행정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등록기관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에 의한 사후적인 통제가 이루어져 등록이후 사후 관리가 곤란하다.

5.5. 지리적표시제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 농업 차원에서 보면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일반적으로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지리적표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아진다면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어도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를 통하여 수입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가능하고 농산물의 차별화, 지역특산품의 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한 농업부문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지리적표시제의 도입과 추진으로 지리적표시 등록품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 유명 특산물 발굴, 등록 추진으로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되었다. 보성 녹차, 무안 백련차 등 지역경관 조성과 지역문화의 형성을 통해 농업·농촌 어메니티 창출에 따른 관광산업으로도 발전하였다.
- 지리적표시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분기 1회 이상의 조사를 통해 특산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특산품의 품질향상 및 차별화로 수입농산물과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지리적 특산품임을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고품질 특산품에 대한 안전농산물 구매 욕구를 충족시켰다.
- 국내 농업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도 국내 우수한 지리적표시 품목들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고,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위생, 명성, 제품차별화 등에서 보다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지리적표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지리적표시 등록 후 지자체나 등록법인 등 제도 추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가공업체의 특산품 자체품질검사 및 사후관리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생산자 단체와 가공업체의 연계추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 전통·향토식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그린투어리즘, 체험마을 등 패키지 지역관광산업과의 연계 등 지역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으므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소비촉진 및 각종 식품 전시회 출품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시켜야 한다.

6. 식품관련 특허

6.1.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 2005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의 전체 출원건수는 359,207건으로 2004년의 327,516건과 대비하여 9.7% 증가하였다.
- 권리별로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은 198,096건으로 전년(177,868건)대비 11.4%로 증가하였으며, 디자인출원은 45,222건으로 전년(41,184건)대비 9.8%, 상표출원은 115,889건으로 전년(108,464건)대비 6.8%로 증가하였다.
- 농업과 식품관련 특허는 전체산업 중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 실정이다. 2005년 농업분야 특허, 실용신안출원건수는 5,789건으로 전체특허출원건수(198,096건)대비 2.9%를 차지한다.

표 3-24 연도별 출원건수

구 분	특 허 Patents	실용신안 Utility Models	특·실 소계 Subtotal	디자인 Designs	상 표 Trademarks	계 Total
2000	102,010	37,163	139,173	33,841	110,073	283,087
2001	104,612	40,804	145,416	36,867	107,137	289,420
2002	106,136	39,193	145,329	37,587	107,876	290,792
2003	118,652	40,825	159,477	37,607	108,917	306,001
2004	140,115	37,753	177,868	41,184	108,464	327,516
2005	160,921	37,175	198,096	45,222	115,889	359,207

표 3-25 농업 및 식품분야 특허출원 동향, 2005

구분	특허			실용신안			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소계	국내	외국	총계
농업	1,071	167	1,238	1,561	6	1,567	2,632	173	2,805
식품	2,260	279	2,539	443	2	445	2,703	281	2,984

6.2. 농업관련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 WIPO가 주관하는 IPC협정에 따라 채택된 기술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체계로써 특허문헌의 분류 및 검색에 활용되며, 특허청에서는 심사관에게 출원의 심사를 담당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표 3-26 농업관련 국제특허분류

구 분	주요기술분야	세부기술분야
A01B	농업, 임업에서의 土作業(농업기계, 부품)	쟁기, 씨래, 농업기계
A01C	植付, 파종, 施肥	시비방법.장치, 파종기, 이식기
A01D	수확, 예취(刈取)	수확방법 및 수확기(콤바인)
A01F	수확물의 처리, 수확물의 저장장치	탈곡기, 건조절단장치
A01G	재배(채소, 화훼, 버, 과수, 임업), 관수	작물재배, 수정재배, 버섯재배
A01H	신규식물, 육종, 식물의 증식	신품종, 육종방법, 조직배양
A01J	낙농제품의 제조	착유장치, 치즈의 제조,
A01K	축산(조류, 곤충), 어업, 신규동물	사육, 양식, 양봉, 낚시대,
A01M	동물의 포획, 유해동식물 구제장치	수렵용구(덫), 훈증기,
A01N	농약 및 생물의 보존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A21	제빵, 식용 가루반죽	반죽, 제빵, 면류
A22	가금 또는 어류의 가공	도살, 육처리
A23	식품 또는 식료품	식품의 가공, 저장, 음료
A24	담배, 키크연구	담배, 담배용품
A47J	식품조리기구	조리용 기구
C12	효소, 미생물, 유전공학, 주류	효소, 미생물, 유전공학, 주류
C13	당공업	당공업

6.3. 농업 및 식품에 대한 특허출원분야

- 농업 및 식품에 대한 특허출원 분야는 <표 3-27>과 같다. 이는 식품분야, 식품가공분야, 작물 생산분야, 농기계분야, 기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다시 세부적인 출원 분야로 나뉘지고 있다. 식품분야에는 식품, 발효식품, 과자커피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식품가공분야에는 제빵장치와 식육가공, 식품조리기 등으로 나뉘어져있고, 작물생산분야는 작물재배, 임업축산, 수산 분야로, 농기계 분야에는 토작업구, 파종시비기, 수확기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표 3-27 농업 및 식품에 대한 특허출원 분야

분 야		세부출원 분야
식품 분야	식품	기능성식품, 코팅쌀, 두부, 향신료, 육류제품, 해산물제품, 면류, 빵류, 유제품, 음료, 식품의 보존
	발효식품	주류, 김치, 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젓갈, 식초
	과자커피	커피, 프림, 초콜렛, 아이스크림, 껌, 빙과, 사탕, 스넥
식품가공 분야	제빵장치	반죽기, 오븐기, 튀김기, 성형기, 베이킹
	식육가공	육절기, 연육기, 가금 가공기, 어패류가공기, 소시지 제조기
	식품조리기	밥솥, 그릴, 조리용기, 프라이팬, 단열용기, 식품저장용구
작물생산 분야	작물재배	식물, 버섯재배, 육묘상자, 화분, 수경재배, 관수장치, 비닐하우스, 차광막
	임업축산	수목이식, 수목재배, 임산물의 가공, 양봉, 급이구, 축사, 수유용구, 사육용구, 부화기
	수산	해조재배, 양식, 어류어류, 낚시, 낚시용구, 통발, 포획구
농기계 분야	토작업구	쟁기, 휴립기, 씨레, 로타리, 정지구
	파종시비기	파종기, 이식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수확기	탈곡기, 콤바인, 과일수확기, 건초장치
기타		사료 및 사료제조장치, 해충 구제장치 및 포획용구, 담배 및 껍연용품

6.4. 식품 관련 특허출원 동향²³

○ WIPO²⁴ 기준 32개 기술분류 중 식료품(IPC A21~A24에 속하는 기술로서, 제빵, 제과, 식육 가공, 식품 일반, 식품 보존, 유제품, 식용유지, 음료, 사료, 담배제조 등이 포함된다)²⁵에 대한 연도별 출원건수를 보면 <표 3-28>과 같다.

표 3-28 식료품에 대한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전체건수	859	895	993	1,423	1,770	1,982	2,221	2,480	2,409	2,540	17,572
외국인 (%)	171 (19.9)	183 (20.4)	146 (14.7)	159 (11.2)	184 (10.4)	154 (7.8)	178 (8.0)	198 (8.0)	237 (9.8)	284 (11.2)	1894 (10.8)

23 이 곳의 데이터는 특허청이 2006년 12월에 발행한 「한국의 특허동향 2006」 중 “국가별 · 기술별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24 WIPO : 정식 명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이다. 1967년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에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1974년 UN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를 3년마다 개최하고 회의를 연다.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적 소유권과 문학·음악·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5 IPC : 정식 명칭은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이다. 기술분야(Section)별로 A(생활필수품), B(운수), C(화학), D(섬유), E(건축 토목), F(기계), G(물리), H(전기)로 구분하고 있다. 특허문헌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분류체계로 1954년 국제특허분류 유럽조약에 의해 성립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대표 등이 참가하여 1968년 9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2, 500여건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의한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에 비하여 저조하다 할 수 있고, 근래 전체 특허출원에서 외국인이 점하는 비율이 25% 내외이고 보면 식품분야의 특허출원은 주로 내국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IV. 지적재산의 가치평가

1. 가치평가 모형

1.1. 지적재산의 특성과 가치평가 방법

- 지적재산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소득적 접근, 시장적 접근, 비용적 접근 등으로 구분된다(Taplin, 2004).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의 소유자가 명확하고,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지적재산의 이익이나 비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적재산의 소유자가 민간이고, 그 지적재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또한 외부효과가 없다면 지적재산의 시장가격을 사회적 한계편익으로 취급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적재산의 소유자가 공공부문이거나, 지적재산의 매매가격이 정부에 의해 조정을 받거나, 또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지적재산의 시장가격과 사회적 한계편익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재산의 사회적 한계편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지적재산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농업분야의 지적재산은 대부분 공공부문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적재산에 대한 시장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지적재산의 이익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농업분야 지적재산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지적재산에 대한 사회적 한계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적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지적재산은 특성에 따라 지리적표시, 상표권, 품종특허권, 품종보호권,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 등으로 분류된다. 지적재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품종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은 그 특성이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의 지적자산을 지리적표시, 상표권, 품종특허권(품종보호권),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 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표 4-1).

표 4-1 지적재산별 분석방법 비교

지적재산	분석방법	조사대상
지리적표시	선택형 실험	소비자
상표권	선택형 실험	소비자
품종특허권(품종보호권)	가상가치평가법	생산자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	선택형 실험	소비자

- 지적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다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분석을 위한 자료조사의 대상도 다르게 설정된다. 먼저 지리적표시와 상표권은 농산식품이 가지는 속성들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들 속성들에 대한 가치평가는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와 상표권에 대한 가치는 농산식품의 소비자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분석방법은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선택형 실험(Choice Experiments; CE)이 적합하다.
- 품종특허권(품종보호권) 자체에 대한 가치는 품종특허(품종보호권)의 수요자인 농산물 생산자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 품종특허권(품종보호권)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예, 농촌진흥청)이 소유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품종특허권(또는 품종보호권)은 공공재 또는 준사유재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이 적합하다.
- 반면에 품종특허권(또는 품종보호권)을 민간이 소유하면 사유재이다. 이 경우 시장의 매매가격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이 한계지불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매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가치평가법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 특정성분 함유 특허는 농산식품에 포함되는 하나의 속성이다. 농산식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하나의 속성에 대하여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와 상표권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선택형 실험의 이용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특정성분 함유 특허에 대한 가치는 농산식품의 소비자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1.2. 선택형 실험

- 선택형 실험은 확률효용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험적 방법으로 응답자들의 선호를 파악하여 효용함수를 구축하며, 분석대상 재화를 구성하는 속성들의 부분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컨조인트 분석법(conjoint analysis)의 하나로 조건부 선택법, 선택모형법 또는 선택형 컨조인트 모형이라고도 하며, 마케팅, 수송, 환경, 레저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Adamowicz et al., 1998; Lusk et al., 2003; Shin, 2006; 박승준 외, 2003; 김태균 · 홍나경, 2005; 이진홍 외, 2006).
- 선택형 실험은 몇 가지 속성들의 수준들로 이루어진 프로파일들을 먼저 설정하고, 응답자에게 그 중의 몇 개의 프로파일들을 제시한다. 응답자는 제시된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선호하

는 프로파일을 선택한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확률효용모형에 의해 설명된다. i 응답자가 j 프로파일로부터 얻는 효용은 다음의 식(1)과 같이 간접효용함수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1) \quad U_{ij} = V_{ij}(X_{ij}) + \varepsilon_{ij}.$$

○ 여기서 U_{ij} 는 i 응답자가 j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 얻는 효용수준으로 확정적인(deterministic) 효용 V_{ij} 와 확률적인(stochastic) 부분 ε_{ij} 으로 구분된다.

○ i 응답자는 주어진 K 개의 프로파일들 중에서 j 프로파일이 가장 높은 효용 수준을 제공하면, i 응답자는 j 프로파일을 선택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quad D_{ij} = \begin{cases} 1 & \text{if } U_{ij} = \max(U_{i1}, U_{i2}, \dots, U_{i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식(1)과 (2)에 의해서 모든 $k \neq j$ 의 경우에 대하여 $V_{ij} + \varepsilon_{ij} > V_{ik} + \varepsilon_{ik}$ 또는 $\varepsilon_{ij} + V_{ij} - V_{ik} > \varepsilon_{ik}$ 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i 응답자가 j 프로파일을 선택할 확률 P_{ij} 는 다음의 식(3)과 같이 나타난다.

$$(3) \quad \begin{aligned} P_{ij} &= \text{Prob}(D_{ij} = 1) \\ &= \text{Pr}(V_{ij} + \varepsilon_{ij} > V_{ik} + \varepsilon_{ik}) = \text{Pr}(V_{ij} - V_{ik} > \varepsilon_{ik} - \varepsilon_{ij}) \quad \text{for all } k \neq j. \end{aligned}$$

○ 위의 식(3)에서 오차항(ε_{ij})이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며, 또한 제1형태 극한치 분포(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i 응답자가 j 프로파일을 선택할 확률(P_{ij})은 다음의 식(4)와 같이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Maddala, 1983, p. 61).

$$(4) \quad P_{ij} = \frac{\exp(\mu V_{ij})}{\sum_{k=1}^K \exp(\mu V_{ik})}.$$

○ 여기에서 μ 는 비례모수이며, 일반적으로 불변오차분산을 의미하는 1과 같은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간접효용함수의 확정적인 부분 V_{ij} 의 함수형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식(5)와 같이 선형(linear)으로 가정한다. 이 식에서 X_{ijm} 은 i 소비자의 j 프로파일에 대한 m 번째 속성이다.

$$(5) \quad V_{ij} = \sum_{m=1}^M \beta_m X_{ijm}.$$

- 위에서 설정된 다항로짓모형의 계수들은 일반적으로 최우추정법에 의해 추정되며, 로그-우도함수(log-Likelihood function)는 다음의 식(6)과 같이 나타난다.

$$(6) \quad \ln L = \sum_{i=1}^N \sum_{j=1}^K [D_{ij} \ln(P_{ij})].$$

- 그리고 속성별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은 개별 속성들과 가격 속성간의 상충관계를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즉 다음의 식(7)과 같이 식(5)의 간접효용함수를 전미분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X_{ijt} 는 t속성 변수이고, X_{ijM} 은 가격속성 변수이다.

$$(7) \quad WTP(t) = \frac{dV/dX_{ijt}}{dV/dX_{ijM}} = - \frac{\beta_t}{\beta_M}.$$

1.3. 가상가치평가법

- 가상가치평가법은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조사에 의하여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형태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 기법이 있다. 개방형 설문형태는 직접질문법과 지불카드기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폐쇄형 질문에는 경매법(bidding game)과 이선선택형(dichotomous choice)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이들 중 이선선택형은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고 각각의 응답자에게 무작위로 명시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응답자는 '예' 또는 '아니오'로 한 번만 대답하게 된다. 응답자는 제시된 금액이 본인의 지불의사금액보다 같거나 작으면 '예'라고 응답하고, 반대로 본인의 지불의사금액보다 높으면 '아니오'라고 응답할 것이다.
- 이선선택형은 응답자가 주어진 제시가격보다 본인의 지불의사금액이 큰지 작은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응답하기가 용이하고, 또한 실제 시장거래에서의 의사결정 상황과 매우 흡사하여 전략적 편익이 최소화될 수 있으며 출발점 편익이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Freeman, 1993). 이와 같이 이선선택형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가상가치평가법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1989년 Exxon Valdez의 원유 오염에 대한 손실을 추정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적용된 바 있다. 또한 미국 내무성과 해양대기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도 이선선택형을 추천하고 있다(NOAA, 1994, p. 1144).

-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지적재산(품종특허권, 품종보호권)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한다. 응답자(농산물 생산자)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지적재산을 이용(구입)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것이다.
- 선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이윤은 지적재산 이용 의향(y), 생산물 가격(p), 그리고 비용(C)의 함수로 가정하며, 관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오차항(ε_i)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8) \quad \pi(i, p, C) = v(i, p, C) + \varepsilon_i \quad i=0 \text{ 또는 } 1,$$

- 여기에서 $i=0$ 은 지적재산을 이용(구입)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며, $i=1$ 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지적재산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ε_i 는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가지며, 평균이 0이라고 가정하는 임의변수(random variable)를 나타낸다.
- 응답자가 “지적재산의 가격이 B 원일 경우 구입(이용)하시겠습니까?”란 질문에 ‘예’로 응답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B)을 지불하더라도 지적재산을 구입(이용)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이윤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는 다음의 부등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9) \quad v(1, p, C+B) - v(0, p, C) \geq \varepsilon_0 - \varepsilon_1.$$

- 또한 두 가지 선택에 의한 이윤의 차이 (Δv)와 오차항의 차이 (η)는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10) \quad \begin{aligned} \Delta v(B) &= v(1, p, C+B) - v(0, p, C), \\ \eta &= \varepsilon_0 - \varepsilon_1. \end{aligned}$$

- 그리고 응답자가 지적재산을 이용(구입)할 확률, $\Pr(i=1)$ 은 다음의 식(11)과 같이 확률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text{Pr}(i=1) &= \text{Pr}[\Delta v(B) \geq n] \\
 (11) \qquad &= F_n[\Delta v(B)] \\
 &= F_n[B, p, C; \beta].
 \end{aligned}$$

- 여기에서 $\text{Pr}[\cdot]$ 은 확률함수를 나타내며, $F_n[\cdot]$ 는 n 의 누적분포함수이며, β 는 B, p, C 에 대한 모수들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즉 지적재산을 이용(구입)할 확률은 입장료의 제시금액, 소득수준,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변수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 식(11)의 확률모형의 추정은 프로빗모형(probit model)과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할 수 있다. 오차항이 프로빗모형에서는 표준정규분포로 가정되고, 로짓모형에서는 표준로짓분포로 가정된다. 이들 두 모형의 추정결과는 거의 유사하지만 추정결과로부터 가치 측정 계산이 프로빗모형보다 로짓모형에서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거의 로짓모형을 채택한다. 로짓모형을 가정할 경우 위의 식(11)은 다음의 식(12)와 같이 나타난다.

$$(12) \qquad \pi_1 = \frac{1}{1 + \exp(-\Delta v)} .$$

- 식(12)의 Δv 에 대한 함수유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선형함수와 로그함수의 두 형태를 고려한다. Δv 의 형태를 선형함수로 가정할 경우 선형로짓모형이라고 하며, 로그함수로 가정할 경우 로그로짓모형이라고 한다.
- 로짓모형의 모수의 값들은 일반적으로 최우추정법(MLE)에 의해 추정되며, 그 추정계수는 유효추정량이며, 일치추정량을 나타낸다(Amemiya, 1981).
- 위의 식(12)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평가한 지불의사금액은 확률변수로 나타난다. 따라서 후생척도로서 지불의사금액은 단일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평균(overall mean), 중앙값(median),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 평균(mean) 등 여러 가지 대표 값을 고려할 수 있다(Hanemann, 1984; Boyle et al., 1988). 여러 가지 측정치 중에서 이론적 제약과의 일치성, 통계적 효율성, 그리고 총계 가능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준은 절단된 평균이다 (Duffield and Patterson, 1991).
- 한편, 로짓모형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특정한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응답자의 반응만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비모수적 방법이 제시되었다. Habb and McConnell(1997)

의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은 주어진 제시가격에서 응답확률을 사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며, 다음의 과정에 의하여 설명된다.

-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형태로 주어진다. “귀하는 가격(기부금, 세금)이 B_j 원일 때 이를 구입(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때 주어지는 제시가격이 M 개라고 하고 이를 j 로 표현하면 $j=0,1,\dots,M$ 이 되고, 만약 $j > k$ 일 경우에는 $B_j > B_k$ 이 되고 B_0 는 0의 값을 가진다. 개별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 (W)이 B_{j-1} 에서 B_j 까지의 구간에 있을 확률을 p_j 라고 하면, 다음의 식(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quad p_j = P(B_{j-1} < W \leq B_j) \quad \text{for } j = 1, \dots, M+1.$$

- 응답자들은 $j=1$ 에서 M 까지의 제시금액 (B_j)에 대하여 각각 응답하게 되는데, 최대제시금액 B_M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B_{M+1} = \infty$ 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누적분포함수를 F_j 라 한다면 CDF는 다음의 식과 같다.

$$(14) \quad F_j = P(W \leq B_j) \quad \text{for } j = 1, \dots, M+1, \quad F_{M+1} = 1.$$

- 여기에서 누적분포함수가 아닌 각 제시금액 사이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p_j 는 누적분포함수 $F_j - F_{j-1}$ 로 계산되며, 초기의 누적분포함수 $F_0 = 0$ 이다. Turnbull 분포무관모형에서는 누적분포확률 또는 구간확률로 추정이 가능하며,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Habb and McConnell, 1997).

- ① $j=1$ 부터 M 까지 F_j 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F_j = \frac{N_j}{N_j + Y_j}$ 이며, N_j 는 제시금액 B_j 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응답하는 응답자의 수이고, Y_j 는 ‘예’라고 응답하는 응답자의 수이다.
- ② $j=1$ 부터 시작하여, F_j 와 F_{j+1} 의 크기를 비교한다.
- ③ 만약에 F_{j+1} 이 F_j 보다 크면, 계속한다.
- ④ 만약에 F_{j+1} 이 F_j 보다 작거나 같으면, j 와 $j+1$ 을 합하여 계산하며, $F_{j+1} > F_j$ 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산한다.
- ⑤ 누적분포함수가 단조증가함수가 될 때까지 계속한다.
- ⑥ 누적분포함수의 차이를 이용하여 확률밀도함수를 계산한다.

- 이와 같은 반복적인 과정에 의하여 계산된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기대치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15) \quad E(W) = \int_0^{\infty} W dF(W) = \sum_{j=1}^{M+1} \int_{B_{j-1}}^{B_j} W dF(W).$$

- 위의 식(15)에서 제시금액간의 구간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각각의 구간에서 최소값을 기준으로 하는 lower-bound를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제시된 각각의 제시금액 구간에서 최소값을 적용할 때 지불의사금액의 기대치, $E(LB_{WTP})$ 는 다음의 식(16)과 같이 계산된다(Habb and McConnell, 1997).

$$(16) \quad E(LB_{WTP}) = 0 \cdot p(0 \leq W < B_1) + B_1 \cdot p(B_1 \leq W < B_2) + \dots + B_M \cdot p(B_M \leq W < B_{M+1}) = \sum_{j=1}^{M+1} B_{j-1} p_j.$$

- 그리고 위의 lower-bound를 적용한 경우의 지불의사금액의 분산은 다음의 식(17)에 의해 추정된다.

$$(17) \quad V\left(\sum_{j=1}^{M+1} B_{j-1} p_j\right) = \sum_{j=1}^{M+1} B_{j-1}^2 [V(F_j) + V(F_{j-1})] - 2 \sum_{j=1}^M B_j B_{j-1} V(F_j),$$

여기에서 $V(F_j) = \frac{F_j(1-F_j)}{N_j + Y_j}.$

2. 지리적표시 · 상표권에 대한 평가 : 참외

2.1. 조사 설계

- 지리적표시 및 상표에 대한 가치 평가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참외를 선택하였다. 참외의 주산지는 경상북도 성주군이며, 성주참외는 지리적표시 농축산물 제10호로 2005년 12월 1일에 등록되었다.
- 지리적표시 및 상표를 포함한 참외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선택형 실험의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참외에 대한 속성 및 수준을 다음의 <표 4-2>와 같이 설정한다. 먼저 참외의 속성을 친환경 인증, 지리적표시 및 상표 등록, 등급 그리고 가격으로 구분한다. 친환경 인증은 ‘미인증’과 ‘인증’의 2단계로 구분하며,

지리적표시 및 상표 등록은 ‘지리적표시: 미등록 & 상표: 미등록’, ‘지리적표시: 등록 & 상표: 미등록’, ‘지리적표시: 등록 & 상표: 등록’의 3단계로 구분한다. 참외의 등급은 ‘하’, ‘보통’, ‘상’, ‘특’의 4단계로 구분하며, 그리고 참외의 가격(원/15kg)은 10,000’, ‘20,000’, ‘30,000’, ‘40,000’의 4단계로 구분한다.

표 4-2 참외의 속성 및 수준

속 성	속성별 수준			
친환경 인증	‘미인증’		‘인증’	
지리적표시 및 상표 등록	‘지리적표시: 미등록 & 상표: 미등록’ ‘지리적표시: 등록 & 상표: 미등록’ ‘지리적표시: 등록 & 상표: 등록’			
등 급	‘하’	‘보통’	‘상’	‘특’
가 격(원/15kg)	‘15,000’	‘25,000’	‘40,000’	‘55,000원’

- 응답자에게 친환경 인증, 등급, 지리적표시, 상표 등의 참외가 가지는 속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4-3>과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표 4-4>와 같이 네 가지의 속성을 지닌 세 종류(A, B, C)의 선택대안을 제시하여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한다. 이 중 ‘참외A’는 현재 (base) 상태를 나타내며, 즉 친환경 인증은 ‘미인증’, 지리적표시 및 상표 등록은 ‘지리적표시: 미등록 & 상표: 미등록’, 등급은 ‘하’, 그리고 가격은 ‘15,000원’이다. ‘참외B’와 ‘참외C’는 더 높은 수준의 속성을 지닌 참외를 나타낸다. 한 명의 응답자에게 이와 같은 설문 3개가 주어진다.

표 4-3 응답자에게 제공한 참외 속성에 대한 설명

○ 친환경 인증 :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시행
○ 참외의 등급 : 무게, 섀택, 신선도, 육질, 향기, 당도, 결점 등에 따라 ‘특’, ‘상’, ‘보통’, ‘하’ 로 구분
○ 지리적표시제 :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을 등록·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성주참외는 2005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
○ 상 표 :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 성주참외의 등록 상표는 ‘성주참외풍경’, ‘큰집 꿀벌 수분 참외’, ‘선남황토참외’, ‘장원인삼참외’ ‘원성철꿀벌참외’ 등

표 4-4 선택형 실험 설문의 예시

속성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특, 상, 보통, 하)	지리적표시(성주산) 및 상표 등록 여부	가격 (원/15kg)	선택(✓)
참외A (base)	미인증	하	성주산(×), 상표(×)	15,000	
참외B	미인증	특	성주산(○), 상표(×)	40,000	
참외C	미인증	보통	성주산(○), 상표(○)	55,000	

- 참외의 속성과 수준을 <표 4-2>와 같이 설정하고 설문지의 형태를 <표 4-4>와 같이 설계할 경우 선택대안집합을 구성하기 위한 속성과 수준들을 결합하면 $(2 \times 3 \times 42) \times (2 \times 3 \times 42)$ 개의 조합들이 존재한다. 이들 전부를 이용하여 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교설계(orthogonal design)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줄인다. 이를 위해 SAS의 Proc Optex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36개의 프로파일들의 조합을 얻었다(Kuhfeld, 2003). 또한 이들 조합들 중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명백하게 우월한 선택 대안이 존재하는 조합을 삭제하고, 나머지 21개의 조합을 이용하여 설문을 작성하였다(표 4-5).

표 4-5 설문에 이용된 프로파일들의 조합

set	친환경 인증	등급	지리적표시 및 상표	가격	친환경 인증	등급	지리적표시 및 상표	가격
1	인증	특	지리적표시	55,000	인증	상	미등록	25,000
2	인증	특	지리적표시 & 상표	55,000	미인증	상	지리적표시 & 상표	25,000
3	인증	상	미등록	55,000	미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55,000
4	인증	상	미등록	25,000	미인증	상	지리적표시 & 상표	40,000
5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40,000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 상표	55,000
6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40,000	미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25,000
7	인증	보통	미등록	25,000	미인증	특	지리적표시 & 상표	55,000
8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 상표	40,000	인증	상	지리적표시	55,000
9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 상표	25,000	인증	특	지리적표시	25,000
10	미인증	특	지리적표시	40,000	미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 상표	55,000
11	미인증	특	지리적표시	25,000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40,000
12	미인증	특	지리적표시 & 상표	55,000	미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40,000
13	미인증	특	지리적표시 & 상표	25,000	인증	상	지리적표시 & 상표	55,000
14	미인증	상	지리적표시	25,000	인증	특	미등록	55,000
15	미인증	상	미등록	55,000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55,000
16	미인증	상	지리적표시 & 상표	55,000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 상표	25,000
17	미인증	상	지리적표시 & 상표	40,000	미인증	특	미등록	55,000
18	미인증	상	지리적표시 & 상표	25,000	인증	특	지리적표시	25,000
19	미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55,000	미인증	특	미등록	25,000
20	미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 상표	40,000	인증	상	미등록	40,000
21	미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 상표	25,000	인증	보통	지리적표시 & 상표	40,000

2.2. 자료 조사

-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연령은 응답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감안하여 20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일시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조사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관공서 민원실, 백화점, 시장

등이며, 조사방법은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였다. 조사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4명의 대학생을 선정하였다.

- 조사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 첫째는 참외 구입횟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인지 여부, 지리적표시제 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 수, 소득 등의 응답자 특성변수에 대한 질문이며, 둘째 부분은 선택형 실험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총 응답자 수는 300명이며, 응답자들의 특성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4-6>과 같다. 성별은 남성은 111명(37.0%), 여성이 189명(63.0%) 이며, 연령은 극소 22세, 극대 78세, 평균 45.60세, 표준편차 12.07세를 나타낸다. 월 평균 가계 총소득은 100만원 미만=1, 100~199만원=2, 200~299만원=3, 300~499만원=4, 500~699만원=5, 700만원 이상=6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균 3.13, 표준편차 1.22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은 국졸이하 23(7.7%), 중·고등학교 138명(46.0%), 전문대학 41명(13.7%), 대학교 이상 98명(32.6%)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원 수는 평균 3.61명이며, 표준편차는 1.17명이다.

표 4-6 응답자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극소	극대	평균	표준편차
성별(남성=1, 여성=2)	1	2	1.63	0.48
연령(세)	22	78	45.60	12.07
소득*	1	6	3.13	1.22
교육수준**	1	4	2.72	1.01
가구원 수	1	7	3.61	1.17

* 100만원 미만=1, 100~199만원=2, 200~299만원=3, 300~499만원=4, 500~699만원=5, 700만원 이상=6.

** 국졸이하=1, 중·고등학교=2, 전문대학=3, 대학교 이상=4

5.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 앞의 식(4)과 식(5)에 의해 설명된 다항로짓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독립변수인 속성들과 응답자 특성들에 대하여 다음의 <표 4-7>과 같이 값을 부여한다. 친환경인증(ENV)의 경우 ‘미인증’은 0, ‘인증’은 1을 부여하며, 지리적표시(GEO)의 경우 ‘미표시’는 0, ‘표시’는 1을 부여한다. 상표(COM)는 ‘미등록’은 0, ‘등록’은 1을 부여한다. 등급(GRADE)은 경우는 ‘하’는 0, ‘보통’은 1, ‘상’은 2, ‘특’은 3을 부여한다. 그리고 가격(PRICE, 원/15kg)은 15,000, 25,000, 40,000, 55,000원 그대로 정의된다.

표 4-7 변수의 정의

변 수	정 의
친환경 인증(ENV)	미인증=0, 인증=1
지리적표시(GEO)	미표시=0, 표시=1
상표(COM)	미등록=0, 등록=1
등급(GRADE)	하=0, 보통=1, 상=2, 특=3
가격(PRICE)	15,000 25,000 40,000 55,000

- 소비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앞의 식(4)와 식(5)에 의해 나타난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였다(Maddala, 198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4-8>과 같이 요약된다.

표 4-8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치	표준오차	$Pr > \chi^2$
친환경 인증(ENV)	0.87675	0.10557	<0.0001
지리적표시(GEO)	1.17269	0.13139	<0.0001
상표(COM)	0.30446	0.12087	0.0118
등급(GRADE)	0.27973	0.04788	<0.0001
가격(PRICE)	-0.0000543	0.0000045	<0.0001

주: 관측치의 개수: 2,700

Wald 통계량(p-value): 203.89(<0.0001)

Likelihood Ratio 통계량(p-value): 261.34(<0.0001)

- <표 4-8>의 추정결과를 보면 모든 변수들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참외 소비선택에 있어서 친환경 인증, 지리적표시, 상표, 등급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양(+)으로 나타나, 친환경 인증이 미인증의 경우에 비해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리적표시에 대한 계수도 양(+)으로 추정되어,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표에 대한 계수의 부호도 양(+)으로 추정되어, 상표등록을 한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등급에 대한 계수의 부호도 양(+)으로 나타나며, 등급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반면에 가격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음(-)으로 추정되어 가격이 높을수록 참외를 소비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5.4.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및 해석

- <표 4-8>의 추정계수와 앞의 식(7)을 이용하여 참외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즉 개별 속성들과 가격간의 상충관계를 이용하여 개별 속성들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을 계산한 결과는 <표 4-9>와 같이 나타난다.

표 4-9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속 성	한계지불의사금액	
	금 액(원/병)	base 가격에 대한 비중(%)
친환경 인증	16,146.41	108
지리적표시	21,596.50	144
상표	5,607.10	37
등급	5,151.57	34

- 친환경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16,146.41원/15kg으로 계산되며, base 가격(15,000원/15kg)의 108%가 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참외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참외에 비해 소비자들은 15kg당 16,146.41원을 더 지불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금액은 현재 상태(친환경 인증: 미인증, 지리적표시: 미등록, 상표: 미등록, 등급: 하)의 108% 정도가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환경인증에 대해 소비자들의 높은 선호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성주참외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21,596.5원/15kg로 base 가격의 144%로 나타난다. ‘성주참외’의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비자들은 15kg당 21,596.5원을 더 지불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금액은 현재 상태의 144% 정도가 된다.
- 반면에 상표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5,607.1원/15kg로 상대적으로 작게 평가된다. ‘성주참외풍경’, ‘큰집 꿀벌 수분 참외’, ‘선남황토참외’, ‘장원인삼참외’, ‘원성철꿀벌참외’ 등의 상표를 가진 참외에 대해 5,607.1원/15kg 더 지불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외 등급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5,151.57원/15kg으로 나타난다. ‘하’→‘보통’, ‘보통’→‘상’, ‘상’→‘특’에 대해서 각각 참외 15kg당 5,151.57원의 지불의사금액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비자들은 성주참외의 다른 속성에 비해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표시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시장차별화가 성주참외의 경우에는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성주의 지역특화 작목으로서 참외를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 위의 지불의사금액의 추정결과로부터 지적재산과 관련한 두 가지 함의를 유도할 수 있다. 첫째, 지리적표시와 상표권은 등급, 친환경 인증 등과 같이 하나의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의 평가를 위해서는 선택형 실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성주 참외의 경우 지리적표시가 상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평가되고 있다.

3. 품종특허·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 평가 : 장미와 딸기

- 품종특허·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 평가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장미와 딸기를 선택하였다. 품종특허권(또는 품종보호권)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기관(예, 농촌진흥청)이 소유하며, 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품종특허권(또는 품종보호권)은 공공재 또는 준사유재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상가치평가법이 적합하다.

3.1. 사례 1: 장미(진선미)

가. 자료 조사

- 자료 조사를 위해 전국 장미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일시는 2007년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였다. 조사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5명의 경북대학교 대학생을 선정하였다. 조사표의 내용은 장미 재배경력, 연령, 교육수준, 국내품종 사용경험, 해외품종 선호도,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
- 총 응답자 수는 206명이며, 응답자의 특성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다음의 <표 4-10>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장미 재배경력의 평균은 13.11년이며, 표준편차는 6.606년이다. 응답자 연령은 극소 26세, 극대 72세, 평균 50.07세이다.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 이상=4의 값을 부여한 교육수준의 평균은 2.87, 표준편차는 0.836으로 나타난다.

표 4-10 응답자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극소	극대	평균	표준편차
장미 재배경력(년)	1	45	13.11	6.606
연령(세)	26	72	50.07	8.711
교육수준*	1	4	2.87	0.836

*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 이상=4

- 국내품종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표 4-11). 해외품종에 대한 선호정도도 ‘매우 그렇다’가 8.3%, ‘그렇다’가 54.6%로 ‘그렇다’ 이상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약 10% 수준이다(표 4-12).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장미 생산농가들은 관행적으로 해외품종을 사용하고 있으

며, 해외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국내품종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국내품종인 ‘진선미’에 대한 가치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1 국내품종 사용경험(장미)

단위: 명, %

구분	사용경험 有	사용경험 無	합계
국내품종 사용경험	35(17.1)	170(82.9)	205(100)

주: ()는 구성비를 나타냄

표 4-12 해외품종 선호정도(장미)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상관없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합계
해외품종 선호도	17(8.3)	112(54.6)	55(26.8)	14(6.8)	7(3.4)	205(100)

주: ()는 구성비를 나타냄

- 대부분의 응답자가 국내품종을 사용한 경험이 없으며, 국내 육성 품종인 ‘진선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표 4-13>과 같은 ‘진선미’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4-13 응답자에게 제공한 진선미에 대한 설명

품목명 : 진선미

- 색상 :화색 진한 주황색, 이면은 연주황색
- 잎의 표면 : 광택과 물결모양이 강함
- 향 : 무향
- 균일성 : (1년차 재배시험결과)이형주의 발생이 없음
- 안정성 : 영양번식작물로서 안정성이 인정됨
- 꽃잎 모양 : 가장자리의 말림은 중간보다 강하고 물결모양이 매우 약함
- 신초의 안토시아닌 색 : 붉은 갈색
- 가시 : 짧은가시(매우없음), 긴가시(적음)

나. 추정결과 및 해석

- 일반적으로 로짓모형의 추정은 최우추정법이 이용되며, 그 추정치는 유효성과 일치성을 만족한다(Amemiya, 1981). 그러므로 본 연구의 선형로짓모형의 추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4-14>와 같이 요약된다.

표 4-14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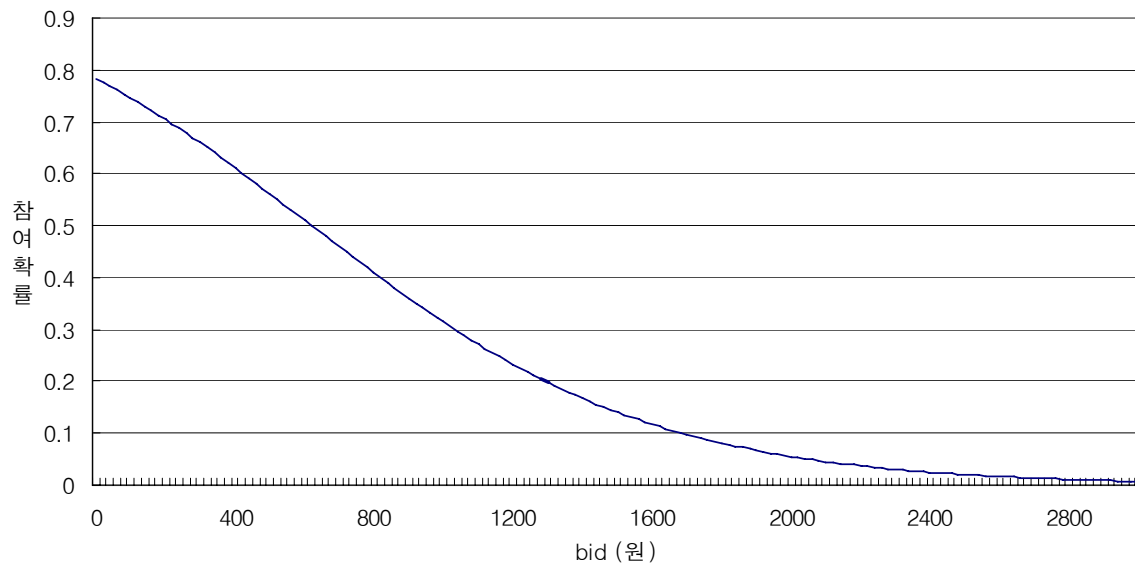
변 수	추정치	t-value
Intercept	-4.3612	-1.83*
제시금액(BID)	-0.0021	-5.11**
국내품종사용경험(USE)	1.0738	1.59
해외품종선호도(FAVOR)	0.0227	0.08
장미재배경력(YEAR)	-0.0248	-0.72
연령(AGE)	0.0613	2.05**
학력(EDU)	0.3025	0.97
Model χ^2	57.012	
Cox와 Snell의 R ²	0.25	
Nagelkerke의 R ²	0.43	
N	205	

**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 로짓모형에서 추정된 설명변수의 t-검정결과를 보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는 응답자에게 제시한 국내품종 장미에 대한 가격(*BID*), 응답자의 연령 (*AGE*)이다. 반면에 국내품종 사용경험 유무(*USE*), 해외품종 선호정도(*FAVOR*), 장미재배 경력(*YEAR*), 학력수준(*EDU*)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한다.
- 제시한 가격에 대한 계수의 부호는 음으로 추정되었다. 즉 국내품종 장미의 가격이 클수록 장미 생산자가 국내품종 장미를 선택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장미 생산자는 국내품종 장미를 선택할 때 장미품종의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도 고려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연령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는 양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개별 장미 생산자는 국내품종 장미를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내품종 사용경험 유무, 해외품종 선호정도, 장미재배 경력, 학력 수준 등은 국내품종 장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품종 ‘진선미’의 종묘가격(*BID*)과 농가가 국내품종 장미(진선미)를 선택할 확률간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4-1>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 그림에서 종묘가격(*BID*) 이외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국내품종 사용경험 유무, 해외품종 선호정도, 장미재배경력, 응답자의 연령, 학력수준 등)은 조사표본의 평균값을 대입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1 가격과 선택 확률(장미-진선미)



- Turnbull 분포무관 모형에서는 국내품종 장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각의 수준별 제시금액과 국내품종 장미를 선택할 확률을 이용한다. 국내 품종 장미에 대한 각각의 제시금액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는 <표 4-15>와 같다. 제시금액에서 국내품종 장미에 대하여 각각 ‘예’ 와 ‘아니오’ 라고 대답하는 응답자의 수와 제시금액에 ‘아니오’ 라고 응답한 확률을 알 수 있다. 국내품종 장미의 각 가격수준에서 ‘아니오’를 선택할 확률밀도함수의 값 p_j 가 음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측점의 확률 p_j 양의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정한다.

표 4-15 제시가격 수준별 반응결과

제시금액	응답자수	예	아니오	확률(아니오)
100	30	18	12	0.4
150	29	9	20	0.6897
200	30	2	28	0.9333
250	27	5	22	0.8148
300	30	0	30	1
350	29	2	27	0.931
400	30	0	30	1
합 계	205	36	169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Turnbull 누적분포함수인 $CDF(F_j)$ 와 Turnbull 확률밀도함수인 $PDF(p_j)$ 를 lower-bound를 기준으로 제시금액 구간들을 정리하면 <표 4-16>과 같이 요약된다.

표 4-16 국내품종 장미(진선미)에 대한 CDF, PDF

제시금액의 범위	Turnbull 누적분포함수	Turnbull 확률밀도함수
0 ~ 100	0.4000	0.4000
500 ~ 150	0.6897	0.2897
150 ~ 200	0.9333	0.2436
200 ~ 250	0.8148	-0.1185
250 ~ 300	pooled	pooled
300 ~ 350	0.931	-0.0690
350 ~ 400	pooled	pooled
400 ~ $+\infty$	1.000	0.0000

- 국내품종 장미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추정한 로짓모형에서는 지불의사금액의 전체평균, 지불의사금액의 평균, 그리고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무런 함수형태도 가정하지 않고 개별 응답자의 제시금액에 대한 반응을 이용한 Turnbull 분포무관모형에서는 국내품종 장미에 대한 개별 응답자의 반응을 통해 구한 누적분포함수와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하여 각 수준별 제시금액의 lower-bound를 기준으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을 구할 수 있다.
- 국내품종 장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7> 및 <표 4-18>과 같이 요약된다. 로짓모형에서 측정한 국내품종 장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평균은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측정치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선형로짓모형에서의 국내품종 장미(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전체평균과 중앙값은 621.7원/주, 평균은 740.5원/주, 그리고 절단된 평균은 736.9원/주이다.
- 이는 장미 생산자의 국내품종 장미에 대한 지불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에 국내품종 장미의 가격이 621원~741원/주의 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장미 생산자는 국내품종 장미를 구입하려 할 것이다.

표 4-17 국내품종 장미(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로짓모형)

단위 : 원/주

구 분	지불의사 금액
전체 평균(overall mean)	621.7
평균(mean)	740.5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	736.9

표 4-18 국내품종 장미(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Turnbull 모형)

단위 : 원/주

구 분	추정치
평균	615.6
표준편차	79.5

- 또한 Turnbull 분포무관모형으로 측정한 국내품종 장미(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의 평균은 615.6원/주 으로, 표준편차는 79.5원/주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5% 신뢰구간은 604.7 ~ 626.5원/주으로 나타난다.
- Turnbull 분포무관모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은 로짓모형으로 추정된 것보다 작게 계측되었다. 한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할 경우 평균치가 하나로 나타나며 음의 제시금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로짓모형보다는 견고(robust)한 것으로 해석된다.²⁶
- 로짓모형과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의 두 모형에 의해 추정된 결과에 의해 국내품종 장미의 가격이 615.6~740.5원/주 의 범위에 있다면, 평균적인 장미 생산자들은 국내품종 장미를 구입하려 할 것으로 해석된다.

3.2. 사례 2: 딸기(설향)

가. 자료 조사

- 자료수집을 위하여 전국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일시는 2007년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조사 방법은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였다. 조사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5명의 경북대학교 대학생을 선정하였다. 조사표의 내용은 딸기 재배경력, 연령, 교육수준, 국내품종 사용경험, 해외품종 선호도, 이선 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
- 총 응답자 수는 202명이며, 응답자의 특성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다음의 <표 4-19>와 같다. 딸기 재배경력의 평균은 19.78년이며, 표준편차는 8.188년이다. 응답자 연령은 극소 35세, 극대 83세, 평균 59.20세이다.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 이상=4의 값을 부여한 교육수준의 평균은 1.68, 표준편차는 0.913으로 나타난다.

표 4-19 응답자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극소	극대	평균	표준편차
딸기 재배경력(년)	2	40	19.78	8.188
연령(세)	35	83	59.20	9.088
교육수준*	1	4	1.68	.913

*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 이상=4

26 실제로 추정된 로짓모형을 보면 제시금액 0에서 0.5보다 낮은 확률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지불의사금액의 전체평균과 중앙값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 경우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하면, 로짓모형보다는 더욱 견고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국내품종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2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9.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0). 해외품종에 대한 선호정도도 ‘매우 그렇다’가 12.9%, ‘그렇다’가 50.0%로 ‘그렇다’ 이상이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는 약 15% 수준이다 (표 4-21).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딸기 생산농가들의 해외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국내품종에 비해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

표 4-20 국내품종 사용경험(딸기)

단위: 명, %

구분	사용경험 有	사용경험 無	합계
국내품종 사용경험	120(59.4)	82(40.6)	202(100)

주: ()는 구성비를 나타냄

표 4-21 해외품종 선호정도(딸기)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상관없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평균
해외품종 선호도	26(12.9)	101(50.0)	45(22.3)	23(11.4)	7(3.5)	202(100)

주: ()는 구성비를 나타냄

- 전체 표본의 약 41%가 국내품종을 사용한 경험이 없으며, 국내 육성 품종인 ‘설향’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답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다음의 <표 4-22>와 같은 ‘설향’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표 4-22 응답자에게 제공한 설향에 대한 설명

품목명 : 설향

- 과형 : 원뿔형이나 원형 ○ 과색 : 선홍색~담홍색 ○ 수량 : 장희와 비슷
- 과실크기 : 육보와 비슷, 대과비율이 높으며 공동과 발생
- 과실경도 : 장희 수준, 봄철 고온기에는 과즙이 과실표면으로 베어 나옴
- 고온기에 과다착색으로 인한 검어지는 증상이 없음
- 저온신장성이 우수하고 전조처리는 크게 필요치 않음
- 연속출뢰성과 숙기는 약간 늦은 편이고, 육묘기 자묘발생량은 많음
- 화아분화는 장희, 육보사이. 축성재배 경우 12월 초·중순경 수확이 가능
- 당과 산의 조화가 잘 되고, 과즙이 풍부하여 상쾌한 느낌을 가짐
- 충해는 장희, 육보와 비슷, 병해는 잿빛곰팡이병에 약간 약하나, 반면 흰가루병이나 탄저병에는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가짐

나. 추정결과 및 해석

- 로짓모형의 추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4-23>과 같이 요약된다. 최우추정법에 의한 그 추정치는 유효성과 일치성을 만족한다(Amemiya, 1981).

표 4-23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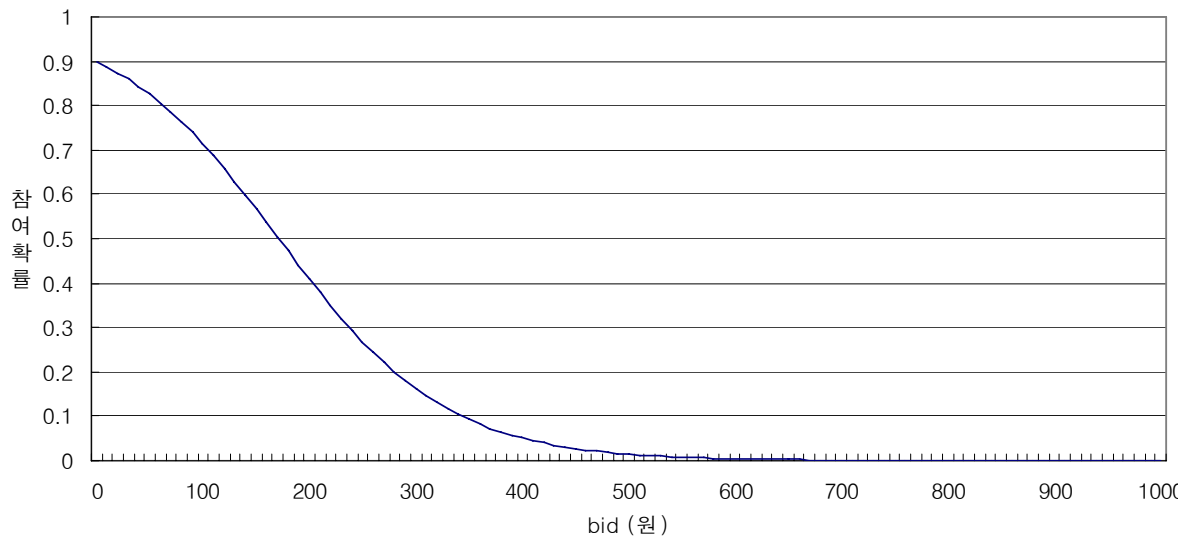
변 수	추정치	t-value
Intercept	3.4195	1.83*
제시금액(BID)	-0.0128	-5.73**
국내품종사용경험(USE)	-0.2692	-0.70
해외품종선호도(FAVOR)	0.1317	0.66
딸기재배경력(YEAR)	0.0044	0.17
연령(AGE)	-1.68×10 ⁻²	-0.71
학력(EDU)	-0.1523	-0.71
Model χ^2	57.373	
Cox와 Snell의 R ²	0.23	
Nagelkerke의 R ²	0.32	
N	202	

** 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 선형로짓모형에서 추정한 설명변수의 t-검정결과를 보면 응답자에게 제시한 국내품종 설향의 종자가격(BID)만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국내품종의 사용경험 유무(USE), 해외품종의 선호정도(FAVOR), 딸기재배 경력(YEAR), 응답자의 연령(AGE), 학력수준(EDU)의 추정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수의 모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한다.
- 로짓모형에서 제시한 설향의 종자가격에 대한 계수의 부호는 음으로 추정되었다. 즉, 국내품종 딸기의 가격이 높을수록 농가가 국내품종 딸기를 선택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딸기 생산자는 국내품종 딸기를 선택할 때 딸기품종의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도 고려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국내품종 사용경험 유무, 해외품종 선호정도, 딸기재배 경력, 응답자의 연령, 학력 수준 등은 국내품종 딸기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국내품종 설향의 종자가격(BID)과 농가가 설향을 선택할 확률간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4-2>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 그림에서 가격(BID) 이외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국내품종 사용경험 유무, 해외품종 선호정도, 딸기재배 경력, 응답자의 연령, 학력수준 등)은 표본의 평균 값을 대입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2 가격과 선택 확률(딸기-설향)



- 국내품종 딸기(설향)에 대한 각각의 제시금액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결과는 <표 4-24>와 같다. 국내품종 딸기(설향)의 각 가격 수준에서 ‘아니오’를 선택할 확률밀도함수의 값 p_j 가 음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관측점의 확률 p_j 가 양의 값을 가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정한다.

표 4-24 제시가격 수준별 반응결과

제시금액	응답자수	예	아니오	확률(아니오)
100	25	22	3	0.1200
150	27	20	7	0.2593
200	30	5	25	0.8333
250	30	2	28	0.9333
300	30	4	26	0.8667
350	30	6	24	0.8000
400	30	4	26	0.8667
합 계	202	63	139	

-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Turnbull 누적분포함수인 $CDF(F_j)$ 와 Turnbull 확률밀도함수인 $PDF(p_j)$ 를 lower-bound를 기준으로 제시금액 구간들을 정리하면 <표 4-25>와 같이 요약된다.

표 4-25 국내품종 딸기에 대한 CDF, PDF

제시금액의 범위	Turnbull 누적분포함수	Turnbull 확률밀도함수
0 ~ 100	0.1200	0.1200
100 ~ 150	0.2593	0.1393
150 ~ 200	0.8333	0.5740
200 ~ 250	0.9333	0.1000
250 ~ 300	0.8667	-0.0666
300 ~ 350	0.8000	-0.0667
350 ~ 400	0.8667	0.0667
400 ~ $+\infty$	1.0000	0.13333

- 국내품종 딸기(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26> 및 <표 4-27>과 같이 요약된다. 로짓모형에서 측정한 국내품종 딸기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평균은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측정치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로짓모형에서의 국내품종 딸기(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전체평균과 중앙값은 171.4원/주, 평균은 179.7원/주, 그리고 절단된 평균은 179.7원/주이다.
- 이는 딸기 생산자의 국내품종 딸기에 대한 지불가치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에 국내품종 딸기의 가격이 포트묘 한주에 170원~180원의 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딸기 생산자는 국내품종 딸기를 구입하려 할 것이다.

표 4-26 국내품종 딸기(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로짓모형)

단위 : 원/주

구 분	지불의사 금액
전체 평균(overall mean)	171.4
평균(mean)	179.7
절단된 평균(truncated mean)	179.7

표 4-27 국내품종 딸기(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Turnbull 모형)

단위 : 원/주

구 분	추정치
평 균	160.0
표준편차	10.5

- 또한 Turnbull 분포무관모형으로 측정한 지불의사 금액의 평균은 160.0원/주, 표준편차는 10.5원/주 이다. 그리고 95% 신뢰구간은 158.6~161.5원/주 으로 나타난다. Turnbull 분포무관모형으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의 평균은 로짓모형으로 추정된 것보다 작게 계측되었다. 한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할 경우 평균치가 하나로 나타나며 음의 제시금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로짓모형보다는 견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 로짓모형과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의 두 모형에 의해 추정된 결과에 의해 국내품종 딸기(설향)의 가격이 160~180원/주 보다 작다면 평균적인 딸기 농가들은 국내품종 딸기를 구입하려 할 것으로 해석된다.

4.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에 대한 가치 평가 : GABA사과

4.1. 조사 설계

- 특정성분 함유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GABA사과를 선택하였다. 특정 성분 함유는 농산식품에 포함되는 하나의 속성이다. 농산식품이 가지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하나의 속성에 대하여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실험의 이용이 적합하다.
- GABA 여부, 친환경인증 여부, 등급 등 사과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기 위한 선택형 실험의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과에 대한 속성 및 수준을 다음의 <표 4-28>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사과의 속성을 GABA 여부,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그리고 가격으로 구분한다. GABA 여부는 ‘없음’과 ‘있음’의 2단계로 구분하며, 친환경 인증은 ‘미인증’과 ‘인증’의 2단계로 구분한다. 사과의 등급은 ‘등외’, ‘보통’, ‘상’, ‘특’의 4단계로 구분하며, 사과의 가격(원/5kg)은 ‘15,000’, ‘30,000’, ‘45,000’, ‘60,000’의 4단계로 구분한다.

표 4-28 사과의 속성 및 수준

속 성	속성별 수준			
GABA 여부	‘없음’		‘있음’	
친환경인증 여부	‘미인증’		‘인증’	
등 급	‘등외’	‘보통’	‘상’	‘특’
가 격(원/5kg)	‘15,000’	‘30,000’	‘45,000’	‘60,000원’

- 응답자에게 GABA 여부, 친환경인증 여부, 등급 등의 참외가 가지는 속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4-29>와 같은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표 4-30>과 같이 네 가지의 속성을 지닌 세 종류(A, B, C)의 선택대안을 제시하여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게 한다. 이 중 ‘C’는 사과를 소비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내며, ‘A’와 ‘B’는 제시된 금액의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한 명의 응답자에게 이와 같은 설문 3개가 주어진다.
- 사과의 속성과 수준을 <표 4-28>과 같이 설정하고 설문의 형태를 <표 4-30>과 같이 설계할 경우 선택대안집합을 구성하기 위한 속성과 수준들을 결합하면 $(22 \times 42) \times (22 \times 42)$ 개의 조합들이 존재한다. 이들 전부를 이용하여 설문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교설계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줄였으며, 그 결과 18개의 프로파일들의 조합을 얻었다(Kuhfeld, 2003).

표 4-29 응답자에게 제공한 사과 속성에 대한 설명

- GABA(감마아미노부티르산)란?
 -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신경안정 및 뇌세포간 신경전달에 관여
 - － 기억력 증가, 학습능력 향상, 스트레스 억제
 - 독성은 없고 혈압강화 작용이 있어 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이용
 - － 콜레스테롤 제거와 당뇨병 개선,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 생체 내에서 생성되지만 스트레스 및 노화로 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건강식품 등을 통한 섭취 필요
 - 현미, 토마토, 된장, 김치 등에 함유되어 있음.
- GABA 사과 : 경주농업기술센터가 특허출원(07.1)
 - 기존의 과일수확 뒤에 기능성 물질의 투입이 아닌 생육상태에서 GABA 성분을 생성
 - 대두발효 미생물을 이용해 제조한 액비를 생육기 사과에 살포
- 친환경 인증 :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시행
- 사과의 등급 : 무게, 색택, 신선도, 육질, 향기, 당도, 결점 등에 따라 ‘특’, ‘상’, ‘보통’, ‘등외’ 로 구분

표 4-30 선택형 실험 설문의 예시

(부사: 5kg)

속성	GABA 여부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가격	선택(✓)
A	없음	인 증	상	45,000	
B	GABA	미인증	상	60,000	
C	둘 다 선택 안함				

4.2. 자료 조사

- 자료 수집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산식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의 연령은 농산식품 소비의 의사결정 능력을 감안하여 20세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일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조사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관공서 민원실, 역 주변, 백화점, 시장 등이다. 조사방법은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한 자기기입 방식을 이용하였다. 조사원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4명의 경북대학교 학생을 선정하였다.
- 조사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부록 2). 첫째는 응답자의 사과의 속성별 인지도에 관한 질문이며, 둘째는 성별, 연령, 소득, 교육수준, 가구원 수 등의 응답자의 특성변수에 대한 질문이며, 마지막 부분은 선택형 실험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총 응답자 수는 202명이며, 응답자들의 특성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다음의 <표 4-31>과 같이 요약된다. 성별은 남성은 72명(35.6%), 여성이 130명(64.4%)이다. 응답자 가운데 여성

이 남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과를 구입하는 주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연령은 극소 20세, 극대 75세, 평균 43.68세, 표준편차 10.60세를 나타낸다. 월 평균 가계 총 소득은 100만원 미만=1, 100~199만원=2, 200~299만원=3, 300~499만원=4, 500~699만원=5, 700만원 이상=6으로 구분하였으며, 평균 3.21, 표준편차 1.25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육수준은 평균 2.44, 표준편차 0.55로 나타나며, 가구원 수는 평균 3.75명이며, 표준편차는 1.10명이다.

표 4-31 응답자 특성변수의 기초통계량

변 수	극소	극대	평균	표준편차
성별(남성=1, 여성=2)	1	2	1.64	0.48
연령(세)	20	75	43.68	10.60
소득*	1	6	3.21	1.25
교육수준**	1	3	2.44	0.55
가구원 수	1	8	3.75	1.10

* 100만원 미만=1, 100~199만원=2, 200~299만원=3, 300~499만원=4, 500~699만원=5, 700만원 이상=6.

** 국졸이하=1, 중·고등학교=2, (전문)대학 이상=3

- 응답자의 사과 속성별 인지 정도는 <표 4-32>와 같이 나타난다. 사과 구입시 등급이 중요하다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3.9%로 등급이 사과 구입의 중요 인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하여 잘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았고,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41%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GABA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그렇다’가 0명(0.0%), ‘그렇다’가 5명(2.5%), ‘그저 그렇다’가 15명(7.4%), ‘그렇지 않다’가 36명(17.8%),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6명(72.3%)로 나타난다. 소비자들의 GABA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낮은 인지도는 선택형 실험을 위한 소비자조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택형 실험의 설문 이전에 앞의 <표 4-29>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표 4-32 사과의 속성별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등급의 중요도	7 (3.5%)	29 (14.4%)	57 (28.2%)	93 (46.0%)	16 (7.9%)
친환경인증 인지도	4 (2.0%)	31 (15.3%)	84 (41.6%)	71 (35.1%)	12 (5.9%)
GABA 인지도	146 (72.3)	36 (17.8%)	15 (7.4%)	5 (2.5%)	0 (0.0%)

주: ()는 구성비를 나타냄

4.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

- 조사설계에 적합한 경험적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식(1)의 효용함수를 다음의 식(18)과 같이 설정한다.

$$(18) \quad U_{ij} = \beta_0 N_{ij} + (1 - N_{ij})(\beta_1 X_{i1} + \beta_2 X_{i2} + \beta_3 X_{i3} + \beta_4 X_{i4}) + \varepsilon_{ij}$$

- 여기에서 N_{ij} : 선택여부 ('A'는 1, 'A 또는 B'는 0),
 X_{i1} : GABA 여부 ('없음'은 0, '있음'은 1),
 X_{i2} : 친환경 인증여부 ('미인증'는 0, '인증'는 1),
 X_{i3} : 등급 ('등외'는 1, '보통'은 2, '상'은 3, '특'은 4),
 X_{i4} : 가격(15,000 30,000 45,000 60,000).

- 위의 식(18)에 의해 응답자가 대안 C(사과를 구입하지 않음)를 선택할 경우 효용수준은 다음의 식(19)와 같으며, 대안 A 또는 대안 B를 선택할 경우 효용수준은 식(20)과 같이 나타난다.

$$(19) \quad U_{ij} = \beta_0 + \varepsilon_{ij}$$

$$(20) \quad U_{ij} = \beta_1 X_{i1} + \beta_2 X_{i2} + \beta_3 X_{i3} + \beta_4 X_{i4} + \varepsilon_{ij}$$

- 소비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우추정법에 의해 앞의 식(4)와 식(5)에 의해 나타난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Maddala, 198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의 <표 4-33>과 같이 요약된다.

표 4-33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

변 수	추정치	표준오차	Pr > χ^2
선택여부(β_0)	-1.88452	0.24409	<.0001
GABA 여부(β_1)	0.77361	0.13080	<.0001
친환경 인증여부(β_2)	0.75757	0.13098	<.0001
등급(β_3)	0.30545	0.05183	<.0001
가격(β_4)	-0.000031	4.73228×10 ⁻⁶	<.0001

주: 관측치의 개수: 1,818

Wald 통계량(p-value): 202.82(<0.0001)

Likelihood Ratio 통계량(p-value): 351.64(<0.0001)

- 다항로짓모형 추정치의 검정결과를 보면 선택여부, GABA여부, 친환경 인증여부, 등급 그리고 가격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사과를 선택

함에 있어서 GABA 여부, 친환경 인증여부, 등급 그리고 가격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 사과 선택여부에 대한 계수(β_0)의 추정치는 음(-)으로 나타나, 사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GABA 여부에 대한 계수(β_1)는 양(+)으로 추정되어, ‘GABA 없음’에 비해 ‘GABA 있음’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에 대한 계수(β_2)의 부호도 양(+)으로 추정되어, ‘친환경 미인증’ 보다 ‘친환경 인증’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등급에 대한 계수(β_3)도 양(+)으로 나타나며, 등급이 ‘등외’ ‘보통’ ‘상’ ‘특’ 으로 갈수록 소비자가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사과의 가격에 대한 계수(β_4)의 추정치는 음(-)으로 추정되어 사과의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사과를 선택할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4.4.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및 해석

- <표 4-33>의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사과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즉 개별 속성들과 가격 간의 상충관계를 이용하여 개별 속성들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사과 구매 선택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사과 선택 여부에 대한 계수(β_0)의 추정치를 가격의 계수(β_4)의 추정치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GABA 여부에 있어서 ‘GABA 있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GABA 여부에 대한 계수(β_1)의 추정치를 가격의 계수(β_4)의 추정치로 나누고 -1을 곱한 값이다. 친환경 미인증에 대한 친환경 인증의 지불의사금액도 친환경 인증 여부에 대한 계수의 추정치(β_2)를 가격의 계수(β_4)로 나눈 값에 -1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한편 등급이 한 단계 높아짐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은 등급에 대한 계수(β_3)의 추정치를 가격의 계수(β_4)로 나누어서 구한 값이다.

표 4-34 속성별 한계지불의사금액

속 성	한계지불의사금액	
	수준의 변화	금액(원/5kg)
GABA 여부	없음 → 있음	24,955.16
친환경 인증 여부	미인증 → 인증	24,437.74
등급	등외 → 보통, 보통 → 상, 상 → 특, 특 → 상	9,853.23

- 다항로짓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사과 속성들의 수준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계산한 결과는 <표 4-34>와 같이 요약된다. 먼저 GABA 여부의 경우 ‘GABA 있음’ 이 ‘GABA 없음’에 비해 24,955.2원/5kg의 지불의사를 가진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의 경우 인증이 미인증

에 비해 24,437.7원/5kg의 지불의사를 가진다. 그리고 등급의 경우는 등급이 ‘등외 → 보통’, ‘보통 → 상’, ‘상 → 특’, ‘특 → 상’ 과 같이 한 단계 높아짐에 따라 9,853.2원/5kg의 지불의사를 나타낸다.

- 위의 지불의사금액의 추정결과로부터 지적재산과 관련한 두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특정성분 함유 특허는 등급, 친환경 인증 등과 같이 하나의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의 평가를 위해서는 선택형 실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GABA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이 친환경인증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기능성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농업인은 기능성 농산물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지리적표시, 상표, 특정성분 함유 특허 등은 농산물이 가지는 속성이다. 속성별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실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선택형 실험도 가상가치평가법과 마찬가지로 가설적 상황에서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의 반응과 다른 가설적 편이가 존재할 수 있다(Carlsson and Martinsson, 2001; Lusk and Schroeder, 2004). 따라서 측정결과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제공하는 선택형 실험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며, 계속된 연구과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V.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1. 분쟁해결제도²⁷

- WTO회원국인 한국은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상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국내 지적재산권 뿐만 아니라 외국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와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의 구제 및 집행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방지 및 침해시의 구제방법 및 절차 또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WTO 다른 회원국들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은 분쟁사안에 따라 관할법원인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의 소송제도를 통하여 해결된다. 지적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은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이 담당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 등은 일반법원에서 담당한다. 특허법원은 고등법원 급의 전문법원으로 설치되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특허심판은 결정계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별되는데, 결정계 심판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 청구인만이 존재하는 심판이고,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한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하여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이다. 특허심판은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특허소송은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영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이라고 불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일반법원에서 이를 심리, 재판한다.

* 이 연구는 이로리 (계명대학교 법학부 조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27 특허청 (www.kipo.go.kr), 특허심판원 (www.kipo.go.kr/ipt), 특허법원 (patent.scourt.go.kr) 관련 자료 참조.

○ 특허법원은 특허법 제19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예컨대 종자산업법 제105조에서 그 소정의 사건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을 담당한다. 그러한 사건은 대체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으로서 특허권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다룬다. 특허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은 (i) 특허청장을 피고로 한 결정계 심결취소소송²⁸, (ii) 등록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계 심결취소소송²⁹, (iii) 종자산업법상의 소송³⁰이 있다. 특허법원의 토지관할은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서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는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분쟁사례

○ 다음에서는 농업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효력범위에 관하여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된 외국과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 검토대상이 된 분쟁 사례는 식물특허분쟁 1건과 상표분쟁 7건이다. 상표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농산물 (1건), 화훼류 (2건), 유아용 농산물 이유식 (1건), 농업용 제초제 (1건), 농약 (1건), 농기계 (1건)이다.

2.1. 식물특허: 플로리다분다 장미식물 No.308³¹

가. 사실관계

○ 베 코르데스 죄엔 로젠술렌 게엠바하 운트 컴파니 카게 (원고, 독일)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이 2001년 7월 31일 내린 심결³²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는

28 구체적으로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변경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심사관의 거절결정, 취소결정 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위 각 심판의 심판청구 각하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위 각 심판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정정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다.

29 구체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무효심판,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 실시권허여심판의 심결취소소송과 상표에 관한 등록취소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위 각 심판의 심판청구 각하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위 각 심판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다.

30 종자산업법 제105조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품종보호의 무효 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품종보호출원서·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다.

31 특허법원 1002.10.10선고, 2001허 4722, 거절사정 (특).

1997년 9월 19일 명칭을 ‘플로리다분다 장미식물 No. 308’로 하는 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출원번호 1997년 제47782호)을 하였다. 이 사건의 출원발명은 1996년 제10195호로 출원된 바 있는 황색 플로리분다 장미식물 No.966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변종식물인 새로운 온실용 플로리분다 클래스의 장미식물 변종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의 출원발명 명세서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지식을 가진 자 (이하 ‘당 업자’라 함)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위반되며, 반복 재현성을 결여하고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고,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당 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31일 동 사건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위 거절사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심리하여 동 출원발명이 반복재현성이 없는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19조 1항 본문에 의거하여 특허될 수 없으며, 그 명세서도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년 7월 31일 원고의 동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나. 특허법원의 판결요지

- 특허법원에 따르면, 특허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변종식물의 발명도 반복재현성을 가져야만 발명이 완성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로 출원발명의 특징을 가진 돌연변이가 일어나 변종식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 그 변종을 자손 대까지 수립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두 반복재현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먼저 첫째 단계로 당업자가 육종소재를 사용하여 교배하는 교배친들의 개체 수, 교배과정, 교배에 의하여 얻어진 자손의 개체 수, 반복된 세대수, 재배조건, 변이개체를 선발하는 기준과 둘째 단계로 육종과정 (무성생식)을 반복하면 동일한 변종식물을 재현시킬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미의 변종식물인 출원발명은 반복재현성이 없으므로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32 특허심판원, 2001.7.31 선고, 2000원1335호, 거절사정 (특).

2.2. 상표

가. 농산물 상표: sk Sunkist³³

1) 사실관계

- 선키스트 그로우어그 인코포레이티드 (원고, 미국)는 지정상품 제31류³⁴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 (출원상표: 에스케이 선키스트 sk Sunkist)을 하였으나 특허청은 2001년 11월 20일 이 사건의 출원상표는 선 등록된 인용상표 (SK유통)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가 위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여 동 사건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이 유사한 표장으로 동종 상품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동 사건의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02년 5월 31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년 7월 3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동 심결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동일, 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특허청장은 2003년 1월 2일 대법원에 특허법원의 동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년 1월 28일 동 상고를 기각하였다.³⁵ 다음은 특허법원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2) 특허법원의 판결요지

- 특허1법원은 (i)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 여부, (ii) 동 사건의 출원상표 중 “sk” 및 인용상표 중 “SK”만을 분리하여 양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 판단할 수 있는 지 여부, (iii) 동 사건의 출원상표 중 “Sunkist”가 식별력이 없는 지 여부, (iv)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대비에 대하여 심리하였다.

33 특허법원 2002.12.13선고, 2002허4286 거절결정(상).

34 당근, 감자, 양배추, 상치, 토마토, 고추, 자두, 체리, 만다린 오렌지,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프루트, 탕헤르오렌지, 배, 사과, 감, 복숭아, 포도, 딸기, 멜론, 수박, 바나나, 살구, 파인애플.

35 대법원 2005.1.28선고, 2003후236 .

- 특허법원에 따르면, (i)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된 상표의 유사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부분 중 영문자 2자는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가질 정도로 특별히 도형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 (ii) 이 사건 출원상표 중 “sk” 및 인용상표 중 “SK”만을 분리하여 양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skSunkist”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SK”를 도형화한 도형 과 문자 SK유통 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 중 “sk”와 인용상표의 문자부분 중 “SK”는 모두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과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문자 두자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sk” 및 인용상표 중 “SK”만을 분리하여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할 수는 없다.
- (iii) 이 사건 출원상표 중 “Sunkist”가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중 “Sunkist”는 원고의 상호의 약칭으로서 이 사건 심결과 같이 ‘햇별에 잘 익은, 햇별을 잘 받은’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 (iv)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대비를 통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도형의 유무, 구성문자의 종류 및 글자수 등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다.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거나 식별력 있는 요부인 “Sunkist”에 의하여 선(썬)키스트 로 호칭된다. 그리고 인용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분리되어 호칭될 수 있는데, 문자부분은 “에스케이유통” 으로 호칭되지만, 도형부분은 문자 “SK”를 아주 특별한 형태로 도형화하고 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고 있어서 도형부분에만 의해서는 특별한 호칭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에스케이 부분의 호칭이 동일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음절

수 등이 상이하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썬)키스트 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이 전혀 다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다.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출원상표 “Sunkist”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인용상표와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다. 특허법원은 상기의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하였다.

나. 화훼류: Kardinal사건³⁶

1) 사실관계

- 베크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바하 운트 콤파니카게 (원고, 독일)는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를 피고로 2000년 5월 15일 동 사건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다.
- 원고가 등록한 상표인 Kardinal은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002류에 해당하고, 1995년 9월 18일 출원하여 1997년 3월 21일 등록되었다. 피고인 한국화훼협회는 동 사건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및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동시에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동 사건의 등록상표가 절화장미의 한 품목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2) 특허법원의 판결요지

- 특허법원은 동 사건에서 (i) 피고가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ii)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지 여부, (iii)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iv)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v)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³⁶ 특허법원 200.6.28 선고, 2000허3876등록무효 (상).

인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특허법원에 따르면, (i) 피고가 이해관계인인지에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화훼재배업자 또는 일정한 점포를 소유하고 화훼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정회원으로 하여 주로 회원 상호간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원고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1998년 2월 25일경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등록상표를 부착한 장미를 재배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사실, 이에 피고는 국내의 화훼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1998년 7월 28일 특허심판원에 그 명의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그 심판절차가 계속 중인 1998년 9월 15일에는 원고의 국내 대리인인 주식회사 코로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등록상표의 사용과 장미품종의 재배에 관한 장미 로얄티 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협정 제1조는 원고는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장미품종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품종을 포함한 12개 품종에 대해서는 이미 심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 및 특허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나 새로이 식재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정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한 인정사실에 근거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중지를 통보 받은 화훼재배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 할 수 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있다.
- 한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가 계속 중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로얄티 협정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취하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와 같이 새로이 심게 되는 장미 묘목에 대하여 특허료 (실제로는 상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를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합의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적법성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표권의 적법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ii)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 계에서 당해 업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의미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일 이전인 1995년 6월경부터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화훼협회보, 월

간 장미 등의 화훼관련 잡지의 시세표 등에 장미의 한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왔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에서도 절화장미 중 하나의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온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년 2월 21일 현재 장미를 취급하는 당해업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미꽃이나 장미묘목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있는 일반적인 명칭 즉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iii)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 함은 원래는 적법한 상표였으나 일반수요자나 동종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게을리 한 결과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가 1995년 6월 무렵부터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화훼협회보, 월간 장미 등의 화훼관련 잡지의 시세표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왔으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절화장미 품종의 명칭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이래 정명헌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코로사를 한국 내 대리점으로 선정하고 1998년부터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장미를 생산, 판매하는 화훼업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를 부착한 장미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상표관리를 철저히 하였다. 그 결과 1998년 5월 이후부터는 양재동 화훼시장 등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호칭으로 불리던 장미 품종의 이름을 여명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였고 피고와의 사이에는 1998년 9월 15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표 사용에 따른 로열티협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00여명에 달하는 개별 화훼업자들과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로열티협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상표관리 실태와 피고 및 화훼업자들과의 합의 내용 및 국내 화훼업계에서 원고의 상표에 의하여 호칭되던 장미의 품종의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어 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1995년 6월경부터 일부 거래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등록사정일인 1997년 2월 21일 현재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관용표장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iv)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외국어로 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거래계나 일반 수요자에 의하여 그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경우

에도 간접적, 암시적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등록상표인 **Kardinal**은 영어의 **cardinal**에 해당하는 독일어로서 추기경 홍관조 등의 뜻과 함께 진홍색 등의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서의 독일어나 영어의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 계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영어의 **cardinal**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진홍색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v)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인 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나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널리 사용되고 또 사용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을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상표 등록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특허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동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허법원은 동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다. 화훼류: Red Sandra사건³⁷

1) 사실관계

- 웨 코르테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바하 운트 콤파니카게 (원고, 독일)는 사단법인 한국화훼협회를 피고로 2000년 5월 15일 동 사건의 상표등록 (**Red Sandra**)을 무효로 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가 등록한 상표인 **Red Sandra**는 지정상품인 상품류 구분 제002류에 해당하고, 1995년 7월 5일 출원하여 1997년 3월 3일 등록되었다. 피고인 한국화훼협회는 동 사건의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및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동시에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도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37 특허법원 2001.6.28 선고 2000허3869 등록무효 (상),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후 2283 등록무효 (상).

제1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동 사건의 등록상표가 절화장미의 한 품목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 된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나무, 화초 등 “장미” 이외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을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동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하였다.

- 특허법원은 등록상표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수요자 기만상표인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상표가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상표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국화훼협회는 특허법원의 동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02년 11월 26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동 사건을 환송하였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동 사건은 앞서 검토한 **Kardinal** 사건과 원고 (벤키 코르테스 죄네 로젠술렌 게엠바하 운트 콤파니카게)가 동일하며, 같은 날 특허법원에 해당 사건의 각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특허법원이 검토한 사항 중 (i) 피고가 이해관계인인 지 여부, (ii)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지 여부, (iii)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iv)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 지 여부, (v)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인 지 여부는 **Kardinal** 사건과 검토 내용 및 판결요지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vi)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상표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특허법원에 따르면, (i) 피고가 이해관계인인 지 여부와 관련하여, **Kardinal**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 한국화훼협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중지를 통보 받은 화훼재배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과 관련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하였다.
- (ii)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약칭, 속칭 기타의 명칭을 의미한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Red Sandra**”가 그 출원일 이전인 1993년 2월 무렵부터 피고가 발행하

는 한국화훼협회보, 월간 장미 등의 화훼관련잡지의 시세표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왔고 국내에서 간행된 일부 논문에서도 절화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절화장미의 한 품종의 명칭으로 사용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년 1월 29일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를 취급하는 당해업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미꽃이나 장미묘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있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iii)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 함은 원래는 적법한 상표였으나 일반수요자나 동종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관리를 게을리 한 결과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의미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인 "Red Sandra"가 1993년 2월 무렵부터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화훼협회보, 월간 장미 등의 화훼관련잡지의 시세표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왔고 국내에서 간행된 일부 논문에서도 절화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에서도 절화장미의 한 품종의 명칭으로 사용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이래 정명현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코로사를 한국 내 대리점으로 선정하고 1998년부터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장미를 생산, 판매하는 화훼업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원고의 상표를 부착한 장미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상표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그 결과 1998년 5월 이후부터는 양재동 화훼시장 등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호칭으로 불리던 장미 품종의 이름을 정열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와의 사이에는 1998년 9월 15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표 사용에 따른 로얄티 협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100여명에 달하는 개별 화훼업자들과의 사이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한 로얄티 협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원고의 상표관리 실태와 피고 및 화훼업자들과의 합의 내용 및 국내 화훼업계에서 원고의 상표에 의하여 호칭되던 장미의 품종의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어 부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1998년 5월 이전까지 화훼 거래계에서 장미의 한 품종을 의미하는 명칭으로 호칭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록사정일인 1997년 1월 29일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하여 장미꽃 등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표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iv)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이라 함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붉은 색을 의미하는 "Red" 와 여자의 이름인 "Alexandria"의 약칭인 "Sandra"가 결합된 상표로서 비록 "Red" 가 붉은 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의 색상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부분인 "Sandra"는 식별력이 인정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 (v)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인 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나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하여 널리 사용되고 또 사용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을 시키는 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상표 등록이 본 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고 보았다.
- (vi)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 기만상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인 장미꽃에 관한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나무, 화초 등 장미 이외의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을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특허법원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 대법원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Red Sandra"가 그 출원일 이전인 1993년 2월 무렵부터 피고가 발행하는 한국화훼협회보, 월간 장미 등의 화훼관련 잡지의 시세표 등에서 장미의 한 품종 명칭으로 사용되어왔고, 국내에서 간행된 일부 논문에서도 절화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화훼공판장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절화장미의 한 품종의 명칭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년 1월 29일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를

취급하는 당해 업자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장미꽃이나 장미묘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품종의 명칭으로 하는 장미는 우리나라에 1987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1992년 11월경 서울 ○○구 ○○동 화훼공판장에서 경매된 것을 비롯하여 화훼업자들에 의하여 재배되는 절화장미 중 거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국내에 널리 보급되었고, 화훼거래업계를 대표하는 한국화훼협회, 화훼공판장, 화훼관련 잡지, 논문 등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장미의 한 품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옴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일인 1997년 1월 29일경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 즉, 그 상품의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수요자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가 아니라 장미의 한 품종의 일반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그런 이상 상표등록사정일 이후의 상표관리실태는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라. 유아용 농산물 이유식: CLINICALLY PROVEN MILDNESS사건³⁸

1) 사실관계

- 존슨 앤드 존슨 (원고, 미국)은 유아용 농산물 이유식을 지정상품으로 1994년 6월 29일 클리니컬리 프루븐 (CLINICALLY PROVEN)³⁹과 클리니컬리 마일드니 프루븐 (CLINICALLY MILDNESS PROVEN)의 상표⁴⁰를 출원 하였으나 특허청은 1995년 7월 27일 동 상표들에

38 대법원 1997.9.12선고 97후150 거절사정(상).

39 출원번호 4019940025739 (1994.6.29)

대하여 등록 거절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1995년 9월 25일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원 사정의 파기를 청구하는 심판을 요청하였고, 항고심판소는 동 출원된 상표들에 대한 병합심리를 하여, 1996년 12월 12일 동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⁴¹ 원고는 항고심판소의 동 심결에 대하여 1997년 1월 27일 대법원에 거절결정불복의 상고를 하였다.

- 원고는 1994년 12월 27일 존슨즈베이비클리니컬리마일드니스프루브으로 상표출원⁴²을 다시 하였으나 1995년 12월 18일 동 상표도 등록이 거절되었다. 동 결정에 대하여 특허청의 항고심판소에 1996년 1월 9일 원 사정을 파기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항고심판소는 1997년 7월 30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동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1997년 9월 10일 항고심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8년 9월 11일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음에서는 동 상표의 최초 출원 관련 사건의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대법원의 판결요지

- 원심심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출원상표⁴³ CLINICALLY(클리니컬리) 와 PROVEN(프루브)이 상하로 원형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고 중앙의 리본 형태의 도형에 MILDNESS (마일드니스)가 표현되어 있는 결합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2류의 유아용 농산물 이유식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CLINICALLY PROVEN (클리니컬리 프루브)은 임상적으로 증명된, MILDNESS(마일드니스)는 부드러움의 뜻이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사용 수준에서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임상적으로 부드러움이 증명된 또는 임상적으로 증명된 부드러움 등의 뜻으로 직감할 수 있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임상적으로 부드러움이 증명되지 않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상고를 기각하였다.

40 출원번호 4019940025730 (1994.6.29)

41 항고심판소 1996.12.12, 1995항원2202, 2203 (병합) 심결.

42 출원번호 4019940051689호.

43 출원번호 25730호, 25735호.

마. 농업용 제초제: SPARK⁴⁴

1) 사실관계

- 파마시아 코포레이션 (원고, 미국)은 1994년 7월 30일 상품류 010 제초제, 제균제, 살충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SPARK 상표⁴⁵를 출원 하였다. 특허청은 1995년 9월 19일 동 상표의 등록거절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동 거절결정에 대하여 1995년 10월 9일 특허청의 항고심판소에 원 사정의 파기를 청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동 심판소는 1996년 11월 25일 동 청구를 기각하였다.⁴⁶ 항고심판소의 동 결정에 대하여 몬산토 캄파니 (상고인, 미국)는 원 판결을 파기하는 소를 1996년 12월 26일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과 동 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용 제초제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의 유사상품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유사성이 모두 인정됨을 이유로 1997년 9월 5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음은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대법원 판결요지

- 대법원에 따르면, 동 사건을 심리한 원심은 1994년 7월 30일 제10류의 농업용 제초제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 “SPARK”와 그보다 선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스파쿨”⁴⁷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 것이어서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불꽃, 섬광”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인용상표는 조어(造語)상표로서 아무런 의미가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서로 대비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스파크”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 “스파쿨”과는 음절수가 같고 중요하게 청음 되는 첫 부분 두 음절이 동일한데다가 셋째 음절이 “크”와 “쿨”로 극히 유사하게 청음 되므로 칭호 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양 상표가 다 함께 동종·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4 대법원 1997.9.5 선고 96후2470 거절사정 (상)

45 출원번호 4019940030498 (1994.7.30)

46 항고심판소 1996항원2343 (1996.11.25)

47 특허청 1990. 9. 17. 등록 제200693호, 지정상품 : 제10류의 방부제, 감각기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

- 농업용 제초제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의 유사상품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관용 약제, 호흡기관용 약제, 외피용 약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에서 제10류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상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바. 농약류: 세딜⁴⁸

1) 사실관계

- 스미도모 세이야쿠 가부시기가이샤 (원고, 일본)는 한글 ‘세딜’로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 시행규칙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이하 구 상품류 구분 이라 한다) 제10류에 속하는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로 하는 상표에 관하여 1997년 9월 4일 등록출원을 하였는데, 특허청은 본원상표가 한글 ‘새들’로 구성되고 지정상품이 구 상품류 구분 제10류에 속하는 살충제, 살균제 등 10개 상품으로 하는 등록번호 제218232호 상표⁴⁹와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1998년 11월 9일 특허심판원에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1999년 5월 11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1999년 6월 15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양 상표가 다같이 한글자 두 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들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는 첫 글자에서는 “와”라는 차이와 두 번째 글자에서는 중성인 “와”의 차이에 불과하여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철자가 유사하여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견하여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아무런 뜻을 도출할 수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대비할 수 없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는 한글표기대로 호칭될 것이나 양 상표는 모음인 와, 와 의 차이에 불과하여 청감되는 음색이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과 칭호가 유사한 상표라 하겠다.
- 다음으로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

48 특허법원 1999.10.1 선고 99허4767 거절사정 (상).

49 출원일 1990. 6. 25., 등록일 1991. 8. 5

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제초제, 식물육성제, 발아억제제”는 다같이 구상품 구분 제10류 제4군에 속하고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유사한 상품이라 하겠다. 따라서 인용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심결하였다.

2) 특허법원의 판결요지

- 특허법원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상표는 모두 한글로만 구성된 문자 상표들이고, 그 구성에 있어서 특별히 도형화 되었다거나 문자 이외의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없는 상표들이므로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문자에 의해서만 인식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먼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각 한글 2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첫 글자는 초성 자음과 중성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 글자는 초성 자음, 중성 모음, 종성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첫 글자에서는 초성인 ㅅ이 동일하고 중성인 모음은 ㅐ와 ㅑ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 모음들은 동일한 자음과 결합될 경우 서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인식되어진다. 두 번째 글자도 초성 ㄷ과 ㄹ이 동일하고 중성인 ㅓ와 ㅕ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양 상표는 외관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함을 부정하기 어렵다. 칭호 면에서도 양 상표는 모음인 첫 글자의 ㅐ와 ㅑ, 두 번째 글자의 중성 모음인 ㅓ와 ㅕ의 차이에 불과하여 청감되는 음색이 극히 유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의 면에서는 본원상표가 조어이므로 서로 대비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칭호가 극히 유사한 상표들이다. 특히 상표는 거래과정을 통하여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기억에 의존하여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는 이격적 관찰이 보통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격적 관찰에 의할 경우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에 의할 때 상표의 칭호와 외관이 극히 유사한 상표들로서 양 상표가 실거래사회에서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염려

가 있는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와 관련하여, 구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류 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충제, 살균제, 방충제, 제초제, 식물육성제, 발아억제제는 모두 구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상품군 제4의 약제에 속하는 상품으로 농약과 일반 약품을 판매하는 자의 자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농업용 약품도 취급하는 것이 거래실정임에 비추어볼 때 양 지정상품은 상이한 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용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구 상표법 (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거절사정한 원 사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건 심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사. 농기계: GALLIGNANI⁵⁰

1) 사실관계

- 이기직 (피고)은 지정상품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 38류에 속하는 파종기계, 퇴비살포기, 곤포기, 헤이레이크, 목초예취기, 옥수수수확기, 목초포장기, 농업용프론트라우더, 쟁기, 사료절단기로 하는 GALLIGNANI 상표에 관하여 1997년 4월 22일 등록출원을 하여 1998년 6월 30일 등록사정을 받고, 1998년 8월 29일 등록번호 제419069호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 갈리그나니 에스. 피. 에이 (Gallignani S.P.A, 원고, 이탈리아)는 이 건 등록상표는 원고의 주지·저명한 표장과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1998년 12월 12일 이

⁵⁰ 특허법원 1999.11.25선고, 1999허6121, 등록무효 (상).

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1999년 5월 28일 이 건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1999년 8월 2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동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파종기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것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원고)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쌓아온 신용과 명성에 편승할 의도로 피청구인(피고)이 이 사건의 등록상표를 등록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저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청구인의 상표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그것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인 청구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이 건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제10호,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등록상표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⁵¹

2) 특허법원의 판결요지

- 특허법원에 따르면, 먼저 이 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그 상표의 등록사정 시점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탈리아에서 인용상표를 사용하여 1922년부터 소규모로 농업기구를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58년에는 전통적인 배일러의 생산을 시작하였는데, 곧 유럽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였으며, 그 후 1976년 라운드 배일러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 생산 범위를 확장하여 1997년경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등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인도, 이란 등 전세계 50여개국에 배일러(BALER) 및 포장기(WRAPPER) 등 농기계를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이

51 특허심판원 1999.5.28선고, 1998당1770 등록무효 (상).

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7년 4월경 이탈리아를 비롯한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농기계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서 원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75년의 긴 전통을 통하여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주지상표라 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5월 30일경부터 1997년 7월 31일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소외 안성무역주식회사가 인용상표가 사용된 마초수확기 10대 및 우현고무바퀴 10개를, 소외 대동공업주식회사가 2회에 걸쳐 인용상표가 사용된 다모아 픽업 배일러 13대를, 소외 주식회사 성원이 인용상표가 사용된 픽업 배일러 6대를 각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2년여 동안 인용상표가 부착된 마초수확기 10대와 픽업 배일러 19대 및 약간의 부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등록상표의 등록사정시인 1998년 6월 30일경 국내의 농기계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다음으로 이 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용상표는 이 건 등록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7년 4월경 이탈리아를 비롯한 외국 여러 나라에서는 농기계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서 원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주지상표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이 아우구스토 칼레가띠 갈리그나니(Augusto Callegati Gallignani)임에 비추어 인용상표는 원고 회사 설립자의 성(姓)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소외 성원정밀공업주식회사의 마케팅 팀장(Marketing Manager)으로 근무하면서 1997년 4월 8일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배일러를 수입하겠다는 취지와 원고가 생산하는 라운드 배일러에 대한 카타로그와 가격리스트를 보내달라는 취지 등이 기재된 서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서신을 보낸지 보름만인 1997년 4월 22일 이 건 등록상표를 등록출원 하였고, 이 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글자체만 약간 다를 뿐 철자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건 등록상표를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인용상표를 본 따서 만들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상표는 이른바 모방상표라 할 것이다.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서 말하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은, 법률의 전 체계를 지배하는 이념으로서의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를 상표법상의 상표 불 등록 사유라는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규정에서 선량한 풍속 이라 함은 사회 일반적인 도덕관념인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률을, 사회 질서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질서 내지 일반적 이익을 각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사회의 거래실정 및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 어떤 행위가 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의 유무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그 행위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에 위반된다고 판단케 하는 기초사정의 존재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내지 풍속양속은 사회공공의 이익, 일반사회의 질서로서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거래질서 및 국제 신뢰질서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상표법 질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불법행위법의 질서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국내 또는 외국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고 또 상표권자의 선전, 광고 및 다년간의 지속적인 사용을 통하여 영업상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적 가치 (good will)가 축적된 상표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 이는 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의 무형적 가치에 무임승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의 정의감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상품유통질서 또는 경업 (競業)질서의 공정을 피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도 반한다. 특히 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가 외국인의 것인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국경 없는 무역거래로 국제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의 국제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방상표의 출원을 허용할 경우 여러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하여 국제상거래질서를 훼손하게 할 염려가 있음은 물론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려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상표법이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서와 같이 모인 출원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미등록 미주지의 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이를 선원주의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모방상표의 출원은 그 상표출원자가 출원 당시에 이미 선사용자의 가치 있는 점유상태의 존재를 알면서 그 모방의 대상이 되는 상표에 축적된 무형적 가치에 무임승차하여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경쟁질서는 물론 일반사회의 질서로서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거래질서 및 국제신뢰질서에도 반하므로, 이와 같이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출원한 모방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

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외국에서 농기계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서 원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적 가치가 축적된 주지상표인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이 건 등록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건 등록상표를 등록출원하기 며칠 전까지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농기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점과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모두 농기계류로서 인용상표가 사용되는 배일러, 포장기 등과 유사한 상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피고에게 부정경쟁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므로 이 건 등록상표는 주지상표인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인용상표가 가지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무임승차하려는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등록 출원되어 상표권 설정등록이 된 상표라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임에도 상표등록이 되었다 할 것이니,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 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3. 시사점

-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분쟁사례는 외국인이 일방 당사자인 농업분야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를 의미하며,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한정된다. 분쟁은 식물특허와 상표 분쟁으로 농업과 관련하여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영업기밀 관련 분쟁은 현재까지 없었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과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제도와 국내법원, 특히 지적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효력범위에 관하여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제기된 외국과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분쟁사례는 총 8건의 분쟁사례가 검토 되었는데, 식물특허 (1건)의 경우 장미식물의 특허와 관련되었으며, 상표분쟁의 경우, 농산품 (1건), 화훼류 (2건), 유아용 이유식 (1건), 농업용제초제 (1건), 농약류 (1건), 농기계 (1건)에 관한 것이었다. 동 분쟁사건의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을 보면, 미국 (3건), 독일 (3건), 일본 (1건), 이태리 (1건)로 구성되어 분쟁당사자인 외국인의 국적이 주로 선진국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총 8건의 분쟁 중 특허, 상표출원의 거절결정과 같이 특허청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결정제심판이 5건⁵²이며,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한 당사자에 대한 분쟁심판인 당사자계

심판은 3건⁵³이다. 이들 8건의 사례는 동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중 대법원에 상고까지 간 경우는 총 4건⁵⁴이다. 총 8건의 분쟁사례 중 외국인이 원고 일방당사자로서 승소한 경우는 총 3건⁵⁵이다.

-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특허, 상표 등의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나 농업분야에서의 외국인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등을 통하여 더 많은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농업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며,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정책이 필요하다.

52 플로리다분다 장미식물 No.308 (특허)사건, sk Sunkist사건 (과수, 채소류), CIINICALLY PROVEN MILDNESS 사건 (유아용 농산물 이유식), SPARK사건 (농업용 제초제), 세틸사건 (농약류).

53 Kardinal사건 (화훼류), Red Sandra사건 (화훼류), GALLIGNANI사건 (농기계).

54 sk Sunkist사건 (과수, 채소류), Red Sandra사건 (화훼류), CIINICALLY PROVEN MILDNESS 사건 (유아용 농산물 이유식), SPARK (농업용 제초제).

55 sk Sunkist사건, Kardinal사건, GALLIGNANI사건.

Ⅵ. 지적재산의 보호와 개발 전략

1. 농업부문 지적재산의 개발 방향

- 지식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과거 주된 생산요소이었던 노동이나 자본보다는 지식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지식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인류는 각종 식물, 동물, 미생물 등 각종 유전자원을 탐색, 확보, 개발하여 실생활에 이용해오고 있다. 생명공학 연구의 확산과 기술혁신을 통해 식량문제, 농업, 의약품개발, 환경 등 많은 분야에서 산업적 응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각 국의 미래는 유전자원의 확보와 연구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막대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는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세계 각 국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창작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그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기구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지적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활동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의 창출, 산업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지적재산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적재산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그것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농업관련 지적재산 전략을 수립하고 지적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전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업부문의 지적재산에는 식물신품종의 개발에서부터 기술, 유전자원, 상표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 앞으로 지적재산 전략을 추진하고 지적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해 가기 위해서는 농업 관련자가 기술과 노하우를 지식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지적 창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있는 정보인 지적재산이 관련 농기업의 수익이나 농가 또는 지역의 소득원으로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구규모의 환경문제, 온난화의 진행, 인구증가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식량수급 불안, 에너지 불안과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신기술과 발명, 연구와 같은 지적 창조활동이 필요

하다. 농업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의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일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림수산업이 앞으로도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있는 정보의 창출에 의해 차별화를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적극적·전략적인 활용은 국제경쟁력 강화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인식하에 농업부문의 지적재산전략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 보호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가치 있는 무형자산인 지적재산의 창조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생산·판매와 지구온난화, 에너지·식량수요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작물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역활성화 등으로의 연결을 이 전략의 목표로 한다. 또한 창조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관점이나 지역,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그 확보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농업부문 지적재산의 개발 및 보호 전략

2.1. 지적재산의 보호 강화 전략

가. 식물신품종의 보호 강화

- 식물신품종의 육성자권이 지적재산권으로 정착되고 그 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육성자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를 막고 동시에 사후 구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품종등록표시 의무화, 허위 품종등록표시 금지, 민사상 침해소송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우수한 신품종을 육성하더라도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육성자권자의 요청에 따라 육성자권의 권리 및 행사를 대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를 위한 인재육성을 추진한다.
- 육성자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식물의 품종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품종을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 DNA에 의한 품종식별기술을 개발한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DNA 품종식별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이 인증된 식별기술에 대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외의 연구기관을 포함하

여, DNA 품종식별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나 연구기관간의 정보 공유화를 추진한다. 국립종자원에서 모든 등록품종에 대해 DNA의 추출이 가능한 식물체 일부의 보존이나 품종의 식별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의 배치 등 권리침해에 신속·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식물신품종의 출원건수의 증가에 따른 심사관의 증원, 재배실험체제의 강화, 심사등록업무의 신속화를 위한 종합적 전자시스템의 구축 등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재배실험방법 및 심사기준의 조화, 심사의 국제표준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제적인 심사의 효율화·신속화를 추진한다.

나.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 보호

- 해외에 진출하는 식품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와 같이 모방품 피해나 상표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방품·사용권침해대책으로서는 침해발생국·지역당국과의 교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조사단 파견을 비롯하여 민간단체가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더 나아가 기업 자체적으로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해외로의 지적재산 침해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지침을 마련한다.

2.2. 지적재산의 개발 및 활용 촉진

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수요 창출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식품·신소재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실용화연구, 원료가 되는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공급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시설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와 기업이 연대하면서 실용화·사업화를 추진한다.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작물의 저비용 재배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앞으로 그 성과를 활용하도록 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생물연구 분야에서는 품종 육성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유전자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유용한 유전자의 해명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생산품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유전자 해명을 촉진하고 특허에 의해 적절하게 확보한 후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전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유전자의 기능규명과 활용의 연구 및 특허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특허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나. 농업인의 현장기술·노하우 발굴 및 활용 촉진

-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인의 노력에 의해 많은 기술이나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그 대부분은 권리화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속에 공유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의 전략적 작물 재배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농업에의 기업참여가 늘어남으로써 농업기술의 특허화 움직임이 진행되는 한편 생산현장에서의 의식차이에 의한 의도치 않은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관련 종사자가 농업기술이나 노하우를 지적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가 또는 지역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략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다. 농가·기업의 기술·노하우에 대해 인센티브와 보상

- 지적재산의 취급에 관한 지식 보급이나 신기술·신품종, 지역브랜드 등의 새로운 지적재산 창조의 지원을 통해 촉진되는 농가, 기업의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환기시키기 위한 계획을 검토한다.

2.3. 지역자원의 활용

- 농촌의 경관, 전통문화의 가치 있는 지역자원을 재산으로 이해하고 농업이나 지역의 활동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지역활성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서의 농산물이나 식품을 발굴·개발하고 상품화·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역브랜드화는 농수산물 생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가공, 유통, 마케팅의 각 단계에서 관련자가 제휴·협동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지만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식품의 지역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의 노력에 대해 상담이나 마케팅전략 수립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앞으로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농산물, 식품, 종자 등의 상품을 개발·생산하고 생산기술과 같은 지적재산을 보호하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특히 육종 기술 등 높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식물신품종을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해 가는 것은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량품종 개발을 통해 국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지역을 중심으로 식물신품종 육종, 신기술의 개발, 권리화, 권리의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들 신품종, 기술 등의 지적재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산업전략 수립이나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해야 한다.

- 농업부문의 지적재산대책으로서는 우선 기술이나 연구 등의 무형의 가치를 지적재산으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전략을 수립하고, 각 분야에서 지적재산에 능통한 인재를 육성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산업전략 수립이나 지역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실증실험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2.4.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 보존자원에 대한 D/B화율은 7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15%에 불과하고 기관별로 D/B화된 유전자원의 공유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보존·관리와 보존 유전자원의 특성평가 강화 및 D/B화로 활용도를 제고 시켜야 한다.
- 보존 유전자원의 증식사업 추진과 보존 유전자원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 시키고, 재래종 유전자원의 주권확보를 위한 유전자원 DNA뱅크 구축을 통해 세계 5위권 품종개발 강국으로의 도약과 함께 재래종 유전자원의 자원주권 확립 및 국제 자원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체계는 국내외 유용한 유전자원의 정보를 분석하여 수집하고 보존하여 이를 소량 및 저활력 보존자원을 증식하고, 보존자원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특성평가기시스템을 통해 평가하며, 재래종 중심으로 중요자원의 DNA뱅크를 구축한다. 이를 D/B화하여 수요자들이 유전자원 정보 검색 및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은 품종개발 등에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관별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관리자원의 범위 또한 현재 종자, 영양체, 미생물, 가축에서 DNA, 추출물, 화분 등 특수자원까지 확대한다.
- 유전자원에 대한 분야별 특성의 D/B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통합하고 장기저장시설, 연구인력, 관리시설 등 유전자원 관리 인프라를 확충한다.
- 특성평가기술을 현 농업형질중심에서 특수형질 및 분자생물학적 특성까지 확대하여 G7 국가수준으로 육성한다.
- 재래종의 유전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 토종유전자원 다수 확보하고 있을 것으

로 파악되는 일본, 독일, 미국 등의 나라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한다.

2.5. 국내 지적재산권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 국내에서 검토대상이 된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분쟁사례는 주로 식물특허와 상표 분쟁으로 품종보호, 지리적표시, 영업기밀 관련 분쟁은 현재까지 없었다. 식물특허의 경우 장미식물의 특허와 관련되었으며, 상표분쟁의 경우 농산품, 화훼류, 유아용 이유식, 농업용제초제, 농약류, 농기계에 관한 것이었다. 동 분쟁사건의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을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이태리로 구성되어 분쟁당사자인 외국인의 국적이 주로 선진국에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총 8건의 분쟁 중 특허, 상표출원의 거절결정과 같이 특허청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결정계심판이 5건 이며, 이미 설정된 권리에 관한 당사자에 대한 분쟁심판인 당사자계심판은 3건 이었다. 이들 8건의 사례는 동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이 중 대법원에 상고까지 간 경우는 총 4건 이었다. 총 8건의 분쟁사례 중 외국인이 원고 일방당사자로서 승소한 경우는 총 3건 이었다.
-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특허, 상표 등의 분야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나 농업분야에서의 외국인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농업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며,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정책이 필요하다.

3. 농업부문 지적재산 관련 대책 및 제도 정비

3.1. 품종보호제도 개선 대책

-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주곡자급을 위한 쌀 생산 확대에 맞추어져 있어 품종육성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과 체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종합적인 중·장기 종자 정책수립, 관련기관간의 역할분담과 기능 조정, 예산확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각종 연구개발과 시설 및 자금지원 등이 종자분야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지원되지 않아 지원 효과가 낮다.

- 품종육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간의 기능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중복연구 또는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품종개발에 있어 상호간에 협력자가 아닌 상호 경쟁자로 인식하여 품종개발 정보 및 유전자원의 교환 등 협조체제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부차원의 품종육성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자금 등의 지원금액이 타 농업분야의 지원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시에도 종자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지 않아 효과가 낮다. 우수한 육종기술을 갖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육종에 전념할 수 없었던 개인 또는 소규모 민간종자회사들은 까다로운 절차나 연구계획서 작성 미숙 등으로 품종보호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거나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식물 유전자원이 품종육성의 소재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특성평가가 완료된 자원의 특성정보를 D/B로 구축하는 등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유전자원 정보화 핵심적 과제는 육종소재로 유전자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목표하는 형질을 구비한 자원을 관리기관의 D/B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분양받아 육종에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개인 또는 소규모 종자회사들도 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종기술이 우수하고 산업화(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기간도 종전 보다 장기적으로 연장해야 하고 지원금액 또한 인상해야 할 것이다.

3.2. 상표활성화 대책

- 상표권은 선원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상표등록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등록 시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상표는 창작물이 아닌 사용의 선택이기에 선 등록자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이다(윤영수외, 2006). 따라서 농산물 등록상표의 도용과 허위표시에 대하여 보호를 받기 위한 상표등록이 필요하다. 상표등록으로 상표 도용이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형사상 구제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법적 등록과 함께 의장등록이나 품질인증제도, 지리적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등 유사 제도와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 둘째,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상표의 개발이다. 현재 수많은 농산물 브랜드가 난립하는 가운데 농가나 생산자단체들이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였더라도 소비자의 관심과 신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일반농산물보다 품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독창적이고 해당 농산물의 특징을 한눈에 전달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오랜 기간 기억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야 한다. 개발에 있어서 발음과 기억의 용이성 어감의 친숙성 등이 중요하며,

글자 수는 상품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한 형태가 바람직하다.

- 셋째, 사회전반에 걸쳐 브랜드경영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상표권의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일반 및 기업체에서의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는 크게 제고되어 전문 인력의 채용과 직종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에도 법률 전문가를 육성하고, 영입하여 고용창출의 효과와 농산물 등록상표의 도용 피해를 방지하고, 우수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 넷째, 철저한 사후 관리이다. 매년 농축산물 브랜드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는 드문 실정이다. 유명 농산물브랜드는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 상표를 바꾸기도 하고, 끊임없는 홍보와 관리를 통하여 이룩된 것들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한 국내농산물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심벌위주의 브랜드개발을 지양하고, 수많은 농산물 브랜드들이 일류 유명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해외에서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3.3. 지리적표시제도의 활성화 대책

가. 지리적표시제도의 일원화

- 현재 지리적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의해 등록할 수 있다. 동일한 생산자단체의 이중등록이나 양 제도에 따른 등록이 상이한 생산자단체에게 각각 별도의 동일한 지리적표시가 부여될 경우 문제 해결과 양 제도의 병존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지리적표시 일원화 추진이 필요하다.
-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관련한 제도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와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의 두 제도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리적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소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난립하고 있는 지리적표시를 포함한 상표는 일반 상표와 달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한 품질 수준을 가진 제품만 지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심사절차 및 운영방법이 지리적표시제의 정의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해야 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제3자가 당해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지리적표시를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다. 상표법에 의한 생산품의 품질유지와 정책적 지원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육성 정책 강화를 위해 관리 부처를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
- 농산물 수입자유화 및 중국으로부터의 경쟁을 고려할 때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국내 농산물 품질관리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을 통한 부분적 보호, 부정경쟁법을 통한 간접적인 보호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직접적인 보호가 유리하다.
- 현재 지리적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살려 새로운 독립법으로 지리적표시법(안)을 제정한다. 새로운 독립법에는 지리적표시의 정의,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심의방법, 운영방법, 사후적 지리적표시품 관리방안, 지리적표시권의 권리 보호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다.

나.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 방안

-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지리적표시 등록품을 선정하여 지리적표시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홍보비를 지원한다. 농식품 박람회, 판매전 등 소비촉진 행사시 지리적표시 특산품 전시홍보지원이나 지자체,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세운다.

VII. 적 요

- 세계 각 국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그 창작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그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기구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WTO/TRIPs**에서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발명, 저작·창작 등 지적 성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TRIPs**는 지적재산권을 크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을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으로 세분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세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세분한다.
- 현재 국제적으로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립되어있는 것은 동식물에 대한 특허와 식물종자에 대한 품종보호이고,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것이다. 식물종자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이라는 특별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국제협약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새로운 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TRIPs**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식량농업기구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을 제정하여 2004년에 발효시켰다.
- 식물유전자원 중 농업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종자와 영양체를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다. 농업식물종자는 등록체계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의 저온저장시설에서 중장기 보존·관리되고 있다. 현재의 보존관리 용량은 154,000점이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주로 식물영양체 유전자원의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정됨. 유전자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탐사와 발굴, 수집에서부터 평가와 등록, 보존과 권리보호, 이용까지 담당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정부의 부처별로 각기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반도체 배치설계 등은 특허청에서 관할하고, 저작권과 문화콘텐츠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식물종자의 품종보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업과 관련해 지리적표시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성주참외를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 결과 21,596.5원/15kg로 base 가격의 144%로 나타난다. ‘성주참외’의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비자들은 15kg당 21,596.5원을 더 지불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표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는 5,607.1원/15kg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소비자들은 성주참외의 다른 속성에 비해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리적표시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시장차별화가 성주참외의 경우에는 달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 품종특허·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 평가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장미와 딸기를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장미 국내품종 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1주당 615.6~740.5원으로 추정되어, 외국품종의 가격이 1주당 2,500~3,000원임을 감안할 때 진선미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딸기 국내품종 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포트묘 기준으로 160.0~179.7원으로 추정되어, 외국품종의 가격이 200~300원(로열티는 포함하지 않았음)으로 설향에 대한 가치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국내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가격과 생산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생산농가들의 국내 품종 사용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 한국에서 농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는 식물특허 (1건)의 경우 장미식물의 특허와 관련되었으며, 상표분쟁(7건)의 경우 농산품, 화훼류, 유아용 이유식, 농업용제초제, 농약류, 농기계에 관한 것이었다. 분쟁사건의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을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로 구성되어 분쟁당사자인 외국인의 국적이 주로 선진국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외국인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농업 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며,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정책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일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림수산업이 앞으로도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있는 정보의 창출에 의해 차별화를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적극적·전략적인 활용은 국제경쟁력 강화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인식하에 농업부문의 지적재산전략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 보호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식품·신소재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실용화연구, 원료가 되는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공급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시설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와 기업이 연대하면서 실용화·사업화를 추진한다. 생물연구 분야에서는 품종 육성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유전자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유용한 유전자의 해명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생산품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유전자 해명을 촉진하고 특허에 의해 적절하게 확보한 후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전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유전자의 기능규명과 활용의 연구 및 특허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특허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 품종육성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과 체계적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종합적인 중·장기 종자 정책수립, 관련기관간의 역할분담과 기능조정, 예산확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각종 연구개발과 시설 및 자금지원 등이 종자분야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지원되지 않아 지원 효과가 낮다. 개인 또는 소규모 종자회사들도 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종기술이 우수하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기간도 종전 보다 장기적으로 연장해야 하고 지원금액 또한 인상해야 할 것이다.
-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인의 노력에 의해 많은 기술이나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대부분은 권리화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속에 공유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지역의 전략적 작물 재배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농업에의 기업참여가 늘어남으로써 농업기술의 특허화 움직임이 진행되는 한편 생산현장에서의 의식차이에 의한 의도치 않은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관련 종사자가 농업기술이나 노하우를 지적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가 또는 지역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략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 농촌의 경관과 전통문화를 가치 있는 지역 자산으로 이해하고 농업이나 지역의 활동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지역활성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서의 농산물이나 식품을 발굴·개발하고 상품화·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역브랜드화는 농수산물 생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가공, 유통, 마케팅의 각 단계에서 관련자가 제휴·협동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지만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식품의 지역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의 노력에 대해 상담이나 마케팅전략 수립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앞으로 해외시장을 목표로 한 농산물, 식품, 종자 등의 상품을 개발·생산하고 생산기술과

같은 지적재산을 보호하면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특히 육종 기술 등 높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식물신품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해 가는 것은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량품종 개발을 통해 국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지역에 의한 식물신품종 육종, 신기술의 개발, 권리화, 권리의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이들 신품종, 기술 등의 지적재산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산업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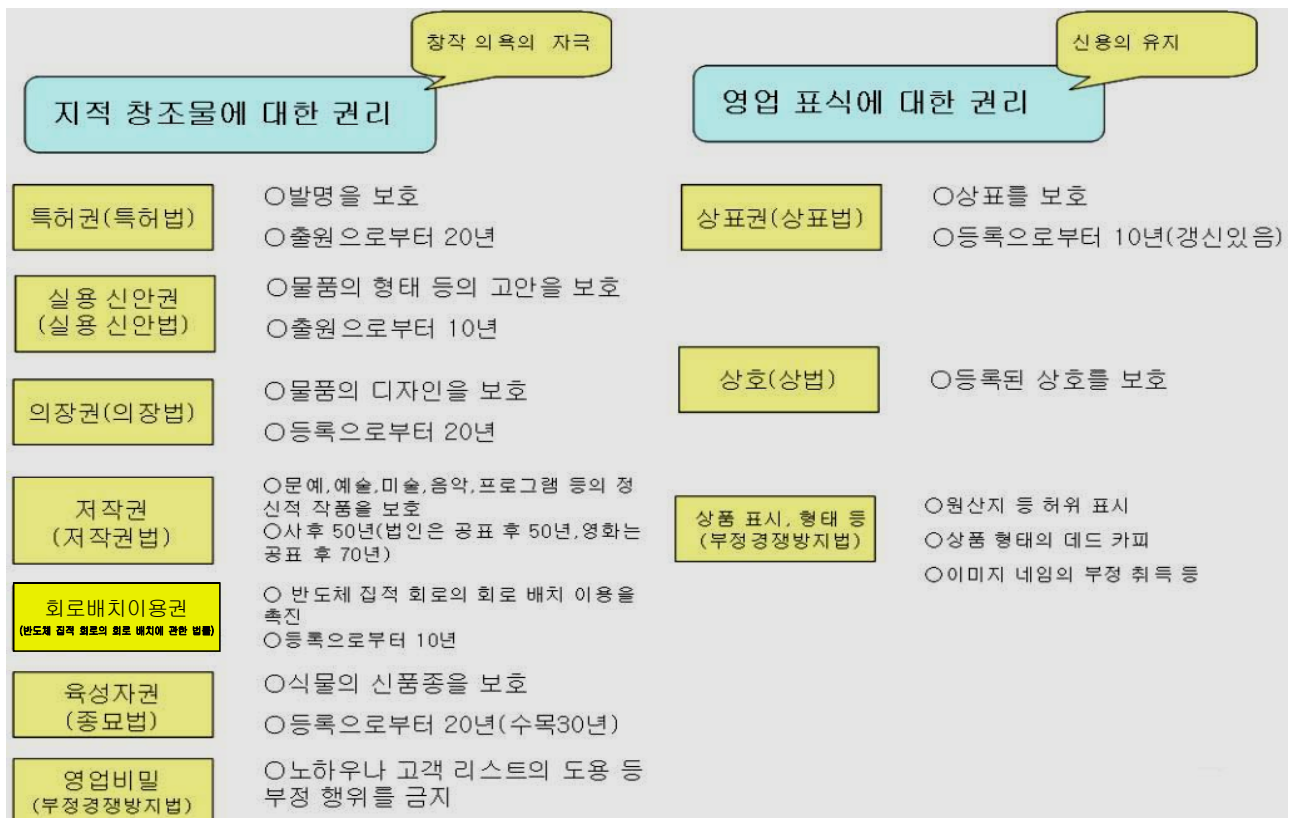
VIII. 부 록

1.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

1.1. 지적재산 및 지적재산권

- 사람의 지적인 창조 활동으로부터 생성된 창작물 등을 그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지적재산은 유체의 「물건」과는 다르고 「재산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새로운 발명과 기술의 축적에 따라 실현되어 왔으나 정보의 창조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기 위해 창조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를 인식하여 지적 창조 활동에 따라 생성된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구조의 정비 속에서 「지적재산」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 「지적재산권」은 과거에는 「공업 소유권」, 「무체 재산권」, 「지적 소유권」 등으로 불리어 왔으나 그 범위는 사회·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최근 사회가 성숙함에 따라 부가 가치의 중요성이 고조됨과 함께 IT에 의한 정보화 진전으로 「정보」가 더욱 더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되어 왔고 입체 상표 제도의 도입(1996년 상표법 개정) 등 「지적재산권」의 대상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 지적재산 기본법(2002년 법률 제 122호)(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지적재산」을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제작물 그 외의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발견 또는 해명이 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이고 상업상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 상표, 상호 그 외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표시하는 것 및 영업 비밀 그 외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 이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 신안권, 육성자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그 외의 지적재산에 관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과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그림 8-1 일본의 지적재산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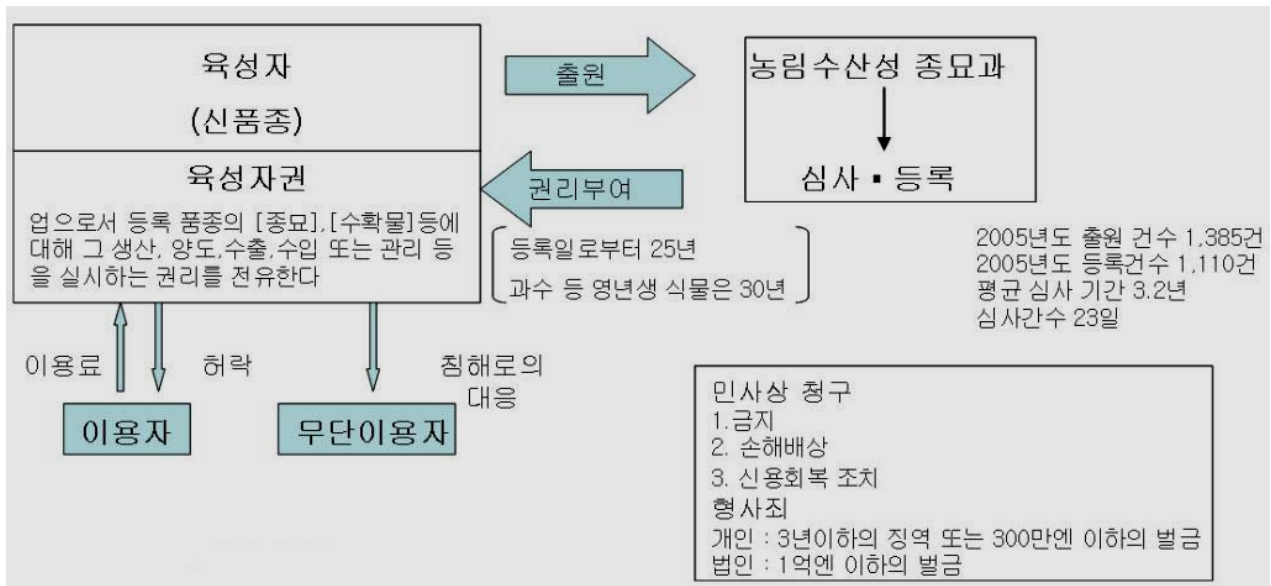
출처 : 특허청

1.2. 정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확립을 향한 대처

가. 지적재산 전략 본부의 발족

- 2002년 2월 고이즈미 내각 총리 대신은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본은 이미 특허권 등 세계 유수의 지적자산을 가지고 있다. 연구 활동과 창조 활동의 성과를 지적재산으로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고 일본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국가의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 전략 회의를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라고 표명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총리대신, 내각 대신 및 11명의 지식인을 구성원으로 한 지적재산 전략 회의가 설치되고 같은 해 7월에는 「지적재산 확립」의 실현을 향한 이치를 명확히 하는 「지적재산 전략 대망」이 정리되었다.
- 또한 이 대망을 기초로 2002년 12월에 지적재산 기본법이 제정되고 다음해 2003년 3월에는 지적재산 전략 본부가 설치되어 「지적재산 확립」을 목표로 시책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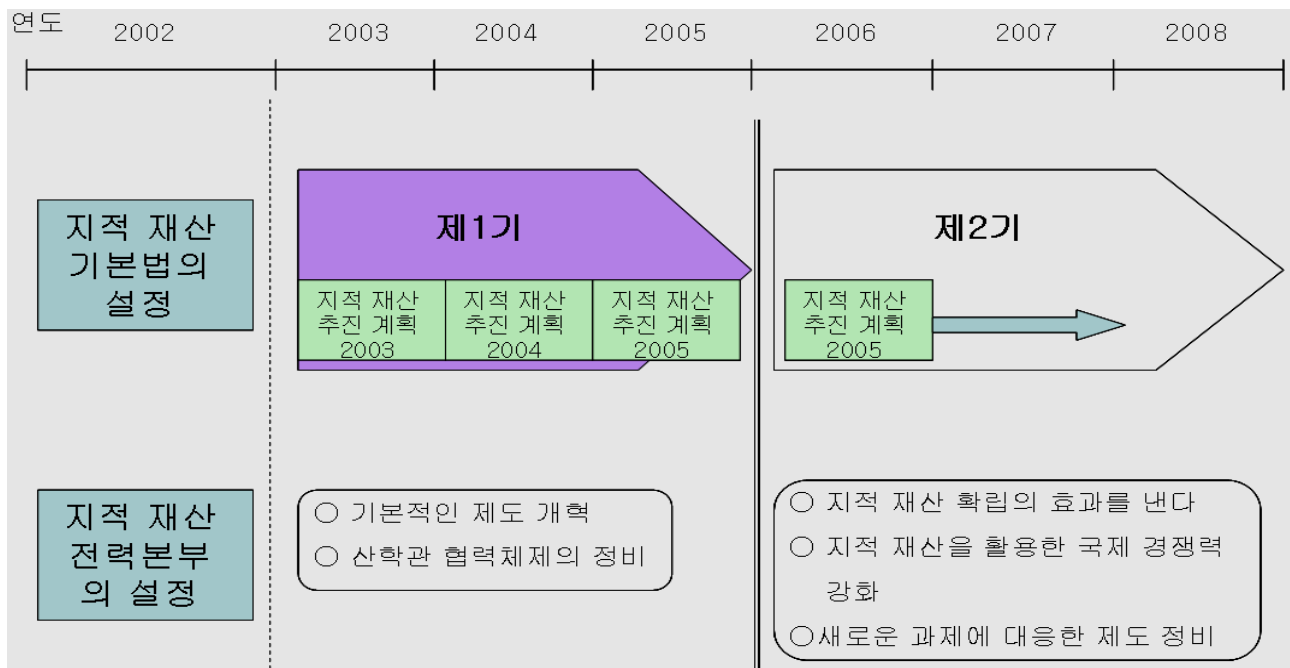
그림 8-2 일본의 지적 재산권 추진 계획 실시 체제



나. 지적재산 추진 설계에 따른 시책의 추진

- 지적재산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국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부문 등에서 질 높은 지적재산을 생산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권리로서 보호하여 경제활동으로서의 그 실용화·상품화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의 호순환(「지적 창조 사이클」)을 가속하는 것이 지적재산 전략의 축이 되고 있다.

그림 8-3 일본의 지적재산권의 확립 과정



출처 : 제 15회 지적 재산 전략 본부 회합 자료

표 8-1 일본의 지적재산권의 주요 시책

제1기 (2003~2005)	○ 기본적인 제도 개혁 · 2003년 3월 관세정률법의 일부 개정 · 2003년 6월 종묘법의 일부 개정 · 2004년 6월 지적재산 고등법원 설치법의 개정 · 2005년 6월 상표법의 일부 개정 · 2005년 6월 종묘법의 일부 개정 ○ 산학관의 협력 체제 정비 · 2003년 7월 43개 대학에 지적 본부를 설치 · 2006년 3월말 현재 TLO(기술 이전 기관)를 전국 47개소에 설치
제2기 (2006~2008)	○ 지적 재산 확립의 실효를 냄 ○ 지적 재산을 활용한 국제 경쟁력 강화 ○ 새로운 문제에 대응한 제도 정비

출처 : 농림수산성

- 지적 창조 사이클을 가속화 해야 하고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 또는 계획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 전략 본부 하에서 매년 지적재산 추진 계획이 책정되고 관계부처가 제휴하면서 정부 전체에서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이라고 하는 지적 창조 사이클의 활용화에 의한 국제 경쟁력 향상을 향한 총합적인 시책이 전개되고 있다.
-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개혁 제1기에는 상표법, 종묘법 개정 등 기본적인 제도 개혁 과 산학관의 협력 체제의 정비를 중심으로 대체해 왔으나 2006년도부터인 제2기는 「세계 최첨단 지적 확립을 목표로 한다」 라는 목표아래 지적재산 확립의 실효를 거두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대처하고 있다.

1.3.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에서의 지적재산

- 지금까지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지적재산이라는 것이 그다지 인식되지 않았으나 농림수산 · 식품산업은 경제의 글로벌화 전개에 따른 경쟁 심화와 농림수산업 인력 감소 · 고령화, 지구 규모에서의 온난화, 도상국에서의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에 따른 식료수급 불안 등의 새로

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산업에서 경쟁력 강화에 의한 향후 발전, 지역 활성화, 게다가 세계 식료 안정 공급과 풍요로운 생활을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요구를 만족하는 질 높은 지적재산을 창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렇게 지적재산 창조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판매,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와 식량수급의 고조 등에 대응한 작물의 개발을 실시하는 등에 의해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농림수산성 지적재산 전략」을 책정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산업에서의 「지적재산」이란 식물新品种(육성자권), 연구개발의 성과, 농림수산업 현장에서의 기술, 노하우(특허권, 실용 신안권), 농림수산·식품, 지역 브랜드 명칭(상표권) 등,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다. 또한 권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호 기간이 지난 종묘, 기술 등 신규성이 없는 기존의 종묘, 기술 등 동물의 품종에 더해 브랜드(지역 브랜드 등) 식문화·전통문화, 농촌 경관 등을 들 수 있다.
- 농림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지적재산」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내고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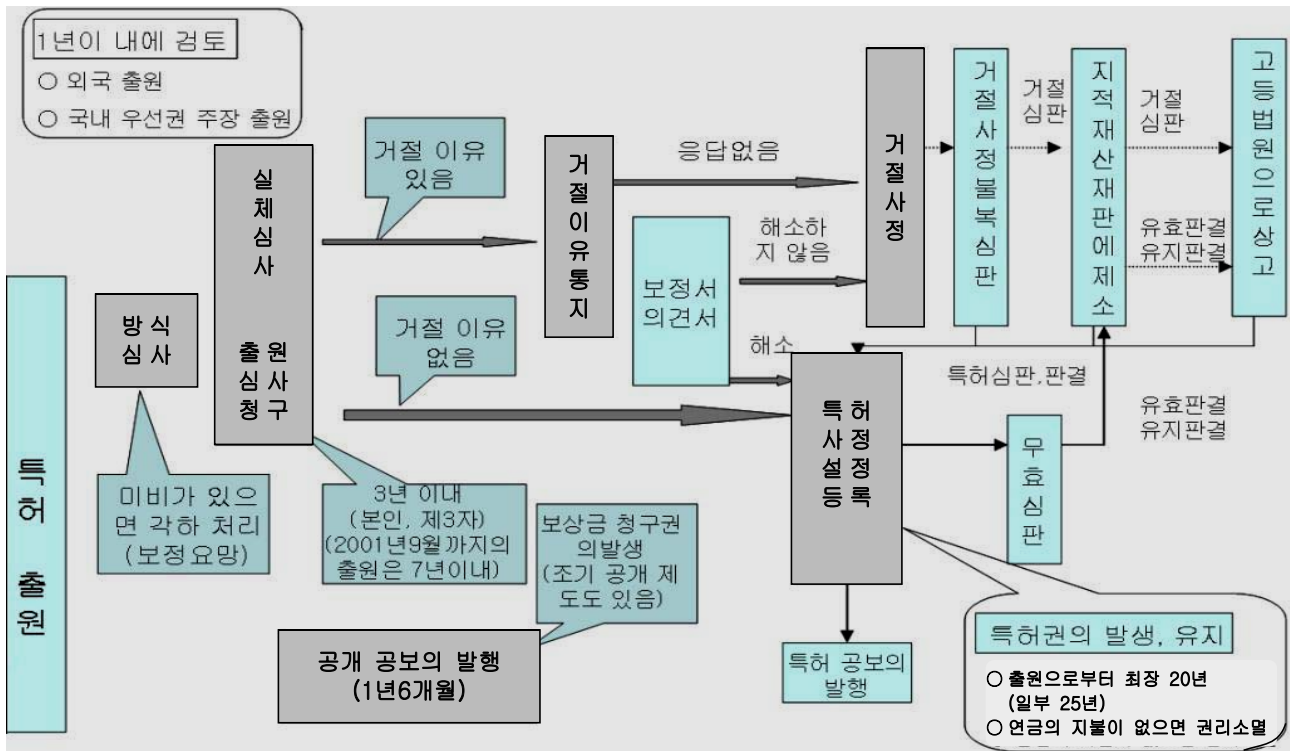
1.4. 지적재산권 제도의 개요

가. 특허권

-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기존의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이다.
- 발명자에게는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적인 권리를 주어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여 이용 기회를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인류 공통 재산으로 한다고 정하여 그것에 의해 기술 진척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특허법에 기초하여 주어진 특허권이란 일정 조건 하에서 발명을 특허청으로 출원한 후 20년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 ①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
 - ② 기술적 사상인 것
 - ③ 단순한 개발이 아닌 창작된 것
 - ④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개인적인 이용, 학술적·실험적인 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신규성이 있는 것(일본 또는 외국에서 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것, 공연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것)
 - ⑥ 진보성이 있는 것(쉽게 발명된 것이 아닐 것)
-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특허청에 출원하는 것, 출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실시하고 심사에 따라 신규성, 진보성 등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
- 출원한 발명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발명이라는 것을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 특허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특허원부에 등록되어 권리로서 성립하게 된다(그림 8-3). 출원한 발명은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특허 공보에 따라 공개된다. 그러나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특허는 소멸된다.
- 특허권 취득 시에는 법정 출원료, 심사 청구료 및 등록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 변리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특허법은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닌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가 부여된다.
- 스스로 발명을 실시한 경우 그 발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① 발명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고 그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 ② 다른 사람에게 특허 사용을 허락하고 특허 허락료를 받는다
 - ③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다. 등에 의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
- 이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 등의 권리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권리 침해가 없는지 항상 시장을 체크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실시하는 등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특허를 취득하지 않고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방법에는 다른 사람이 그 발명을 모방한 경우의 대처방법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허권의 침해라고 경은 받는 경우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림 8-4 일본의 특허 출원으로부터 취득까지의 흐름



-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경영전략, 발명의 내용, 효과, 특허취득·유지에 필요한 비용, 예상되는 이익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된다.
- 노하우, 고객 명부, 매뉴얼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정 경쟁 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면 침해 행위에 대해 침해 행위 금지나 손해 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 영업 비밀로 보호를 받으려면 ① 비밀 관리성, ② 유효성, ③ 비공지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비밀관리성이란 열쇠, 비밀번호 등에 의해 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과 비밀 정보인 맛의 표시를 하는 것에 의해 부정 행위자의 신분에 대응하여 객관적으로 비밀로서 관리 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 유효성이란 해당 정보가 객관적으로 사업 활동에 이용되어 경비의 절감, 경영 효율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현실에서 이용되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설계도, 제조 노하우, 고객 명부, 판매 매뉴얼 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 비공지성이란 보유자의 관리 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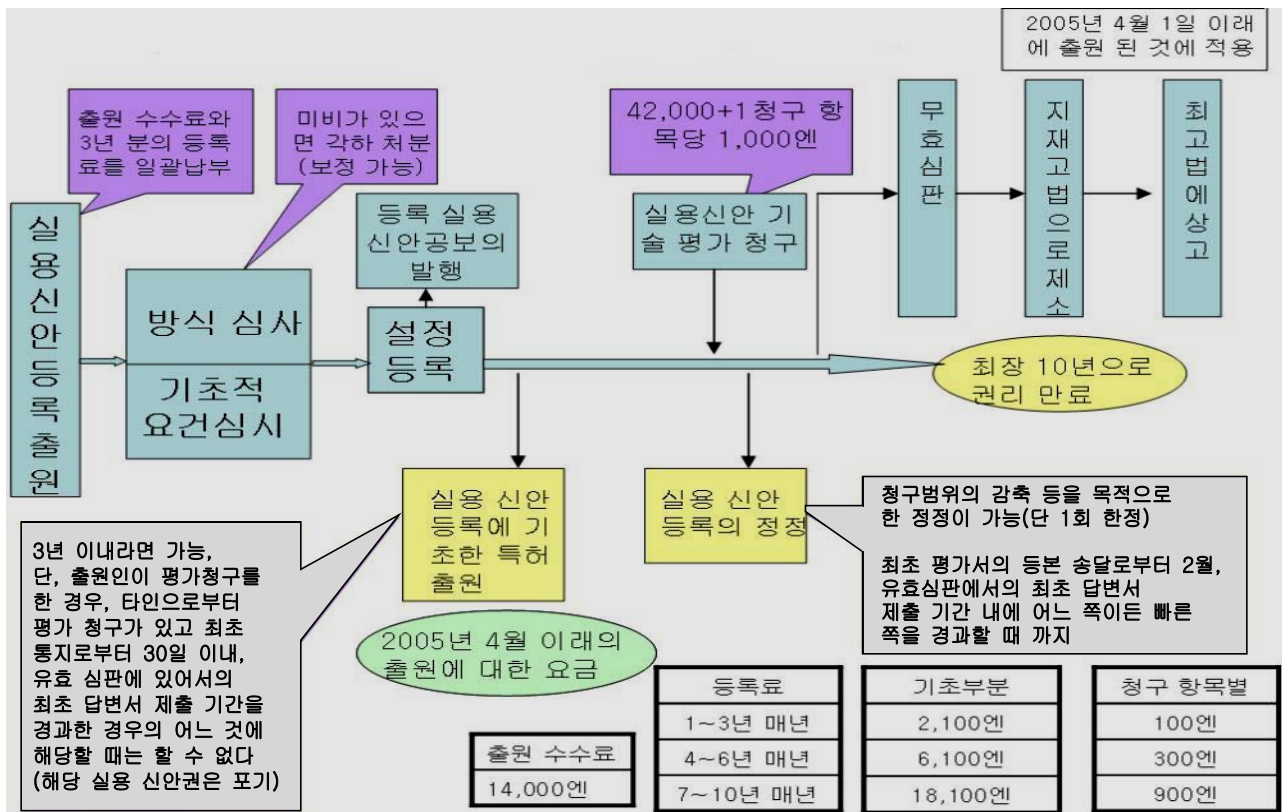
이외의 제3자가 우연히 같은 정보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제3자도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면 비공지라고 한다.

- 어떤 권리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의 발명을 하고 또한 그 특허 출원일에 일본 내에서 그 발명을 실시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같은 발명을 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통상 실시권을 가진다. 즉, 자신이 발명한 기술 등에 대해 실제로 생산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발명을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명을 실시한 사실과 그 발명에 기초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 농림수산성 관계 시험 연구 기관에서는 2001년에 농림수산성 시험 연구 기관이 독립 행정 법인화 한 후부터 특허 보유수가 증가하고 2003년에 농림 수산 대신 인정 TLO(농림 수산 기술 협회)가 설립되어 특허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나. 실용 신안권

- 실용신안법의 목적은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고안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그 고안을 장려하고 기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실용신안 제도도 특허 제도와 같은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이나 물품에 관한 기술적인 특징 등 연구가 산업상 도움이 되는 것,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대하는 것으로 소발명(고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실용신안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실용신안권은 일정 조건 하에서 고안을 특허청으로 출원한 후부터 10년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실용신안권의 대상이 되는 고안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 ①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
 - ② 기술적 사상인 것
 - ③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개인만의 이용, 학술적·실험적인 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
 - ⑤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 ⑥ 출원 서류에 미비가 없는 것 등의 규정된 수속을 준수할 필요도 있다.
- 실용신안권은 출원 후 특허청의 심사 과정으로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심사가 실시된다. 출원한 고안이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권리로서 성립한다. 등록된 고안은 실용신안 공보에 의해 공표됩니다(그림 8-5).

그림 8-5 일본의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과정



- 실용신안권은 특허와 다르게 등록 사정이 나오게 될 때에 고안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실용신안 기술 평가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그 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를 실시해야만 한다.

다. 의장권

- 의장법의 목적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의장 창작을 장려하고 기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의장(디자인)은 물품의 보다 아름다운 외관,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외관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외관은 한번 보면 누구라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방을 쉽게 할 수 있고 부당 경쟁을 초래하게 된다. 그 때문에 새로 창작된 의장을 창작자의 재산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 이용도 도모하도록 정하여 새로운 의장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의장법에 기초하여 주어지는 의장권이란 물품의 아름다운 외관과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등록된 의장은 등록 후부터 20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2007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의장의 등록 기간은 15년임).

라. 상표권

-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기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 사업자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실시해 가기 위해서는 거래자나 수요자가 어떤 상품이나 용역을 접했을 때 그 상품이나 용역은 누가 제조 또는 제공한 것인지, 그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로 어느 정도가 기대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상표 제도에 의해 상품이나 용역에 붙는 식별 표식인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 상표법에 기초하여 주어진 상표권이란 일정 조건 하에서 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 된 날부터 10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이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인 권리로서 존속시킬 수 있음).
- 또한 상표권을 취득한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취소 심판이 청구되어 상표권이 취소되는 일도 있다.
-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상표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입체적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 또는 그것들과 색채와의 결합」에 한정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다음과 같은 상표는 상표권을 받을 수 없다.
 - ① 자타의 상품이나 용역을 식별한 수 없는 상표(애매한 명칭, 업계 관용어 등)
 - ② 공공 기관 등의 표식과 혼동되는 등 공익성에 반하는 상표(국기와 같은 상표 등)
 - ③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저명 상표 등과 혼동되는 상표(다른 상표와 호칭, 외관, 개념에 있어서 비슷한 상표)
 - ④ 또한 종묘법의 규정에 따른 품종 등록을 받은 품종의 명칭과 동일 또는 비슷한 상표이고 그 품종의 종묘 또는 그것과 비슷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 상표권은 출원 후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 사정이 실시되고 출원한 상표가 상표권을 받을 수 있는 상표라는 것을 특허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권리가 성립한다(그림 8-7).
- 출원한 상표는 출원 후 및 등록 후에 각각 상표 공보에 의해 공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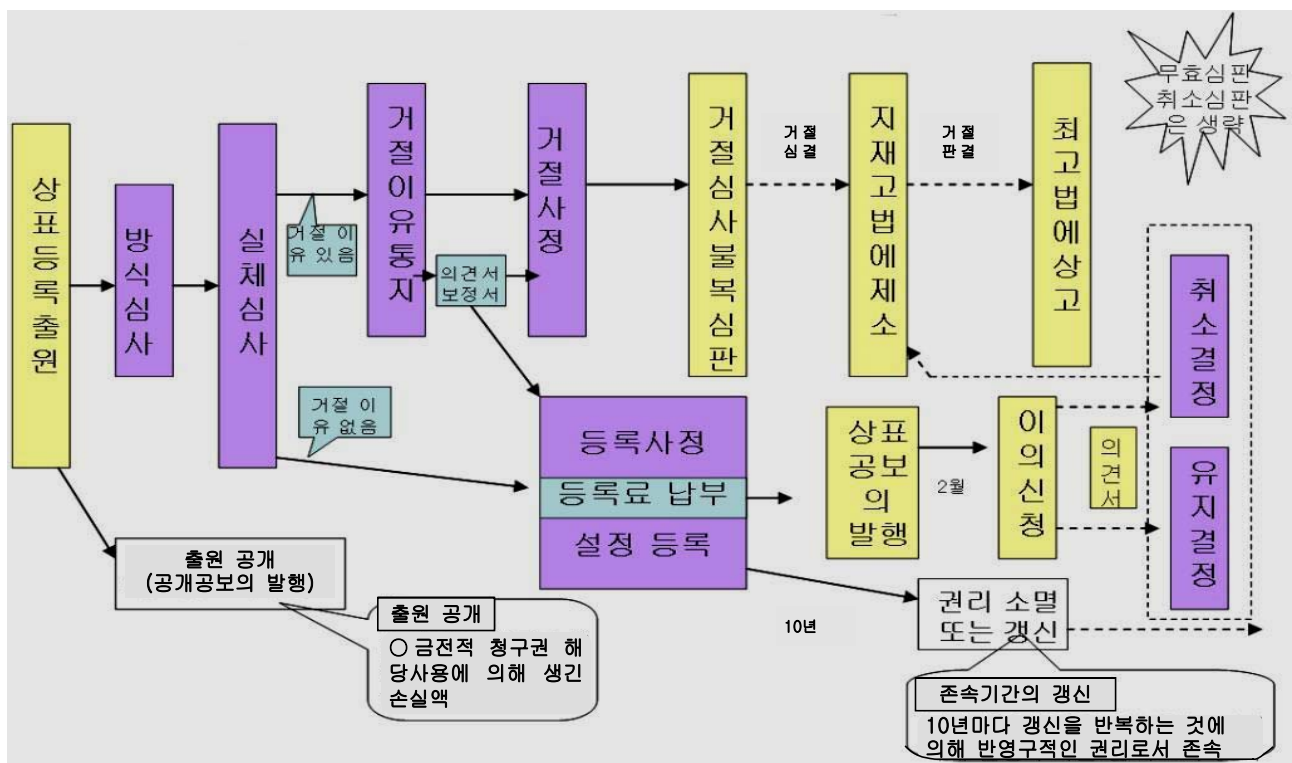
- 농산품이나 식품 등에 상표(문자나 마크 등)가 붙어 있으면 소비자는 그 상표를 의지하여 품질 선도 등을 판단하고 구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상표에 붙여진 상표는
 - ① 그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표시하는 「출소의 표시」 기능
 - ② 동일 상표를 붙인 상품 또는 용역은 항상 일정한 품질 또는 질을 갖추고 있다는 신뢰를 보증하는 「품질의 보증」 기능
 - ③ 그 상품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선전하는 「광고·홍보」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상표를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표시하고 싶은 출소(생산원, 판매원 등)를 명확히 하여 우수한 품질을 소비자에게 평가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광고·홍보 효과를 가지는 상표를 고안·작성하는 것, 작성한 상표를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홍보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 상표는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지키고, 자기의 활동이 다른 권리자로부터 권리침해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표권을 취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상표권을 취득할 때에는 그 이상의 것을 고려하면서 자기 출하·판매 형태나 생산·판매 전략 등에 맞는 취득 방법(예를 들면 개인으로 출원할 것인지 조합으로 출원 할 것인지)이나 활용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법의 개정에 의해 2006년 4월 1일부터 지역 단체 상표제도가 실시되어 출원 되었다.
- 지역단체 상표 제도란 지역의 명칭과 상표(용역)의 명칭 등에서 생성된 상표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주지하게 되었다는 등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협동조합이나 농협협동조합 등의 단체에 대해 해당 상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따라서 지금까지 지역의 명칭과 상표의 명칭 등으로부터 생성된 상표는 전국적으로 주지된 경우나 지형과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이 본 제도에 의해 지역명을 붙인 상표 보호가 용이해졌다. 지역 단체 상표 2007년 2월 6일 현재 등록 사정 건수는 160건(그 중 농림 수산 분야에서 68건) 이다.
- 지역 단체 상표로서 인정되는 요건은
 - ① 단체 적격성(법인격이 있는 것, 가입 자유가 담보되어 있는 것, 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된 단체인 것)
 - ② 지명과 상표의 밀접한 관련성(상표의 산지, 상표의 제공지, 주요 원료의 산지 등)

- ③ 사용에 의한 일정 정도의 주지성의 획득(출하·판매 상황, 광고·홍보 기사 게재 등)
 ④ 상표 전체로서 상품의 보통 명칭이 아닐 것

표 8-2 등록 사정된 지역 단체 상표(구체 사례)

상표	출원인	도도부현
토카치강 니시나가 감자	다이코우시 가와니시농업협동조합	홋카이도
타코 당근	타코마치 농업협동조합	아오모리현
오다와라 어묵	오다와라 포구 수산 가공 협동조합	카나가와현
카가된장	이시카와현 미증 공업협동조합	이시카와현
히다 유유	히다 낙농 농업 협동조합	기후현
마즈자카 니쿠(고기)	마즈자카 농업 협동조합	미에현
교 염장식품	교토부 청과물 협동조합	교토부
간 사보타주	오이타현 어업협동조합	오이타현
치겐 차	미나 사즈마 농업협동조합	카고시마현
오키나와 소바	오키나와 생면 협동조합	오키나와현

그림 8-7 일본의 상표 등록 출원 과정



자료 : 특허청, 지적 재산권 제도 입문, 2006.

- 선사용권이란 타인이 어떤 상표를 출원하여 그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상표와 같은 또는 비슷한 상표를 이미 자신이 사용하고 있고, 그 상표의 등록 시정에 있어서 그 상표가 자신의 업무에 관한 상표 등을 나타낸다는 것이 수요자 간에 넓게 인식되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권리(상표법 제 32조)를 말한다. 단,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선사용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타인의 지역 단체 상표 등록 전에 해당 지역 단체 상표와 같은 또는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가 자신의 업무에 관한 상표 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수요자 간에 넓게 인식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마. 육성자권

- 품종 등록 제도의 목적은 「품종 육성의 진흥」을 도모하고 「기존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종묘는 농림수산업 생산의 기초이며 고품질, 이른 수확, 다수확, 병충해 등에 있어서 우수한 유전적 성질을 가진 신품종이 다수 육성되는 것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때문에 신품종의 육성자가 종의 육성에 들인 투자를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품종을 향한 의욕을 고조시키기 위해 육성자의 권리를 법률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그림 8-8).
- 종묘법에 기초하여 주어진 육성자권이란 식물의 신품종을 육성하여 종묘법에 기초한 품종 등록에 따라 발생한 권리이다. 육성자권자는 업으로 등록 품종의 종묘, 수확물 및 정령으로 정한 가공품에 대해 그 생산, 양도, 수출 또는 보관 등을 실시하는 권리를 전유(등록일로부터 25년, 과수 등 영년생 식물은 30년)할 수 있다.
- 식물의 신품종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
 - ① 구별성(기존 품종과 형태, 색 등의 중요한 형질에서 명확하게 구별 가능한 것)
 - ② 균일성(동일 세대에서 그 형질이 충분히 비슷한 것)
 - ③ 안정성(증식 후 형질이 안정되어 있는 것)
 - ④ 미유도성(일본 국내에서 출원일로부터 1년 소급한 날보다 전에 출원 품종의 종묘나 수확물을 양도하고 있지 않을 것. 외국에서는 일본에서의 출원일로부터 4년(영년생 식물은 6년) 소급한 날부터 양도하지 않은 것)
 - ⑤ 명칭의 적절성(품종의 명칭이 기존 품종이나 등록 상표와 혼동되지 않는 것)
- 육성자권은 출원 후 농림수산성의 심사 과정에서 거절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해 품종 등록부에 등록이 실시되고 권리로서 성립된다.
- 출원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의 명칭, 출원자나 육성자 권리를 이름 등으로 각각 관보에 의해 공개된다(그림 8-9).

The diagram illustrates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At the top left, a box labeled '육성자 (신품종)' (Breeder (New Variety)) leads to a box labeled '육성자권' (Breeder's Right). Below this, it states: '업으로서 등록 품종의 [종묘], [수확물] 등에 대해 그 생산, 양도, 수출, 수입 또는 관리 등을 실시하는 권리를 전유한다' (The right to exclusively engage in the production, transfer, export, import, or management of the [seedling], [harvest] of the registered variety as a business). To the right, a box labeled '농림수산성 종묘과'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edling Division) leads to '심사·등록' (Review and Registration). A large arrow labeled '출원' (Application) points from the breeder to the ministry. A return arrow labeled '권리부여' (Grant of Right) points from the ministry back to the breeder. Below the '권리부여' arrow, it specifies: '등록일로부터 25년' (25 years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and '과수 등 영년생 식물은 30년' (30 years for perennial plants such as fruit trees). To the right of this, statistics are provided: '2005년도 출원 건수 1,385건' (1,385 applications in 2005), '2005년도 등록건수 1,110건' (1,110 registrations in 2005), '평균 심사 기간 3.2년' (Average review period 3.2 years), and '심사간수 23일' (Review period 23 days). Below the '육성자권' box, two arrows point down: one labeled '이용료' (Fee) leading to '이용자' (User), and another labeled '허락' (Permission) leading to '무단이용자' (Unauthorized User). A third arrow labeled '침해로의 대응' (Response to Infringement) points down from the '육성자권' box. To the right, a box titled '민사상 청구' (Civil Claim) lists: '1. 금지' (1. Injunction), '2. 손해배상' (2. Damages), '3. 신용회복 조치' (3. Measures for restoration of credit), and '형사죄' (Criminal Offense). It also specifies: '개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 (Individual: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3,000,000 yen) and '법인 : 1억엔 이하의 벌금' (Corporation: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0,000 yen).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patent examination process in Korea, divided into two main phases: **가보호기간** (Priority Period) and **육성자권** (Substantive Examination).

가보호기간 (Priority Period):

- 출원** (Application) leads to **출원공표** (Publication of Application).
- 출원공표** leads to **심사** (Examination).
- 심사** leads to **품종등록** (Plant Variety Registration).

육성자권 (Substantive Examination):

- 품종등록** leads to **등록공표** (Registration Publication).
- 등록공표** leads to **등록취소** (Registration Cancellation).

Other Key Elements:

- 농림수산식품의 품종 육성** (Plant Breeding by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s the starting point.
- 거절 이유 통지** (Notice of Refusal) is issued from the examination stage.
- 거절** (Refusal) is the final outcome of the examination.
- 거절 이유 통지** (Notice of Refusal) is issued from the examination stage.
- 거절** (Refusal) is the final outcome of the examination.
- 거절 이유 통지** (Notice of Refusal) is issued from the examination stage.
- 거절** (Refusal) is the final outcome of the examination.

– 145 –

- ③ 지정 상품·지정 용역에 동일 또는 비슷한 상품·용역에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지정 상품·지정 용역에 비슷한 상품·용역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④ 육성자권 : 제3자가 육성자권자로부터 실시를 허락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으로서 등록 품종 등을 이용하는 행위

○ 특허권이 실시되고 있는 기술이 권리자의 허락 또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등 지적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및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 권리 침해 행위의 금지 청구,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맞춰 세관에 대해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 ① 권리자 자신이 그 제품은 특허 침해 상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 침해 행위를 방지, 침해에 의해 피해본 손해에 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민사적 구제).
- ② 국가가 그 제품을 권리 침해 상품이라고 판단하여 침해자에 대한 죄칙(형사적 구제)의 적용 등의 대응을 실시한다.

○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경고장을 보내고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거나 또는 법원의 신청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사상 수속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① 금지 청구권 : 권리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침해 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품의 폐기나 침해품을 제조하는 설비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손해 배상 청구권 : 권리자는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신용 회복 조치 청구권 : 권리자는 조약품의 판매 등의 침해 행위에 의해 업무상 신용이 침해된 경우에는 신문에 사죄 광고 게재 등 업무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최근 육성자권 침해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강낭콩유키데보가 홋카이도에서 중국으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일본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다. 홋카이도로부터 경고에 의해 수입업자는 중국으로부터의 고급 흰단팥 원료용 강낭콩의 수입을 자숙하고 있다.
- ② 팔마타노오토메쇼마리가 홋카이도에서 중국으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일본으로 수입 판매되고 있다. 홋카이도로부터 경고에 의해 수입업자는 중국으로부터 일본 품종의 팥의 수입을 자숙하고 있다.
- ③ 버찌베니슈호는 야마가타현오스트리아로 종묘가 위법으로 반출되었다고 하여 2005년 11월 16일 야마가타현이 종묘법에 근거하여 호주에서 과실의 생산·판매를 하는 업자 등을

형사 고발했다.

- ④ 중국에 대해서도 종묘가 위법으로 반출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 카네이션라이트핑크 바바라 등 4품종 종묘회사(2개사) 중국으로 종묘가 무단으로 증식되어 어버이날 전에 그 수확물이 일본으로 수입되었다. 육성자권자는 2006년 5월 11일 수 입업자에게 경고하였다.
- ⑤ 국화바위의 자선종묘회사중국으로 종묘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일본으로 수입되었다. 육성자권자는 2005년 6월 2일 수입업자에게 경고. 또한 2004년에도 같은 침해가 있었으나 그 때에는 양자간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1.5 일본 농림수산성의 지적재산 전략

가. 지적재산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

- 2002년 7월에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수립하고 지적재산입국(立國)을 그 목표로 선언하였다. 지적재산입국이란 발명·창작을 존중한다는 일본의 방향을 밝히고, 물건 만들기(모노즈꾸리)에 더해서 기술·디자인, 브랜드나 음악·영화 등 콘텐츠와 같은 가치 있는 정보 만들기 즉, 무형재산의 창조를 산업의 기반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 이는 경제·사회의 재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비전이 뒷받침된 일본의 국가전략이다. 또한, 이 대강에 의해 지적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2003년에는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어 지적재산입국을 목표로 정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 지적재산전략본부는 매년 지적재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성·청이 연대·분담하여 시행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이라는 지적 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나. 농림수산성의 지적재산 전략

- 일본의 농림수산물 및 식품은 고품질·고부가가치, 안전·안심 등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 관계자의 노력이나 기술, 일본의 전통이나 문화, 소비자의 신뢰 등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일본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일본에 있어서 귀중한 지적재산이라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 그러나 농림수산업의 국제화가 진행되는 중에 딸기, 골풀이나 황도 등, 일본에서 육성된 품

종이 해외에 위법으로 반출되어 생산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수출되었던 와규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외국종과의 교잡종 등이 생산되어 그 고기 또는 송아지가 일본으로 역수입되기도 하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 여기에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유통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업과 식품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향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전략적, 종합적인 지적재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 안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 지금까지도 농림수산성은 시험연구기관에 의한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이나 특허권 등의 취득,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와 관련되는 제도의 운용 등에 대처하여 왔다. 여건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는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응해야할 중점시책을 검토하였다. 2006년 6월 2일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에서 “농림수산성에서의 지적재산 전략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와 활용

- ① 2010년도까지 연간 출원건수 2,000건을 돌파(2005년도는 1,385건), 2008년도까지 심사기간을 세계 최속 수준인 2.5년으로 단축(2005년도 3.2년)을 목표
- ② 권리침해대상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육성 품종이나 가공품, 버섯류, 수산물 등을 포함하는 DNA 품종식별기술의 개발촉진, 품종보호 공무원의 증원 등
- ③ 권리침해에 대해서 보다 유효하고 사용하기 편한 제도로의 재평가나 해외에서의 육성자권의 전략적인 취득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연내 목표로 전략을 수립

(2)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와 활용

- ① 와규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계되는 전략적 특허의 취득과 활용의 촉진
- ② 와규 정책의 유통관리체제의 정비를 촉진
- ③ 가축개량증식법, 쇠고기 생산이력제 등을 활용한 와규 표시의 엄격화 등에 관한 심층 검토를 연내에 실시

(3) 지역 브랜드의 확립

- ① 지적재산제도의 보급과 개발을 위해서 세미나 등의 개최, 지적재산의 활용사례나 비즈니스모델의 제시
- ② 각종 사업이나 보급조직 등에 의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양면으로 지역의 대처를 지원

(4) 특허 등 기술이전에 의한 신수요의 창조

- ① 신수요의 창조를 향한 개념 연구 등을 촉진하여 기능성 식품과 신소재 등의 새로운 수요개

발과 산지육성을 추진

- ② 농림수산물관계 시험연구 독립행정법인 등에서 식품의 기능성 해명이나 농림수산물의 신 품종 개발 등, 앞으로 5년간 특허출원 900건 이상, 품종등록출원 150건 이상을 목표

(5) 지적재산에 관한 보급개발과 인재육성

- 농림수산분야에서의 지적재산 인재를 신속히 육성하기 위해 보급지도원의 지도력 향상, 학교교육과의 연대, 연구자의 의식개발 등을 실시

(6) 추진체제의 정비

- 지적재산전략본부 아래에 민간기업의 전문가 등에 의한 전문가회의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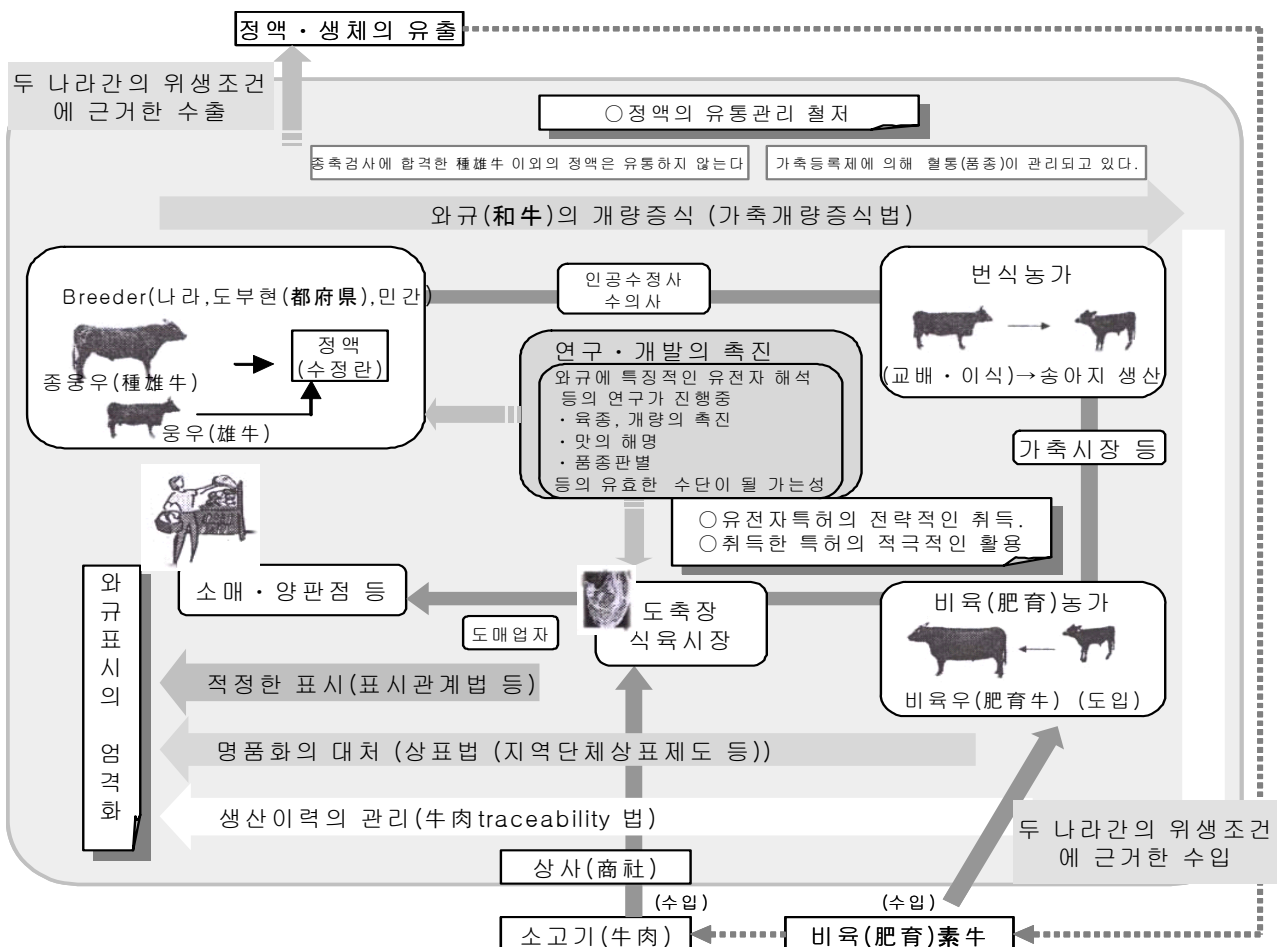
다. 식물신품종 육성자권의 보호와 활용

- 일본에서 식물신품종의 보호는 1978년 종묘법의 제정(품종등록제도의 도입)에 의해 식물신 품종의 육성자가 품종 그 자체를 등록해서 그 품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직접 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그 후, 1991년에 개정된 UPOV 조약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대응하기 위해 서 1998년에 종묘법을 개정하고 품종등록자에 의한 등록품종의 독점적인 이용권을 법적 권 리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여 이를 “육성자권”이라고 명시하였다. 이것에 의해 육성자권을 가진 자가 등록품종의 종묘 등을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하여 판매이익의 증가나 육성자권의 허락에 의한 로열티 수입 등의 경제적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후에도 무단으로 해외에 종묘가 반출되는 등의 문제에 대응해서 벌칙의 강화, 가공품 권리효 력의 증대, 권리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종묘법을 거듭 개정하였다. 동시에 2003년에는 관세 정율법을 개정하여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치도 추가되었다.
- 또한, 권리자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종보호 공무원을 (獨)종묘관리센터에 배치하여 침 해에 관한 상담, 침해가 의심되는 품종과 등록품종을 비교하는 품종 유이성 시험, 침해 상황 의 기록 작성, 침해품의 종묘 등 증거품 기탁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육성자권 침해에 대해서 보다 유효하고 사용하기 편한 제도로의 재평가, 해외에서의 육성자권의 전략적인 취득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 아래에 법률전문가, 종묘회 사,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식물신품종 보호의 강화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제도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종묘법 개정을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라.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와 활용

- 와규는 일본 고유의 육용우이고 개량기관이나 농가의 오랜 노력에 의해 개량되어 온 일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와규에 대해서도 2006년 4월 지적재산전략본부에서 전문가에 의한 “가축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여 와규에 대해 검토해 왔다. 여기에는 지적재산제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계되는 문제점과 가능성을 밝히는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 2006년 8월 3일에 개최되었던 검토회에서 특징적인 와규 유전자(좋은 맛, 향 등)에 대해서 전략적인 특허의 취득과 적극적인 활용, 와규 정액의 유통관리 철저, 와규 표시의 엄격화 등을 포함한 중간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그림 8-10).
- 이들의 구체화를 향해서 유전자원의 보호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해석 등의 연구개발의 촉진, 바코드 등을 이용한 모델적인 정액 유통관리체제의 구축과 실증, 와규 통일마크를 활용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개발에 위한 예산도 요구하고 있다.

그림 8-10 와규의 유전자원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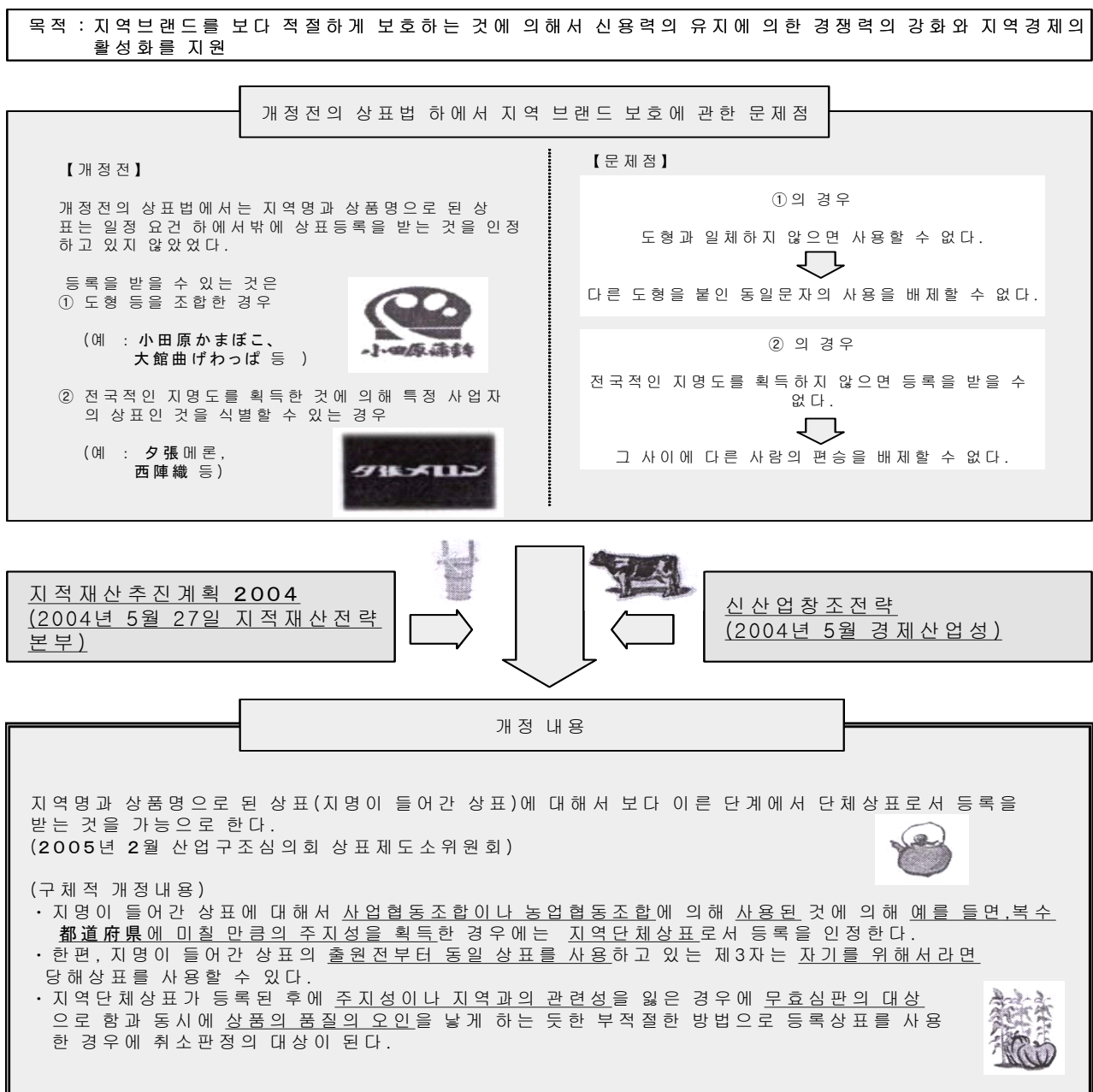


- 와규 표시의 엄격화에 대해서는 많은 소비자가 와규는 국산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을 표시를 검토하는 것이다. 전문가, 소비자, 생산자 등 와규 관계자로 구성된 “식육의 표시에 관한 검토회”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마. 지역브랜드의 확립

- 공예품 이외에 농림수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유바리메론(夕張メロン)”, “마에사와규(前沢牛)”, “신슈된장(信州味噌)” 등, 상표 취득을 활용하여 지역브랜드를 확립할 수 있다.

그림 8-11 지역브랜드의 보호와 상표법 개정



자료: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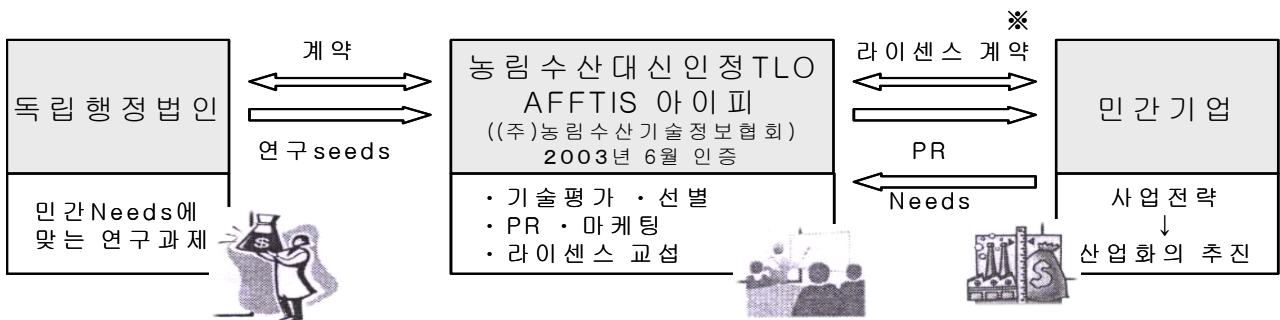
○ 이와 같이 지역브랜드를 상표로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6년 4월 1일부터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지역단체상표제도(지역명+상품명으로 된 상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브랜드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함으로써 신용력 유지에 의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그림 8-11). 2006년 10월 3일 현재 4월부터의 출원 접수건수는 597건, 이 중에서 농림수산물과 식품의 접수건수는 431건에 달한다. 아직 등록된 상표는 없으며, 특허청에서 심사중에 있다.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역브랜드 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브랜드 확립을 위해 관계자의 의식 양성, 브랜드 생성기반 기술개발, 상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취득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財)식품산업센터에서는 식품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단체상표의 제도나 등록의 실무 소개 등 지적재산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바. 특허 등 기술이전에 의한 신수요의 창조

○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전국 4개의 연구독립행정법인을 중심으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 등과 연대하면서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에 기초한 시험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성과로서 2005년도말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상표권 등 모두 1,173건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8-12 TLO를 통한 기술이전의 촉진



※ 라이선스 계약에
일시금(○백만엔)+매상의 ○%

<기술이전 사례>

혈압강화작용이 있는 GABA※를 부화(富化)한 신규소재의 개발과 제품화(발아현미)

- 현미를 물에 담가 발아시키면 배아부분에서 GABA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여 그 기능성(고혈압 치료효과)를 해명
- 중국(中國)농업시험장(현: 近畿中国四国 농업연구센터)가 1994년 특허출원
- 실시허락을 받은 기업 수는 2005년도에 26사(주로 미백 가공업자)
- 본 연구에 의해서 개발된 제품(「GABA발아현미」「GABA배아」 등)의 시장규모는 2004년도에 110~130억엔으로 추계
- ※ r-아미노낙산(Gamma-Amino Butyric Acid)의 간략

저온에서 호화(糊化)하는 고구마 전분

- 가열조리된 고구마는 가열되어 호화한 전분에서 맥아당이 생성되어 단맛이 나온다. 신제품 퀵스위트(クイックスイート)의 호화온도가 통상의 고구마(70℃)보다 낮아(50℃), 단시간의 가열로 단맛이 나온다(가열 코스트의 삭감, 전자렌지조리로도 단맛이 나온다.)
- 이 전분은 가수분의 보수성이 높고 딱딱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의 특성을 살린 과자류(촉촉함이 지속되는 쿠키모치(クズモチ)、와라비모치(わらびもち)、면류(쫄깃쫄깃한 식감의 냉면) 등의 신상품에 의한 신수요가 기대된다.
- 2000년에 농업기술연구기구가 특허출원
- 실시허락을 받은 기업은 3사(전분제조회사, 와가시(和菓子)회사).



←신제품 퀵스위트(クイックスイート)

- 연구독립행정법인 등의 연구성과는 민간기업 등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3년 6월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한 기술이전기관(TLO)을 설치하여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2005년도 실적은 혈압강화작용이 있는 GABA(Gemma Amino Butyic Acid)를 이용한 신규 식재의 개발과 제품화, 저온에서 호화(糊化)하는 고구마전분 등 64건이었다(그림 8-12).
- 현재 보유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TLO의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식품 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에서는 지적재산 전문부서(지적재산센터)를 신설하거나 연구성과와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각종 시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사. 지적재산에 관한 보급, 개발 및 인재 육성

- 이상과 같은 지적재산에 관련된 대치는 시작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지적재산의 보호나 활용을 도모하는 데 가장 중심에 있는 관련 인재가 부족하고, 그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되어 있다.
- 이 때문에 도도후켄(都道府縣: 1都1道2府43縣)의 보급지도원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제도, 지적재산의 활용사례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중심이 될 인재를 육성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식을 농업종사자 등에게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 추진체제의 정비

- 농림수산분야의 지적재산에 관해서 앞으로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추출과 그 대응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2006년 7월 28일 지적재산전략본부 아래 전문가회의를 설치하였다. 제1회 전문가회의에서는 농림수산성의 각종 시책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책이나 식문화, 재배육성의 노하우나 시스템 등 농림수산성의 정책에서 결여되어 있는 점들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고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자. 시사점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적재산정책에 대해서 식물신품종이나 가축유전자원, 첨단 연구개발의 성과, 산지브랜드, 경영노하우 등 지적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을 시급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도 가축유전자원의 보호나 새로운 산지브랜드 만들기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 지적재산정책은 관계자의 실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수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가 중

요하다.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의 창조 촉진, 보호 강화, 활용 추진을 도모하여 지적창조 사이클을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연구, 생산, 유통, 소비의 각 현장에서 지적재산의 활용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여 일본 농림수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

2. 지적재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표

참외의 속성별 소비자가치 측정 : 지리적표시·상표권

1. 귀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참외를 몇 회 구입하셨습니다? ()회
2. 귀하께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안다 ② 들어 본적은 있다. ③ 모른다
3. 귀하께서는 지리적표시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잘안다 ② 들어 본적은 있다. ③ 모른다
4. 귀하의 성별은? ①남성 ②여성
5. 귀하의 연령은? (만 세)
6. 귀하의 교육 수준은? ①국졸이하 ②중·고등학교 ③전문대학 ④대학교 이상
7. 귀하의 가구원 수(귀하포함)는? (명)
8. 귀 가정의 월평균 소득(모든 소득의 합계)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 ~ 199만원
③ 200만 ~ 299만원 ④ 300만 ~ 499만원
⑤ 500만 ~ 699만원 ⑥ 700만원 이상

다음은 참외의 속성에 따라 소비자선호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인증: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시행

참외의 등급: 무게, 설탕, 신선도, 육질, 향기, 당도, 결점 등에 따라
‘특’, ‘상’, ‘보통’, ‘하’ 로 구분

지리적표시제: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을 등록·보호하기 위하여 시행, 성주 참외는 2005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

상표권: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 성주참외의 등록 상표는 ‘성주참외풍경’, ‘큰집 꿀벌 수분 참외’, ‘선남향토참외’, ‘장원인삼참외’ ‘원성철꿀벌참외’ 등

※ 참외A는 ‘친환경 미인증’, ‘등급은 하’, ‘성주산 아님 & 상표 없음’, 가격은 15,000원/15kg입니다. 참외B와 C는 A보다 더 높은 품질의 참외입니다. A, B, C중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생각해 보시고, 선택 난에 √ 표를 해주십시오.

【설문1】

속성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특, 상, 보통, 하)	지리적표시(성주산) 및 상표 등록 여부	가격 (원/15kg)	선택(√)
참외A (base)	미인증	하	성주산(×), 상표(×)	15,000	
참외B	인증	특	성주산(○), 상표(×)	55,000	
참외C	인증	상	성주산(×), 상표(×)	25,000	

【설문2】

속성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특, 상, 보통, 하)	지리적표시(성주산) 및 상표 등록 여부	가격 (원/15kg)	선택(√)
참외A (base)	미인증	하	성주산(×), 상표(×)	15,000	
참외B	인증	특	성주산(○), 상표(○)	55,000	
참외C	미인증	상	성주산(○), 상표(○)	25,000	

【설문3】

속성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특, 상, 보통, 하)	지리적표시(성주산) 및 상표 등록 여부	가격 (원/15kg)	선택(√)
참외A (base)	미인증	하	성주산(×), 상표(×)	15,000	
참외B	인증	상	성주산(×), 상표(×)	55,000	
참외C	미인증	보통	성주산(○), 상표(×)	55,000	

국내 장미 품종(진선미) 가치 측정 : 품종특허 · 품종보호권

1. 장미재배에 종사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년
2. 귀하의 연령은 얼마나 되십니까? (만 세)
3. 우리나라 장미 품종을 사용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2007년(현재) 생산하는 품목당 재배면적, 구입량, 구입가, 재배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품종			
장미 재배면적	평	평	평
구입량	주	주	주
구입가격	원/주	원/주	원/주
재배횟수	년	년	년

4.1 (재배횟수가 4년 이상) 이 품종을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판매가격이 높다 ② 판매가 용이하다 ③ 병해충에 강하다
 ④ 노동력이 적게 든다 ⑤ 종묘 구입가격이 낮다 ⑥ 기타()

5. 해외품종을 국산품종보다 더 선호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상관없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5.1 (① 또는 ② 선택시)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판매가격이 높다 ② 판매가 용이하다 ③ 병해충에 강하다
 ④ 노동력이 적게 든다 ⑤ 종묘 구입가격이 낮다 ⑥ 기타()

6. 앞으로 화훼(장미)재배를 계속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품목명 : 진선미

- 색상 :화색 진한 주황색, 이면은 연주황색
- 잎의 표면 :광택과 물결모양이 강함
- 향 :무향
- 균일성 :(1년차 재배시험결과)이형주의 발생이 없음
- 안정성 :영양번식작물로서 안정성이 인정됨
- 꽃잎 모양 :가장자리의 말림은 중간보다 강하고 물결모양이 매우 약함
- 신초의 안토시아닌 색 :붉은 갈색
- 가시 : 짧은가시(매우없음), 긴가시(적음)

7. 귀하는 이 장미 한주에 []원이면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8. 귀하는 이 장미 한주에 최대한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원

9.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이상

국내 딸기 품종(설향) 가치 측정 : 품종특허·품종보호권

1. 딸기재배에 종사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 ()년
2. 귀하의 연령은 얼마나 되십니까? (만 세)
3. 우리나라 딸기 품종을 사용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2007년(현재) 생산하신 딸기의 품종, 재배면적, 재배횟수는?

품종	재배면적	재배횟수
	평	년

- #### 4.1 (3년 이상 재배시) 이 품종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판매가격이 높다 ② 판매가 용이하다
③ 병해충에 강하다 ④ 노동력이 적게 든다
⑤ 종묘 구입가격이 낮다 ⑥ 기타()

5. 해외품종을 국산품종보다 더 선호 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상관없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 ### 5.1 (① 또는 ② 선택시)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판매가격이 높다 ② 판매가 용이하다
③ 병해충에 강하다 ④ 노동력이 적게 든다
⑤ 종묘 구입가격이 낮다 ⑥ 기타()

6. 앞으로 딸기재배를 계속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귀하는 딸기 종묘를 어디서 조달 하십니까?

- ① 구입한다 ② 자체 생산 ③ 연구소 지원(농업기술센터, 기술원 등)

품목명 : 설향

- **과형** : 원뿔형이나 원형
- **과색** : 선홍색~담홍색
- **수량** : 장희와 비슷
- **과실크기** : 육보와 비슷, 대과비율이 높으며 공동과 발생
- **과실경도** : 장희 수준, 봄철 고온기에는 과즙이 과실표면으로 베어 나옴
- 고온기에 과다착색으로 인한 검어지는 증상이 없음
- 저온신장성이 우수하고 전조처리는 크게 필요치 않음
- 연속출뢰성과 숙기는 약간 늦은 편이고, 육묘기 자묘발생량은 많음
- 화아분화는 장희, 육보사이. 축성재배 경우 12월 초·중순경 수확이 가능
- 당과 산의 조화가 잘 되고, 과즙이 풍부하여 상쾌한 느낌을 가짐
- 충해는 장희, 육보와 비슷, 병해는 잿빛곰팡이병에 약간 약하나, 반면 흰가루병이나 탄저병에는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가짐

8. 귀하는 설향 포트묘 1주에 []원이면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귀하는 설향(포트묘) 1주에 최대한 얼마까지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원

10. 귀하의 최종학력은?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이상

GABA의 소비자가치 측정 : 특정성분 함유 특허권

다음의 질문을 귀하에게 드립니다. 잘 읽어보시고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사과를 구입하실 때 등급을 중요시 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2. 귀하께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하여 잘 아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3. 귀하께서는 GABA에 대해 아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저 그렇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4.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5. 귀하의 연령은? (만 세)
6. 귀하의 교육 수준은? ① 국졸이하 ② 중 ·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이상
7.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미혼 ② 기혼
8. 귀하의 가구원수(귀하포함)는? (명)
9. 귀 가정의 월평균 소득(모든 소득의 합계)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 ~ 199만원 ③ 200만 ~ 299만원
④ 300만 ~ 499만원 ⑤ 500만 ~ 699만원 ⑥ 700만원 이상

다음은 사과의 속성별 소비자가치 측정을 위한 질문입니다.

※ 귀하께서 지금 사과(부사)를 선택하신다면 속성에 따라 (GABA 여부,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가격) 만족이 다를 것입니다. 귀하께 제공되는 속성별 수준들이 다음과 같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 난에 V표를 해주십시오.

■ GABA(감마아미노부티르산)란?

-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신경안정 및 뇌세포간 신경전달에 관여
 - 기억력 증가, 학습능력 향상, 스트레스 억제
- 독성은 없고 혈압강하 작용이 있어 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이용
 - 콜레스테롤 제거와 당뇨병 개선,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 생체 내에서 생성되지만 스트레스 및 노화로 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음식이나 건강식품 등을 통한 섭취 필요
- 현미, 토마토, 된장, 김치 등에 함유되어 있음.

■ GABA 사과 : 경주농업기술센터가 특허출원(07.1)

- 기존의 과일수확 뒤에 기능성 물질의 투입이 아닌 생육상태에서 GABA성분을 생성
- 대두발효 미생물을 이용해 제조한 액비를 생육기 사과에 살포

■ 친환경 인증 :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시행

■ 사과의 등급 : 무게, 색택, 신선도, 육질, 향기, 당도, 결점 등에 따라 ‘특’, ‘상’, ‘보통’, ‘등외’ 로 구분

【설문1】

(부사: 5kg)

속성	GABA 여부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가격	선택(V)
A	GABA	미인증	등외	45,000	
B	GABA	인증	상	60,000	
C	둘 다 선택 안함				

【설문2】

(부사: 5kg)

속성	GABA 여부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가격	선택(V)
A	GABA	미인증	보통	30,000	
B	GABA	인증	특	45,000	
C	둘 다 선택 안함				

【설문3】

(부사: 5kg)

속성	GABA 여부	친환경 인증 여부	등급	가격	선택(V)
A	GABA	인증	등외	30,000	
B	없음	인증	상	60,000	
C	둘 다 선택 안함				

IX. 인 용 문 헌

- 곽승준 · 유승훈 · 한상용. “잠재적 산림생태공원에 대한 소비자 선호분석”, 경제연구 제21권 제3호(2003): 289-311.
- 김수석. 1999. “지리적표시의 법제화 연구”, 『농업경제연구』제40집 제2권. 한국농업경제학회.
- 김수석 외. 2003.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방안 연구』. 농림부.
- 김수석. 2004. 「농업·농촌관련 토착자원의 권리보호체계 수립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용주. 2006. “농산물 브랜드의 트렌드와 성공사례”, 『Patent 21(통권65호)』. 한국특허정보원.
- 김찬수. 2004. “산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림과학정보』 제153호.
- 김태균 · 홍나경. 2005. “식품안전성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추정: 사과를 중심으로”, 농업경제연구 제46권 제2호: 181-196.
- 농림부. 2004, 『동물유전자원 현황에 관한 국가보고서』.
- 도봉섭 · 임록재. 1988. 『식물도감』. 사회과학출판사.
- 박용주. 2004. “DDA 지재권 분야 협상동향”, 『지식재산21』통권 85호. 특허청.
- 박준근. 2006. “한국 농산물 브랜드의 현주소와 정부정책”, 『농산물브랜드의 모든 것』. 농수산물유통공사.
- 박재현. 2006. “법적측면에서의 농산물 브랜드관리”, 『농산물브랜드의 모든 것』. 농수산물유통공사.
- 박철호 · 장광진. 2002. “토종자생식물의 보존 현황과 국가관리 방향”, 『토종자원의 보존현황과 국가관리방향』. 한국토종연구회 심포지엄 자료.
- 박현태 외. 2001. 「21세기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명환 외. 1997.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영규. 2003. “생명공학기술의 국제법적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농촌경제』 제26권 제3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경희. 2004. “생물자원의 주권 확보”, 『생물다양성 국제 규범논의: 한국의 경험과 과제』. 대외경제연구원.
- 오윤석. 2003.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 21』통권 80-82호. 특허청.
- 오윤석. 2004. “유전자원의 이용 개발과 개발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례 및 이익 공유 방안 고찰”, 『지식재산 21』통권 83-84호. 특허청.
- 윤미경 · 최윤희. 2002.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윤영수 외. 2006. 「브랜드경영과 상표권」. 한국법학회 동계학술대회.

- 이규천 · 이우신. 2001.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행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순 외. 1999.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우철. 1993.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현황과 특수성”, 한국식물학회, 「1993년 심포지엄 논문집」.
- 이재곤. 2001.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국제법 평론」제15호, 국제법평론회.
- 이진홍 · 이병오 · 신용광. 2006. “선택형 컨조인트분석에 의한 쇠고기의 안전성평가”, 농업경영 · 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351-366.
- 이창복. 1976. “우리나라의 식물자원”, 「서울대 논문집」20.
- 전창곤. 2003.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실태와 발전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주도축산진흥원. 2003. 「제주 재래가축 편람」.
- 제주도축산진흥원. 2004. 「제주도축산진흥원 요람」.
- 조승현 외. 1999.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정책연구원.
- 조은기. 2004. “해외 유전자원 수집 현황과 실제”, 「생물다양성 국제 규범논의: 한국의 경험과 과제」. 대외경제연구원.
- 최태길 · 최세현 · 김태균. 2006.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속성별 지불의사금액 추정”, 농업경영 · 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869-884.
- 특허청. 2006. 「지식재산백서 2006」.
- 특허청. 2002. 「유전자원 ·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제2차 WIPO 정부 간위원회 참석결과 보고」.
- 특허청. 2004. 「유전자원 ·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제6차 WIPO 정부 간위원회 참석결과 보고」.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003. 「식품 분야 전통 지식 조사보고서」. 특허청.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199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토지적재산 관리 전략」.
- 생물 다양성협약(CBD) 협약문.
- 한국토종연구회. 2002. 「토종자원의 보존현황과 국가관리방향」, 심포지엄 자료.
- 한국한의학연구원. 2003. 「전통적 임상기술의 보호 및 DB 구축(I)」.
- 한민영. 2004. “ABS 국제레짐 제정 논의”, 「생물다양성 국제 규범논의: 한국의 경험과 과제」. 대외경제연구원.
- 행정자치부. 2001. 「향토지적재산의 가치증대를 통한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방안」.
- 대법원. 1997.9.5 선고 96후2470, 거절사정 (상).
- 대법원. 2005.1.28선고, 2003후236.
- 대법원. 2002.11.26선고, 2001후2283, 등록무효 (상).
- 대법원. 1997.9.12선고, 97후150, 거절사정(상).
- 특허법원. 1002.10.10선고, 2001허 4722, 거절사정 (특).
- 특허법원. 2002.12.13선고, 2002허4286, 거절결정(상).

- 특허법원. 2006.6.28선고, 2000허3876, 등록무효 (상).
- 특허법원. 2001.6.28선고, 2000허3869, 등록무효 (상).
- 특허법원. 1999.10.1선고, 99허4767, 거절사정 (상).
- 특허법원. 1999.11.25선고, 1999허6121, 등록무효 (상).
- 특허심판원. 2001.7.31선고, 2000원1335호, 거절사정 (특).
- 특허심판원. 1999.5.28선고, 1998당1770, 등록무효 (상).
- 항고심판소. 1996.12.12, 1995항원2202, 2203 (병합) 심결.
- 항고심판소. 1996항원2343 (1996.11.25).
- Adamowicz, W., P. Boxall, M. Williams, and J. Louviere. 1998. "Stated Preference Approaches for Measuring Passive Use Values: Choice Experiments and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0: 64-75.
- Aguilar, Grethel. 2001.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n the territories of indigenous people",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4.
- Alston, A.M., R.J. Sexton, and M. Zhang. 1997. "The Effects of Imperfect Competition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Research Benefi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9: 1252-65.
- Amemiya, T. 1981. "Qualitative Response Model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 1483-1536.
- Boyle, K.J., M.P. Welsh, and R.C. Bishop. 1988. "Validation of Empirical measures of Welfare Change: Comment" *Land Economics* 64: 94-98.
- Brand, U./ Ch. Görg. 2003. *Postfordistische Naturverhältnisse*, Münster
-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2001), Hintergrundpapier UN-Konferenz zur Biodiversität-Konvention in Bonn, Arbeitsgruppe zu "Zugang zu genetischen Ressourcen und gerechter Vorteilsausgleich", Berlin.
- Carlsson, F., and P. Martinsson. 2001. "Do Hypothetical and Actual Marginal Willingness to Pay Differ in Choice Experiments?" *Journal of Environment Economics and Management* 41: 179-192.
- CBD. 2002. Report of the ad hoc open-ended working group on access and benefit-sharing,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CBD, Sixth meeting, The Hague.
- Cummings, R.G., G.W. Harrison, and E.E. Rutstrom. 1995. "Homegrown Values and Hypothetical Surveys: Is the Dichotomous Choice Approach Incentive Compatible?" *American Economic Review* 85: 260-266.
- Cummings, R.G., S. Elliott, G.W. Harrison, and J. Murphy. 1997. "Are Hypothetical Referenda Incentive Compatibl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 609-621.
- Duffield, J.W. and D.A. Patterson, 1991. "Inference and Optimal Design for a Welfare Measure

- in Dichotomous-Choice Contingent Valuation" *Land Economics* 67: 225-239.
- Falck-Zepeda, J.B., G. Traxler, and R.G. Nelson. 2000. "Rent Creation and Distribution From Biotechnology Innovations: The Case of Bt Cotton and Herbicide-Tolerant Soybeans in 1997", *Agribusiness* 16: 21-32.
- FAO. 2001. "식량농업 분야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식량농업』 제43권 제11호.
- Forum Umwelt und Entwicklung. 2004. *Der Internationale Saatgutvertrag der FAO*, Berlin/Bonn.
- Görg, Ch.. 2003. *Regulation der Naturverhältnisse*, Münster.
- Görg, Ch./ U. Brand. 2001. "Patentierter Kapitalismus", *Das Argument* 242, Berlin.
- Görg, Ch./ U. Brand. 2002 *Mythen globalen Umweltmanagements*, Münster.
- Greene, W.H., *Econometric Analysis*(4th ed.). 2000.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Guha, R/ J. Martinez-Alier. 1997. "Die Vermarktung der Artenvielfalt" *PROKLA* 108, Berlin.
- Haab, T.C. and K.E. McConnell. 1997. "Referendum Models and Negative Willingness to Pay: Alternative Solu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32: 251-270.
- Hanemann, W.M. 1984. "Welfare Evaluations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6: 332-341.
- Haug, W.F.. 2001. "Fragen einer Kritik des Biokapitalismus", *Das Argument* 242, Berlin.
- Johansson, P., B. Kristrom, and K.G. Maler. 1989. "Welfare Evaluation in Contingent Valuation Experiments with Discrete Response Data: Comment"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1: 1054-1055.
- Knaak, R.. 1995. *Der Schutz geographischer Herkunftsangaben im neuen Markengesetz*, GRUR Abhandlung.
- Kuhfeld, W.F.. 2003. *Marketing Research Methods in SAS*, SAS Institute Inc.
- Loomis, J.B., T. Brown, B. Lucero, and G. Peterson. 1996. "Improving Validity Experiments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Results of Effects to Reduce the Disparity of Hypothetical and Actual Willingness to Pay" *Land Economics* 72: 450-461.
- Loschelder/ Schnepf. 1992. *Deutsche geographische Herkunftsangaben*, Köln.
- Lusk, J.L., J. Roosen, and J.A. Fox. 2003. "Demand for Beef from Cattle Administered Growth Hormones or Fed Genetically Modified Corn: A Comparison of Consumers in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5: 16-29.
- Lusk, J.L. and T.C. Schroeder. 2004. "Are Choice Experiments Incentive Compatible? A Test with Quality Differentiated Beef Steak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6: 467-482.
- Maddala, G.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 Press.

- Moschini, G. and H. Lap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Welfare Effects of Agricultural R&D",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9(1997): 1229-42.
- Nakai, T. 1952. A synoptical sketch of Korean flora, Tokyo.
- Neill, H., R.G. Cummings, P.T. Ganderton, G.W. Harrison, and T. McGuckin. 1994. "Hypothetical Surveys and Real Economic Commitment" *Land Economics* 70: 145-154.
- NOAA. 1994. "Proposed Rules for Valuing Environmental Damages" *Federal Register* 59: 1061-1191.
- OECD. 1999. *Handbook of Incentive Measures for Biodiversity: Design and Implementation*, Paris.
- Ready, R.C., J.C. Buzby, and D. Hu. 1996. "Difference between Continuous and Discrete Contingent Value Estimates" *Land Economics* 72: 397-411.
- Republic of Costa Rica. 1998. Biodiversity Law (www.grain.org/brl/coatarica-biodiversity-law-1998.cfm).
- Shin, Y.K. 2006. "Measurement of the Willingness to Pay for Milk-Safety Attributes Using Choice Experiment"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3: 618-629.
- Smale, M. *Valuing Crop Biodiversity On-Farm Genetic Resources and Economic Change*, CABI Publishing, 2006.
- Taplin, R., *Valuing Intellectual Property in Japa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RoutledgeCurzon, 2004.
- Timmermans, Karin. 2003.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raditional medicine: policy dilemmas at the interface", *Socail Science & Medicine* 57.
- UPOV. 2005. 「식물 품종 보호의 영향에 관한 UPOV 보고서」.
- WIPO. 1994. *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Regulation*, Geneva.
- WIPO. 2003.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Fifth Session*, Geneva.
- Wold, Chris. 1999. "The Impact of Access Legislation on the Conservation, Exchange and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 review of Access and Benefit Sharing Provisions," *Lewis & Clark College* (www.lclark.edu/org/ielp/accesspaper.html).
- WTO TRIPs Council. 2001.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IP/W/257>.
- WTO TRIPs Council.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IP/C/W/356>.
- WTO TRIPs Council.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ummary of Issues raised and points made, <JOB(02)/58>.